

##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 
- 01 마약류의 개요
  - 02 2018년도 마약류사범 단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 03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 04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 05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06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 1.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마약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 범죄유형

- 마약류와 그 원료의 밀조, 밀매 및 밀수 행위
- 마약류의 투약·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 3. 기타 특이사항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2018. 4. 1. ~ 6. 30.)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2018. 4. 중순 ~ 7. 하순)

# 2018년도 마약류사범 단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2018 마약류 범죄 백서

## 1. 마약류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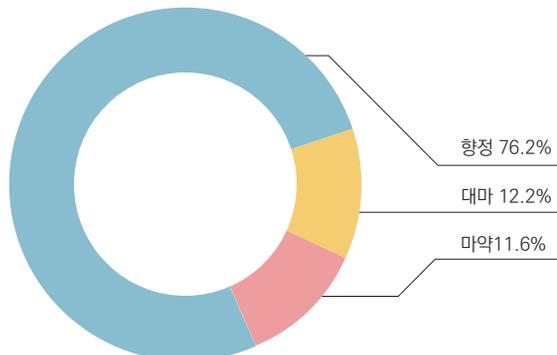
[표 3-1] 마약류별 단속 현황

마약류	구분	건수	합계(명)	인원(명)	
				구속	불구속
합계		10,584	12,613(100)	2,151	10,462
마약		1,393	1,467(11.6)	47	1,420
향정		8,072	9,613(76.2)	1,943	7,670
대마		1,119	1,533(12.2)	161	1,372

※ ( )는 구성비 %

- 2018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2,613명으로 전년(14,123명)대비 10.7% 감소함
  - 마약사범은 1,467명으로 전년(1,475명)대비 0.5% 감소함
  - 향정사범은 9,613명으로 전년(10,921명)대비 11.9% 감소함
  - 대마사범은 1,533명으로 전년(1,727명)대비 11.2% 감소함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 2. 범죄유형별 내역

[표 3-2]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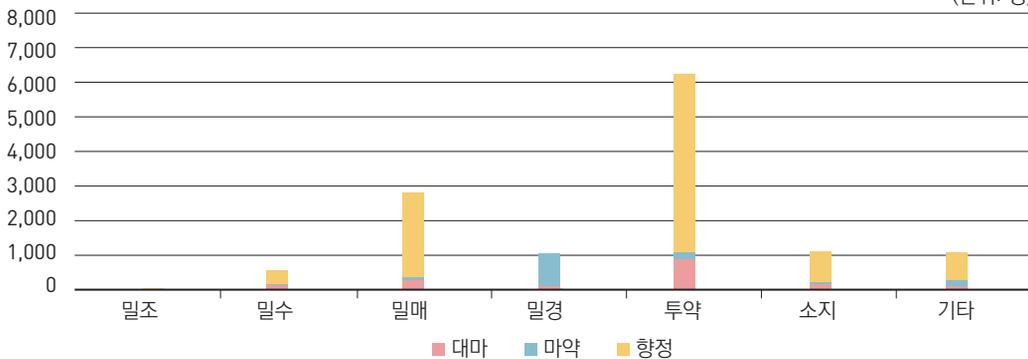
마약류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8	521	2,763	1,026	6,177	1,081	1,037	12,613
(점유율)	(0.1)	(4.1)	(21.9)	(8.1)	(49.0)	(8.6)	(8.2)	(100)
대마	0	111	266	87	840	143	86	1,533
마약	0	24	64	939	229	50	161	1,467
향정	8	386	2,433	0	5,108	888	790	9,613

※ ( )는 구성비 %

-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대비 10.7% 감소하였고, 공급사범도 전년대비 16.7% 감소함
- 투약사범은 6,177명(전년도 7,346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49.0%(전년도 52.0%)를 점유함
-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3,292명(전년도 3,955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26.1%(전년도 28.0%)를 점유함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3. 청별 내역

[표 3-3] 청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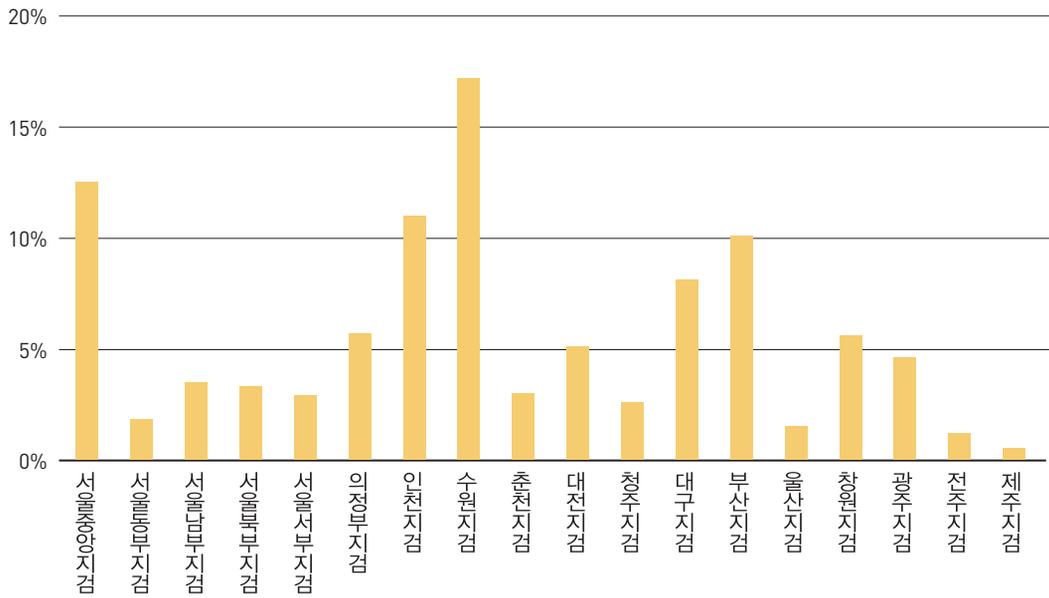
(단위: 명)

청별	구분	2017		2018		증감률 (%)
		사범수	구성비	사범수	구성비	
합계		14,123	100	12,613	100	-10.7
서울중앙지검		1,757	12.4	1,575	12.5	-10.4
서울동부지검		241	1.7	230	1.8	-4.6
서울남부지검		452	3.2	439	3.5	-2.9
서울북부지검		478	3.4	418	3.3	-12.6
서울서부지검		331	2.3	360	2.9	8.8
의정부지검		846	6.0	719	5.7	-15.0
인천지검		1,425	10.1	1,382	11.0	-3.0
수원지검		2,298	16.3	2,165	17.2	-5.8
춘천지검		464	3.3	378	3.0	-18.5
대전지검		878	6.2	638	5.1	-27.3
청주지검		360	2.5	329	2.6	-8.6
대구지검		1,107	7.8	1,026	8.1	-7.3
부산지검		1,462	10.4	1,270	10.1	-13.1
울산지검		276	2.0	187	1.5	-32.2
창원지검		918	6.5	706	5.6	-23.1
광주지검		574	4.1	574	4.6	0.0
전주지검		172	1.2	157	1.2	-8.7
제주지검		84	0.6	60	0.5	-28.6

※ 지검 실적에 관내 지청분 및 경찰 송치분 포함

- 청별 단속 점유율은 재경지검(서울중앙지검,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포함) 24%, 수원지검 17.2%, 인천지검 11.0%, 부산지검 10.1%, 대구지검 8.1% 순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57.9%(전년도 55.4%)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됨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 4. 마약류 월별 단속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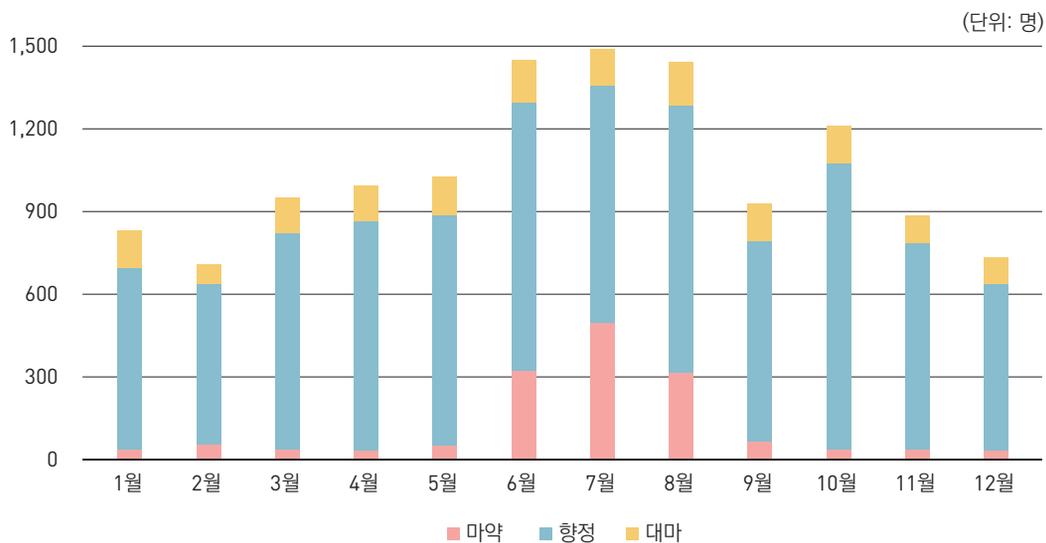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월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계		1,467	9,613	1,533	12,613	100
1월		32	660	137	829	6.6
2월		50	583	71	704	5.6
3월		34	783	128	945	7.5
4월		28	834	130	992	7.9
5월		49	833	142	1,024	8.1
6월		319	972	156	1,447	11.5
7월		491	860	135	1,486	11.8
8월		311	967	160	1,438	11.4
9월		61	728	136	925	7.3
10월		32	1,037	140	1,209	9.6
11월		32	750	102	884	7.0
12월		28	606	96	730	5.8

- 월별 단속실적 점유율은 7월(11.8%)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6월(11.5%), 8월(11.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 추이



## 5. 기관별 단속내역

[표 3-5] 기관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기관별	검찰	경찰	합계
전체	4,627	7,986	12,613
마약류사범	(36.7)	(63.3)	(100)
마약류 공급사범	1,537	1,755	3,292
	(46.7)	(53.3)	(100)
마약류 밀수사범	374	147	521
	(71.8)	(28.2)	(100)

※ ( )는 구성비 %

- 기관별 단속 점유율은 검찰 36.7%, 경찰 63.3%임
- 적발 마약류사범은 전년대비 검찰 10.8%(전년도 5,190명), 경찰 10.6%(전년도 8,933명) 각각 감소함
- 마약류 공급사범은 전년대비 검찰 10.6%(전년도 1,719명), 경찰 21.5%(전년도 2,236명) 각각 감소함
- 다만, 밀수사범은 공·항만 유입 마약류에 대한 집중적인 「검찰·세관 공조 수사」로 전년대비 전체 8.3%(전년도 481명) 증가하였고, 기관별로는 검찰은 1.9%(전년도 367명) 증가였으나, 경찰은 28.9%(전년도 114명) 감소함

## 6.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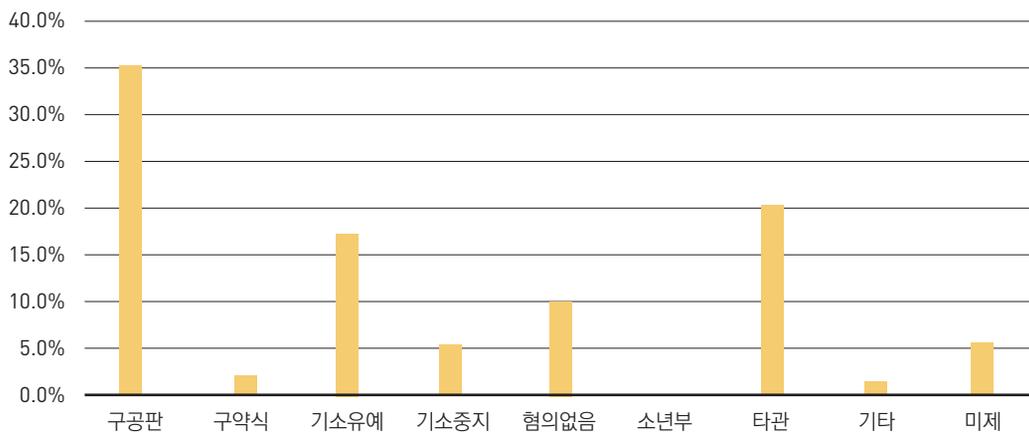
[표 3-6]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마약류	처리계 <sup>1</sup>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기타	
합계	13,483	4,929	308	2,430	764	1,419	11	2,714	218	690
	(100)	(36.6)	(2.3)	(18.0)	(5.7)	(10.5)	(0.1)	(20.1)	(1.6)	(5.1)
마약	1,452	70	55	1,109	22	94	0	55	30	17
	(100)	(4.8)	(3.8)	(76.4)	(1.5)	(6.5)	(0.0)	(3.8)	(2.1)	(1.2)
향정	10,454	4,262	221	1,063	650	1,167	10	2,353	166	562
	(100)	(40.8)	(2.1)	(10.2)	(6.2)	(11.2)	(0.1)	(22.5)	(1.6)	(5.4)
대마	1,577	597	32	258	92	158	1	306	22	111
	(100)	(37.9)	(2.0)	(16.4)	(5.8)	(10.0)	(0.1)	(19.4)	(1.4)	(7.0)

※ ( )는 구성비 %

[그림 3-5]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sup>1</sup> 처리계는 구수(2018년 이전 접수된 사건)를 포함한 수치임

-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6.6%로 전년대비 1.1% 감소, 구약식률은 2.3%로 전년대비 동일, 기소유예율은 18.0%로 전년대비 0.9% 증가함
-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 40.8%(전년도 43.1%), 대마사범 37.9%(전년도 37.5%), 마약사범 4.8%(전년도 4.1%)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구약식률은 마약사범 3.8%(전년도 6.3%), 향정사범 2.1%(전년도 1.7%), 대마사범 2.0%(전년도 3.4%)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기소유예율은 마약사범 76.4%(전년도 73.9%), 대마사범 16.4%(전년도 20.5%), 향정사범 10.2%(전년도 9.5%) 순으로 나타남

## 7. 범죄수익 환수

[표 3-7] 몰수·추징 보전 실적

연도	구분	건수		금액	
		전체범죄	마약류범죄	전체범죄	마약류범죄
2014		2,216	112	9,398억원	7억7천97만원
2015		2,497	142	4,717억원	9억8천79만원
2016		2,282	119	5,406억원	6억7백48만원
2017		1,992	100	5,491억원	16억9,640만원
2018		2,422	138	2조4,390억원	76억1,261만원

※ 자료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

- 마약류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수익 등이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①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 (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②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및 ③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함
- 2018년 마약류범죄 몰수·추징 보전 실적은 76억1,261만원으로 전년(16억 9,640만원)대비 348.8% 증가함
- 주요 보전 사례로는 대만 마약조직, 일본 야쿠자 및 국내유통조직 등이 관여된 필로폰 밀수·밀매 등 사건에서 20억여 원의 예금채권을 보전 조치함(서울중앙지검)

-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휴대전화를 분석, 채팅 내역 등을 통해 판매 내역 확인하여 범죄수익 합계 약 1억여 원을 보전 청구 등 조치함(서울중앙지검)
-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집중 단속하여 50억여 원 상당의 예금채권, 자동차, 임대보증금, 부동산 등을 보전 조치하였고, 국내 최초로 ‘모바일상품권과 가상계좌’를 이용한 필로폰 대량 판매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의 모(母)계좌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추정보전 인용결정을 이끌어 냄(수원지검)

# 03

##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2018 마약류 범죄 백서

### 1. 마약류사범 추세

[표 3-8]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9,984 (2.3)	11,916 (19.4)	14,214 (19.3)	14,123 (-0.6)	12,613 (-10.7)
마약	676 (-1.3)	1,153 (70.6)	1,383 (19.9)	1,475 (6.7)	1,467 (-0.5)
향정	8,121 (2.8)	9,624 (18.5)	11,396 (18.4)	10,921 (-4.2)	9,613 (-12.0)
대마	1,187 (0.8)	1,139 (-4.0)	1,435 (26.0)	1,727 (20.3)	1,533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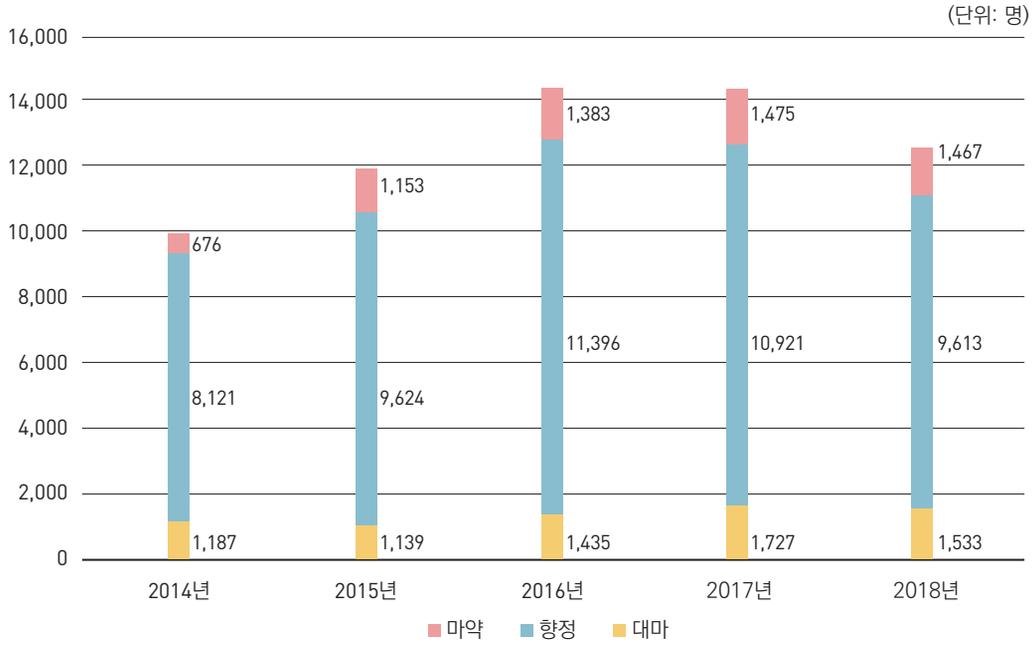
※ ( )는 증감률 %

- 199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함
- 그러나, 2002년도에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000명 선 아래로 억제됨

- 2015년도는 마약류사범이 11,916명 적발되어 다시 10,000명 선을 넘어섰으며, 2016년 14,214명, 2017년도 14,123명, 2018년도 12,613명으로 큰 폭 증가함. 그 원인은 최근 인터넷, 다크웹, 텔레그램과 같은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 되는 추세이고, 또한 인터넷과 연계된 국내·외 유통구조를 통해 일반인들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됨
-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1년 78.7%, 2012년 82.5%, 2013년 80.9%, 2014년 81.3%, 2015년 80.7%, 2016년 80.2%, 2017년 77.3%, 2018년 76.2%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 주종 마약류(특히, 메트암페타민)임을 보여주고 있음
- 마약류사범별 추세를 분석해 보면,
  - 마약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00여명 전후 수준이었으나 2015년 1,100여명, 2016년 1,300여명, 2017년 및 2018년 1,400여명 선으로 대폭 증가함. 이는 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고령층 주민들이 관상용, 가정상비약 및 가축의 질병치료 등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임
  - 한편, 향정사범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000여명 이하로 적발되다 2014년 8,100여명, 2015년 9,600여명, 2016년 11,300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에는 10,900여명, 2018년도에는 9,600여명으로 소폭 감소함
  - 대마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소폭 감소하고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1,100여명 선으로 억제되다 2016년 1,400여명, 2017년 1,700여명, 2018년 1,500여명으로 다시 증가함

[그림 3-6]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표 3-9] 범죄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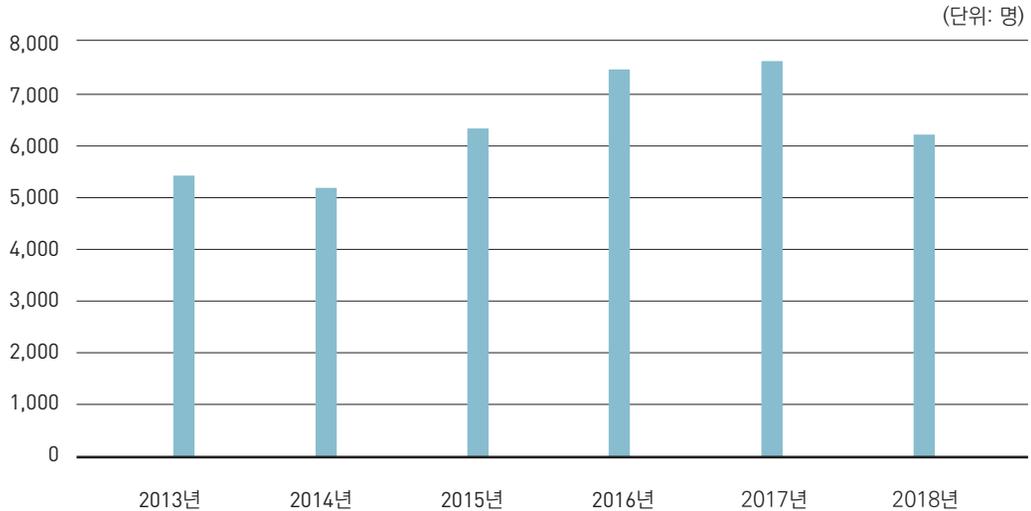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8	521	2,763	1,026	6,177	1,081	1,037	12,613
(점유율)	(0.1)	(4.1)	(21.9)	(8.1)	(49.0)	(8.6)	(8.2)	(100)
마약	0	24	64	939	229	50	161	1,467
향정	8	386	2,433	0	5,108	888	790	9,613
대마	0	111	266	87	840	143	86	1,533

※ ( )는 구성비 %

- 전체 마약류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49.0%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21.9%), 소지(8.6%)사범 순이며, 이 중 밀조, 밀수, 소지 사범은 전년도 보다 증가함
-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투약 및 흡연사범이 각 53.1%, 5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63.1%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등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 사범임

[그림 3-7]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sup>2</sup>

마약류	구분	품명	단위	2016	2017	2018
마약		양귀비	주	97,708	100,399	97,282
		생아편	g	0	537	190
		헤로인	g	0.03	3.73	1.92
		코카인	g	10,943	131	88,321
		기타 <sup>3</sup>	g	1,757	58,450	13,601
향정		메트암페타민	g	28,687	30,463	187,947
		MDMA	g	1,017	688	2,818
		YABA	g	703	2,583	8,538
		LSD	g	22	20	14
		JWH-018 및 그 유사체	g	191	184	478
		기타 <sup>4</sup>	g	4,425	9,480	13,160
대마		대마	주	21,280	3,920	4,970
		대마초	g	75,525	40,125	89,145
		대마종자	g	1,853	1,183	1,155
		대마수지 (해시시)	g	153	1,267	75
		기타 <sup>5</sup>	g	198	9,485	9,550

<sup>2</sup> 2017년 913.198kg, 2018년 132.49kg 압수된 카트(KHAT)는 별도 산정

<sup>3</sup> 양귀비종자, 양귀비종자샐러드드레싱, 양귀비종자쿠키, 옥시코돈, 코데인 등

<sup>4</sup>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N-Ethylpentylone 등), 사이로신(Psilocyn), 알파-PVP, 브로모암페타민, 암페타민 및 그 이성체(N-메틸페네틸아민), 부페돈, 메티오프로파민, 디메틸트립타민, 5-MEO-MIPT, 알킬 니트리트류(이소부틸니트리트 등) 케타민(Ketamine), 클로나제팜(Clonazepam), GHB, 에티졸람, 디아제팜, 로라제팜, 리저직산아미드(LSA), 텍스트로메도르판, 프로포폴, 페이오트 등

<sup>5</sup> 대마오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부탄허니오일, 대마캡슐, 대마드링크, 대마젤리 등

### 3. 마약류 및 원료물질<sup>6</sup> 압수 현황

[표 3-11] 메트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메트암페타민		(슈도)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2014		47,680	0	41.91
2015		56,580	2,400	2,413 <sup>7</sup>
2016		28,687	0	0 <sup>8</sup>
2017		30,463	0	14.19 <sup>9</sup>
2018		187,947	660 <sup>10</sup>	0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연도별	구분	헤로인		무수초산	
		건수	압수량(단위: g)	건수	압수량(단위: ton)
2014		0	0	0	0
2015		3	4.54	0	0
2016		1	0.03	0	0
2017		1	3.73	0	0
2018		1	1.92	0	0

<sup>6</sup>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한 33종[1군 26종 :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판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트라닐산, 이소사프롤,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논, 피페로날, 사프롤, 노르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롤락톤, 1,4-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초산페닐, 벤질시아니드, 벤즈알데히드, 메틸아민, 에틸아민, 에이피에이에이엔, 엔피피, 에이엔피피, 2군 7종 : 안트라닐산, 에틸에테르, 피페리딘, 염산(염류 제외), 메틸에틸케톤, 황산(염류 제외), 톨루엔]의 물질과 그 염류

<sup>7</sup> 2015. 1.~7.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건과 관련, 주거지에서 압수한 2.4kg 결정체는 메트암페타민 완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로 분류(광주지검), 2014. 8.~2015. 7.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마약사범 관련, 슈도에페드린 13g을 압수(울산지검)

<sup>8</sup> 2016. 9.~11.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200g을 제조한 마약사범 관련,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액티피드' 72통(36,000정)을 압수(서울중앙지검)

<sup>9</sup> 2017. 2.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제조하는데 그친 사건 관련, 슈도에페드린 9.83g을 압수(인천지검), 2017. 10. 영국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사건 관련, 에페드린 4.36g 압수(서울동부지검)

<sup>10</sup> 2018. 2.~5.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660g을 제조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 불검출(부산지검)

[표 3-13]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건수	제조량	
			완제품	반제품
2014		0	0	0
2015		5	43	2,400
2016		2	200	0
2017		3	513	0
2018		2	0	660

-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제조사범은 2000년 2건, 2001년 1건이 적발되었으나 2002년 적발된 사례가 없었고, 2003년에는 밀조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사례 1건이 있었음. 2004년과 2005년 적발된 사례가 없었음
- 2006년 1건, 2007년 1건이 적발되었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원료가 함유된 감기약과 살 빼는 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약국 등 시중에서 구입한 후 그 약품에서 추출한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들임
- 2010년 화학박사 출신이 국내 유통이 가능한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외국인 선원이 원료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화학과 교수가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gamma$ -Hydrxide Butyolactone, 일명 ‘물뽕’)를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1년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일명 ‘원단’) 약 10kg를 매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고 예비한 사례가 적발됨
- 2012년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 원료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회사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을 습득, 원료물질인 GBL을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한 사례, 학원강사가 원료물질 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3년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에서 제조 방법을 검색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명의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사범이 원료성분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호주 국적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가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해 메트암페타민 약 2kg을 제조한 사례, 가정집에서 약 4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해 메트암페타민 약 34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5년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8.5g을 제조한 사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 주거지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례,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 미숙으로 미수에 그친 사례, 조직 폭력배 출신 마약 사범이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례, 자신의 집에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을 갖추고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시도하였으나 원료 구입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제조 실패하여 예비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6년 필로폰 원료 물질인 메틸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에페드린’ 주사액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다 경찰 단속으로 미수에 그친 사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부친 운영의 공장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200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7년 인터넷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주택가에 목공예장으로 위장하여 필로폰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00g을 제조한 사례,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제조하는 데 그친 사례,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 필로폰 약 13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8년 외국 포털사이트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서울 소재 영세 공장에 필로폰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660g 제조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 중국인 필로폰 기술자를 고용하여 지방 소재 폐가에 필로폰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마항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후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199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조사범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여 그 이후 국내 밀조사례는 거의 적발되지 않아 국내에서 제조사범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이용한 제조방법을 배워 소량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음. 이에 검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극 단속 중임

## 4. 마약류 밀반입 현황

[표 3-14]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sup>11</sup>

(단위: g)

구분 마약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반입량								
합계	110	44,947 (44,918)	131	54,766 (54,365)	179	38,510 (35,760)	247	26,984 (26,228)	250	292,405 (272,081)
코카인	3	11 (11)	4	7 (7)	6	10,899 (10,899)	11	119 (119)	16	88,301 (88,301)
헤로인	0	0 (0)	2	3 (3)	1	0.03 (0.03)	1	3.73 (3.73)	1	1.93 (1.93)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37	42,055 (42,055)	80	46,515 (46,142)	75	22,585 (21,177)	79	17,117 (16,761)	62	193,240 (171,165)
MDMA	9	120 (120)	5	47 (44)	34	445 (445)	51	686 (686)	68	1,842 (1,752)
LSD	1	8 (8)	2	2 (10)	7	8 (8)	28	17 (17)	26	11 (11)
YABA	2	127 (127)	9	984 (984)	10	2,010 (704)	9	847 (847)	17	7,934 (7,934)
대마초	45	2,443 (2,419)	17	7,023 (6,990)	26	2,219 (2,183)	51	7,896 (7,496)	55	30,924 (30,924)
대마수지 (해시시)	5	87 (87)	7	138 (138)	12	153 (153)	11	244 (244)	2	25 (25)
JWH-018 및 그 유사체	8	96 (91)	5	47 (47)	8	191 (191)	6	57 (57)	4	439 (439)

※ ( )는 압수량

<sup>11</sup> 국내로 밀수된 마약류 중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와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를 합한 수치이고 마약류 출처(외국 국가)가 명확한 경우만 밀반입 통계로 산출

- 2018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292.4kg(250건)으로 2017년도 26.9kg(247건) 대비 986.9% 증가함
- 밀반입된 주요 마약류 중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대만 마약조직 필로폰 대량 밀수사건’ 등으로 인해 전년(17.1kg) 대비 1,028.9% 증가한 193.2kg이고, 대마초는 30.9kg(55건)으로 전년 7.9kg(51건) 대비 291.1% 증가함. 그밖에 엑스터시, 야바, JWH-018 및 그 유사체, 대마수지(해시시) 등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그 반입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

[표 3-15]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중국	35	9,426	9,206	35	2,081	1,968	9	504	504
		필리핀	8	1,029	999	7	1,776	1,706	2	198	194
		베트남	1	11	11	4	197	197	0	0	0
		태국	5	974	974	18	747	711	14	1,708	1,708
		미국	4	5,364	5,364	1	114	114	8	1,403	1,403
		홍콩	0	0	0	2	3	3	2	105	105
		영국	0	0	0	1	1	1	0	0	0
		네덜란드	1	0	0	2	4	4	4	40	40
		멕시코	1	102	102	1	197	197	0	0	0
		대만	2	2,079	2,079	3	10,703	10,646	11	174,298 <sup>12</sup>	152,298
		라오스	0	0	0	0	0	0	2	1,273	1,273
		인도네시아	1	1	0	0	0	0	0	0	0
		캄보디아	14	3,525	2,394	3	1,285	1,206	2	2,412	2,342
		캐나다	1	57	31	0	0	0	1	70	70
		호주	2	17	17	0	0	0	0	0	0
	말레이시아	0	0	0	2	9	8	7	11,229	11,229	
	소계	75	22,585	21,177	79	17,117	16,761	62	193,240	171,166	
코카인		미국	3	22	22	1	38	38	3	9	9
		네덜란드	0	0	0	7	22	22	3	11	11
		홍콩	1	0	0	3	59	59	0	0	0
		영국	0	0	0	0	0	0	1	0.5	0.5

<sup>12</sup> 대만 마약조직이 필로폰 약 112kg을 태국 방콕 발 화물선에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밀수입

## PART 3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코카인	에콰도르	0	0	0	0	0	0	1	63,880	63,880	
	캐나다	0	0	0	0	0	0	1	1	1	
	프랑스	0	0	0	0	0	0	1	3	3	
	브라질	0	0	0	0	0	0	4	21,395	21,395	
	파나마	0	0	0	0	0	0	1	3,000	3,000	
	스위스	0	0	0	0	0	0	1	1.5	1.5	
	콜롬비아	2	10,877	10,877	0	0	0	0	0	0	
	소계	6	10,899	10,899	11	119	119	16	88,301	88,301	
헤로인	미국	1	0.03	0.03	1	3.73	3.73	1	1.9	1.9	
	소계	1	0.03	0.03	1	3.73	3.73	1	1.9	1.9	
크라툼	미국	0	0	0	0	0	0	1	7.4	7.4	
	소계	0	0	0	0	0	0	1	7.4	7.4	
대마수지 (해시시)	미국	3	26	26	2	153	153	0	0	0	
	캐나다	4	93	93	1	14	14	0	0	0	
	영국	5	30	30	5	60	60	1	16	16	
	멕시코	1	4	4	0	0	0	0	0	0	
	스페인	0	0	0	1	3	3	0	0	0	
	네덜란드	0	0	0	2	14	14	1	10	10	
	소계	12	153	153	11	244	244	2	26	26	
MDMA (엑스터시)	캐나다	2	6	6	1	6	6	0	0	0	
	미국	4	95	95	6	74	74	5	130	125	
	독일	4	35	35	3	38	38	6	153	153	
	대만	0	0	0	2	59	59	1	99	99	
	중국	1	11	11	0	0	0	0	0	0	
	호주	1	45	45	0	0	0	0	0	0	
	네덜란드	12	103	103	30	463	463	39	766	681	
	영국	3	9	9	4	13	13	10	268	268	
	베트남	0	0	0	2	7	7	1	3	3	
	태국	1	33	33	2	10	10	2	7	7	
	벨기에	4	17	17	1	16	16	0	0	0	
	슬로바키아	1	69	69	0	0	0	0	0	0	
	일본	0	0	0	0	0	0	1	0.7	0.7	
	프랑스	0	0	0	0	0	0	1	31	31	
	말레이시아	0	0	0	0	0	0	2	385	385	
	핀란드	1	22	22	0	0	0	0	0	0	
소계	34	445	445	51	686	686	68	1,842.7	1,752.7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케타민		캄보디아	1	198	198	0	0	0	0	0	0
		미국	0	0	0	1	9	9	3	989	989
		태국	0	0	0	0	0	0	1	7	7
		영국	0	0	0	1	14	14	0	0	0
		네덜란드	0	0	0	1	5	5	2	11	11
		소계	1	198	198	3	28	28	6	1,007	1,007
YABA (아바)		태국	10	2,010	704	7	522	522	15	5,450	5,450
		라오스	0	0	0	1	66	66	2	2,484	2,484
		베트남	0	0	0	1	259	259	0	0	0
		소계	10	2,010	704	9	847	847	17	7,934	7,934
JWH-018 및 그 유사체 (합성대마)	adamantan- 1-yl	중국	1	10	10	0	0	0	0	0	0
	ADB- CHMINACA	중국	1	119	119	0	0	0	0	0	0
	AMB- FUBINACA, ADB- FUBINACA, 5F-ADB	중국	0	0	0	0	0	0	1	14	14
	5F-AKB-48, STS-135, 5F-ADB	미국	1	3	3	1	3	3	0	0	0
	5F-AKB-48	미국	1	1	1	0	0	0	0	0	0
	AMB- FUBINACA, 5-fluoro- MDMB- PICA	미국	0	0	0	0	0	0	1	50	50
	5F-PB-22	미국	·	4	4	0	0	0	0	0	0
	5F-AKB-48, 5F-PB-22, STS-135	미국	1	28	28	0	0	0	0	0	0
	AB- CHMINACA	미국	1	3	3	2	29	29	0	0	0
	MDMB- CHMICA	미국	·	3	3	0	0	0	0	0	0
	5F-AKB-48, ADB- CHMINACA, AB- CHMINACA	미국	1	14	14	0	0	0	0	0	0

PART 3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JWH-018 및 그 유사체 (합성대마)	5F-UR-144	미국	1	5	5	0	0	0	0	0	0
	JWH-073	미국	·	1	1	0	0	0	0	0	0
	AMB- FUBINACA ADB- FUBINACA	일본	0	0	0	0	0	0	1	372	372
	ADBA- CHMINACA, 5-fluoro- APINAC, ADB- FUBINACA, AMB- FUBINACA	폴란드	0	0	0	0	0	0	1	4	4
	AMB- FUBINACA	베트남	0	0	0	1	18	18	0	0	0
	5F-ADB, MMB-2201, 5F-AKB, 5F-PB22	미국	0	0	0	1	2	2	0	0	0
	5-fluoro APINAC	네덜란드	0	0	0	1	5	5	0	0	0
	소계		8	191	191	6	57	57	4	440	440
메틸페니데이트	뉴질랜드		0	0	0	0	0	0	1	30	30
	소계		0	0	0	0	0	0	1	30	30
사일로신	네덜란드		1	14	14	4	85	85	3	77	77
	미국		0	0	0	1	8	8	0	0	0
	캐나다		0	0	0	1	5	5	0	0	0
	소계		1	14	14	6	98	98	3	77	77
GHB	중국		1	540	540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2	163	163	0	0	0
	벨기에		0	0	0	1	145	145	0	0	0
	미국		0	0	0	1	70	70	1	178	178
	소계		1	540	540	4	378	378	1	178	178
알프라졸람	미국		1	20	20	0	0	0	0	0	0
	중국		0	0	0	0	0	0	1	46	46
	태국		1	17	17	0	0	0	1	9	9
	루마니아		1	26	26	0	0	0	0	0	0
	영국		1	1	1	0	0	0	0	0	0
	소계		4	64	64	0	0	0	2	55	55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에티졸람		리투아니아	0	0	0	1	3	3	0	0	0
		일본	1	132	132	1	10	10	0	0	0
		소계	1	132	132	2	13	13	0	0	0
졸피뎴		일본	0	0	0	1	9	9	0	0	0
		미국	1	10	10	1	10	10	0	0	0
		프랑스	0	0	0	0	0	0	1	4.6	4.6
		이스라엘	0	0	0	1	66	66	0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1	9.9	9.9
		인도	4	60	60	0	0	0	0	0	0
		홍콩	2	185	185	0	0	0	0	0	0
		소계	7	255	255	3	85	85	2	14.5	14.5
		디아제팜		미국	1	5	5	0	0	0	0
스리랑카	1			33	33	0	0	0	0	0	0
독일	0			0	0	1	3	3	0	0	0
소계	2			38	38	1	3	3	0	0	0
메스 케치논 및 그 유사체		대만	0	0	0	1	175	175	0	0	0
		미국	1	3	3	0	0	0	0	0	0
		중국	1	11	11	0	0	0	2	30	30
		네덜란드	0	0	0	0	0	0	2	15	15
		소계	2	14	14	1	175	175	4	45	45
클로나제팜		멕시코	0	0	0	1	20	20	0	0	0
		소계	0	0	0	1	20	20	0	0	0
로라제팜		독일	0	0	0	0	0	0	1	8	8
		미국	1	6	6	0	0	0	0	0	0
		소계	1	6	6	0	0	0	1	8	8

PART 3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암페타민 및 이성체	N-Methylphenethylamine	미국	2	74	74	1	62	62	2	7.6	7.6
		미국	0	0	0	4	132	132	0	0	0
		네덜란드	1	5	5	4	33	33	0	0	0
		영국	1	6	6	0	0	0	0	0	0
		소계	4	85	85	9	227	227	2	7.6	7.6
옥시코돈		영국	0	0	0	0	0	0	2	4.3	4.3
		독일	0	0	0	1	2	2	0	0	0
		소계	0	0	0	1	2	2	2	4.3	4.3
LSD		네덜란드	3	4	4	20	15	15	17	6	6
		캐나다	2	0	0	5	1	1	3	4	3
		영국	2	4	4	0	0	0	1	0.7	0.7
		미국	0	0	0	3	1	1	3	1	1
		벨기에	0	0	0	0	0	0	1	0.1	0.1
		독일	0	0	0	0	0	0	1	0.1	0.1
		소계	7	8	8	28	17	17	26	11.9	10.9
디메틸트립타민 (DMT)		독일	1	5	5	0	0	0	0	0	0
		멕시코	0	0	0	2	601	601	0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2	1.6	1.6
		캐나다	0	0	0	0	0	0	2	2	2
		소계	1	5	5	2	601	601	4	3.6	3.6
조피클론		미국	0	0	0	0	0	0	1	6.6	6.6
		소계	0	0	0	0	0	0	1	6.6	6.6
5-MEO-MIPT		캐나다	0	0	0	1	1	1	0	0	0
		소계	0	0	0	1	1	1	0	0	0
1P-LSD		네덜란드	0	0	0	3	0.5	0.5	1	0.1	0.1
		캐나다	3	2	2	1	0.1	0.1	0	0	0
		소계	3	2	2	4	0.6	0.6	1	0.1	0.1
알킬니트리트류 (일명 '러시')	isobutyl nitrite	영국	4	179	179	1	60	60	0	0	0
		홍콩	2	40	40	3	80	80	0	0	0
		스웨덴	0	0	0	0	0	0	1	30	30
		싱가포르	2	162	162	0	0	0	0	0	0
		캄보디아	1	50	50	0	0	0	0	0	0
		슬로바키아	1	28	28	0	0	0	0	0	0
		미국	4	165	165	7	418	418	0	0	0
		독일	1	27	27	0	0	0	0	0	0
		중국	1	28	28	15	6,308	6,308	1	25	25
호주	0	0	0	1	60	60	0	0	0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알킬니트리트류 (일명 '러시')	isopropyl nitrite	영국	1	200	200	1	375	375	0	0	0
		슬로바키아	1	34	34	0	0	0	0	0	0
		호주	0	0	0	1	65	65	0	0	0
		프랑스	1	27	27	1	162	162	0	0	0
		중국	1	279	279	0	0	0	0	0	0
	isopentyl nitrite	프랑스	0	0	0	4	282	282	1	10	10
		슬로바키아	0	0	0	1	40	40	0	0	0
소계		20	1,219	1,219	35	7,850	7,850	3	65	65	
2C-D		네덜란드	0	0	0	0	0	0	1	0.9	0.9
		소계	0	0	0	0	0	0	1	0.9	0.9
4-플루오르암페타민		대만	1	300	105	0	0	0	0	0	0
		네덜란드	1	156	156	0	0	0	0	0	0
		소계	2	456	261	0	0	0	0	0	0
테마제팜		미국	0	0	0	0	0	0	1	5.0	5.0
		소계	0	0	0	0	0	0	1	5.0	5.0
N-메틸페네틸아민		미국	0	0	0	0	0	0	1	29.7	29.7
		소계	0	0	0	0	0	0	1	29.7	29.7
코데인		필리핀	0	0	0	0	0	0	1	26.7	26.7
		소계	0	0	0	0	0	0	1	26.7	26.7
페이오트		네덜란드	0	0	0	0	0	0	1	0.6	0.6
		태국	0	0	0	0	0	0	1	73.3	73.3
		헝가리	0	0	0	0	0	0	1	10.5	10.5
		소계	0	0	0	0	0	0	3	84.4	84.4
덱스트로메토르판		영국	0	0	0	0	0	0	1	2.5	2.5
		미국	0	0	0	0	0	0	12	4,911.1	4,752.7
		소계	0	0	0	0	0	0	13	4,913.6	4,755.2
2-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네덜란드	0	0	0	0	0	0	1	6.1	6.1
		소계	0	0	0	0	0	0	1	6.1	6.1
메티오프로파인		미국	0	0	0	0	0	0	1	3.3	3.3
		소계	0	0	0	0	0	0	1	3.3	3.3
3-플로오펜메트라진		네덜란드	0	0	0	0	0	0	1	4.9	4.9
		소계	0	0	0	0	0	0	1	4.9	4.9
부탄히니오일		미국	0	0	0	0	0	0	1	6.9	6.9
		소계	0	0	0	0	0	0	1	6.9	6.9
모르핀		베트남	0	0	0	0	0	0	1	1.8	1.8
		소계	0	0	0	0	0	0	1	1.8	1.8

PART 3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LSA (리저직산아미드)	영국		0	0	0	0	0	0	1	34	34
	소계		0	0	0	0	0	0	1	34	34
디클라제팜	중국		0	0	0	0	0	0	1	12.35	12.35
	소계		0	0	0	0	0	0	1	12.35	12.35
양귀비종자	네덜란드		0	0	0	0	0	0	1	10	10
	미국		1	37	37	32	23.6kg	23.6kg	15	7,138	7,138
	일본		0	0	0	1	10kg	10kg	0	0	0
	프랑스		0	0	0	1	0.04kg	0.04kg	0	0	0
	소계		1	37	37	34	33.64kg	33.64kg	16	7,148	7,148
양귀비종자 샐러드드레싱	미국		0	0	0	14	12.3kg	12.3kg	3	2,248	2,248
	소계		0	0	0	14	12.3kg	12.3kg	3	2,248	2,248
양귀비종자 쿠키	미국		3	1,720	1,720	10	6,495	6,495	2	330	330
	호주		0	0	0	1	5,640	5,640	0	0	0
	독일		0	0	0	1	375	375	0	0	0
	소계		3	1,720	1,720	12	12.5kg	12.5kg	2	330	330
대마초	미국		8	1,369	1,359	21	1,970	1,970	38	10,760	10,760
	캐나다		6	648	648	6	1,187	1,187	1	925	925
	독일		0	0	0	2	902	902	1	50	50
	네덜란드		5	59	59	2	31	31	3	81	81
	태국		0	0	0	2	155	155	1	133	133
	중국		0	0	0	2	17	17	0	0	0
	프랑스		0	0	0	0	0	0	1	7	7
	필리핀		2	61	61	0	0	0	1	7	7
	벨기에		1	19	19	0	0	0	1	260	260
	영국		2	32	32	6	767	767	3	226	226
	스페인		1	1	1	2	521	521	1	3	3
	대만		0	0	0	1	1	1	0	0	0
	체코		0	0	0	1	5	5	0	0	0
	베트남		0	0	0	2	2,155	1,755	0	0	0
	말레이시아		0	0	0	1	58	58	1	123	123
	슬로바키아		0	0	0	0	0	0	0	0	0
	호주		0	0	0	1	7	7	1	4	4
	오스트리아		0	0	0	1	117	117	0	0	0
	라오스		1	30	4	0	0	0	0	0	0
	일본		0	0	0	1	3	3	0	0	0
	홍콩		0	0	0	0	0	0	1	63	63
	남아프리카 공화국		0	0	0	0	0	0	1	18,282	18,282
	소계		26	2,219	2,183	51	7,896	7,496	65	30,924	30,924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6			2017			2018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종자	영국	4	8	8	6	4	4	30	58	58	
	싱가포르	0	0	0	0	0	0	0	0	0	
	네덜란드	3	1	1	2	2	2	3	2	2	
	말레이시아	1	1	1	0	0	0	0	0	0	
	리투아니아	3	44	44	1	27	27	0	0	0	
	스위스	1	1	1	0	0	0	12	6.2	6.2	
	미국	0	0	0	1	1,150	1,150	8	3.4	3.4	
	스페인	0	0	0	0	0	0	2	0.4	0.4	
	중국	1	165	165	0	0	0	0	0	0	
	소계	13	220	220	10	1,183	1,183	46	70	70	
대마오일	미국	1	20	20	62	6,825	6,825	36	8,123	8,123	
	네덜란드	1	2	2	1	38	38	0	0	0	
	영국	2	40	40	1	500	500	0	0	0	
	독일	0	0	0	3	50	50	1	10	10	
	리투아니아	0	0	0	1	10	10	0	0	0	
	홍콩	0	0	0	1	60	60	0	0	0	
	스페인	0	0	0	4	56	56	1	60	60	
소계	4	62	62	73	7,539	7,539	38	8,193	8,193		
대마쿠키	미국	0	0	0	3	839	839	1	150	150	
	소계	0	0	0	3	839	839	1	150	150	
대마캡슐 (알약)	미국	0	0	0	10	209	209	2	26.1	26.1	
	소계	0	0	0	10	209	209	2	26.1	26.1	
대마카트리지	미국	0	0	0	8	683	683	19	128	128	
	캐나다	0	0	0	0	0	0	1	5	5	
	소계	0	0	0	8	683	683	20	133.0	133.0	
대마초콜릿	미국	1	136	136	1	215	215	3	234.48	234.48	
	소계	1	136	136	1	215	215	3	234.48	234.48	
대마드링크	미국	0	0	0	0	0	0	1	59	59	
	소계	0	0	0	0	0	0	1	59	59	
대마차	스웨덴	0	0	0	0	0	0	1	225	225	
	소계	0	0	0	0	0	0	1	225	225	
대마캔디 (사탕)	미국	0	0	0	0	0	0	2	134.14	134.14	
	소계	0	0	0	0	0	0	2	134.14	134.14	
대마젤리	미국	0	0	0	0	0	0	3	369.46	369.46	
	소계	0	0	0	0	0	0	3	369.46	369.46	
기타 대마제품	미국	0	0	0	0	0	0	5	187.84	187.84	
	스페인	0	0	0	0	0	0	1	8.85	8.85	
	소계	0	0	0	0	0	0	6	196.69	196.69	

## 5. 주요 마약류별 밀반입 적발 현황

### 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 2018년 필로폰 밀반입량은 총 193,240g으로 전년대비 1,028.9% 대폭 증가하였고, 압수량도 171,165g으로 921.2% 증가함
-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중 중국으로부터의 밀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18년 대만 마약조직이 관여된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밀반입량은 전체 필로폰 밀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대폭 증가함
- 2018. 2.~8. 대만 마약조직(중간총책·운반책·판매책 등)·일본 야쿠자·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된 필로폰 밀수·판매 등 사건을 적발하여 필로폰 약 152.28kg을 압수함

### 나. 코카인

- 2018년 코카인 밀반입량 및 압수량은 총 88,301g으로 '남미 발 우리나라 경유 환적화물 적발' 원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함
- 2012년 우리 국민이 인터넷으로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3년 한국계 미국인 3명이 기탁화물 내 보관되어 있던 신발 4짝에 코카인 300g 씩을 은닉하여 총 1,180g 가량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4년 미국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 3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각각 적발됨

- 2015년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캐나다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로부터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각각 적발됨
- 2016년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코카인 각 6,400g, 4,478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7년 우리 국민이 코카인 59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8년 홍콩인이 브라질로부터 코카인 약 19.8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카타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최종 목적지 마카오)하여 밀반입, 성명불상자가 에콰도르로부터 코카인 약 63.88kg을 선적한 후, 멕시코 등을 경유해 부산항에 입항(최종 목적지 중국)하여 밀반입, 콜롬비아인이 파나마로부터 코카인 약 3kg이 은닉된 가방을 휴대한 채, 상파울루,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최종 목적지 라오스)하여 밀반입 하다 각각 적발됨

#### 다. 헤로인

- 2010년과 2012년에는 소량의 헤로인 밀반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11년, 2013년, 2014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음
- 2015년 헤로인 총 압수량은 4.54g으로, 미국으로부터 밀반입된 3.19g(3건)을 제외한 압수량은 국적불명임
- 2016년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03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7년 캐나다로부터 헤로인 3.7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8년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1.9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됨

## 라. 대마초

- 2012년에는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944.57g을 밀수한 사례가 적발됨
- 2013년 음반 판매업자가 네덜란드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837g을 밀수한 사건과 러시아인이 러시아로부터 대마카루 1,000g을 밀수한 사건, 주한미군이 지인의 부탁으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435g을 밀수한 사건이 각각 적발되는 등 대규모 밀수 사례가 발생함
- 2014년 미국, 네덜란드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그 외 체코, 카메룬, 독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등으로부터 대마초가 밀반입되는 등 공급루트가 다변화되었음
- 2015년 전체 대마초 밀반입량은 7,023g으로 전년대비 187.5%에 해당되어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단일사건으로 대만인이 캐나다로부터 대마초 6,523g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는 것을 적발하였기 때문임
- 2016년 미국, 캐나다로부터 대규모 밀수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전체 대마초 밀반입량은 2,219g으로 전년대비 68.3% 감소함
- 2017년 다량의 대마초가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으로부터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함. 최근 미국, 캐나다 등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향후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적발 사례로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1kg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한 뒤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 후 수령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우리 국민이 클럽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 후 캐나다로부터 대마

약 450g을 밀수입한 사례가 적발 되었으며, 중고차판매원 등이 베트남으로부터 대마 약 1.1kg을 밀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됨

- 2018년 대마초 밀반입량은 총 30.9kg으로 전년대비 291.1% 증가, 이는 단일 사건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약 18kg을 홍콩을 경유,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는 것을 적발하고, 미국 국적 교포가 미국으로부터 대마 약 2.25k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는 것을 적발하였기 때문임
- 또한 북아메리카 일부 주의 대마초 판매 및 흡연 합법화로 인해 미국 등으로부터 국제 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해 일반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등 제품류 대마 밀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 최근 인터넷·SNS의 발달로 이를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20 ~ 30대 연령층 피의자들이 구글이나 유튜브 등에서 대마 재배 기술을 습득한 후 서울·경기도·부산 등 도심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 전문적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함
- 피의자들은 딥웹 대마 전문 판매 사이트 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구입 대금 입금에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대마를 은닉해 둔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적발됨
- 주요 적발 사례로 딥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의 유명 판매상인 ‘서울킹’ 일당 3명이 경기도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 생육실, 건조실, 조명 등 재배시설을 갖춰 놓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사례가 적발됨
  - 피의자들은 약 200회 이상 판매광고를 통해 매수자를 유인하고 약 5개월 간 합계 1억 2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함

## 마. 야 바<sup>13</sup>

- 최근 국내 체류 태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여 지역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 등을 중심으로 공장 기숙사, 아시아음식 식료품 가게, 노래방 등에서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함
- 주요 적발 사례로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3명이 태국에서 야바 1,418g을 밀수한 사례, 태국인 3명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990g을 밀수입한 사례,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147g을 밀수입한 사례, 태국인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329g을 밀수입한 사례 등이 적발됨

## 바. 기타

- 기타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JWH-018 및 그 유사체, 암페타민 및 이성체,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옥시코돈, LSD, 코데인, GHB, 사일로신, 디메틸트립타민(DMT), 알킬니트리트류<sup>14</sup>, 아편계 제품류, 대마계 제품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엠디엠에이, JWH-018, LSD, 알킬니트리트류 등은 인터넷·SNS를 통해 구입이 용이하고 메트암페타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환각작용은 수배 강하며 휴대가 간편하여 클럽 파티용으로 무직자, 대학생, 유학생 등 젊은 층이 밀반입하고 있음

<sup>13</sup>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인 쿤사가 메트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 (코데인 등 5%)를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함

<sup>14</sup> 일명 ‘러시’로 불리고 있으며,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흡입 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로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이 남용됨

- 최근에는 인터넷과 유통시스템의 발달로 일반인들이 개인 소비 목적 등으로 해외직구 등을 이용하여 양귀비종자, 대마종자 뿐만 아니라 아편계 제품류(양귀비종자샐러드 드레싱, 양귀비종자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대마오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등)를 다량으로 밀반입하고 있음

##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표 3-16]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속사범수	551	640	957	932	948
증감률(%)	40.2	16.2	49.5	-2.6	1.7

- 2000년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자들 중심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대폭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영향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의 국내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2010년 85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1년에는 27개국 295명으로 전년대비 65.6% 감소함
- 2012년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 및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범죄 증가로 외국인 마약류사범 31개국 359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38.6%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0개국 393명이 단속되어 소폭 증가함
- 2015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34개국 640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16.2%(전년도 33개국 551명) 증가함
- 2016년 31개국 957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49.5%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4개국 932명이 단속되어 전년과 거의 동일 수준
- 2018년 35개국 948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최근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원인은 외국과의 교류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관광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3-17]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551 (100)	640 (100)	957 (100)	932 (100)	948 (100)
마약	17 (3.1)	26 (4.1)	25 (2.6)	14 (1.5)	36 (3.8)
향정	328 (59.5)	499 (78.0)	834 (87.1)	784 (84.1)	770 (81.2)
대마	206 (37.4)	115 (17.9)	98 (10.2)	134 (14.4)	142 (15.0)

※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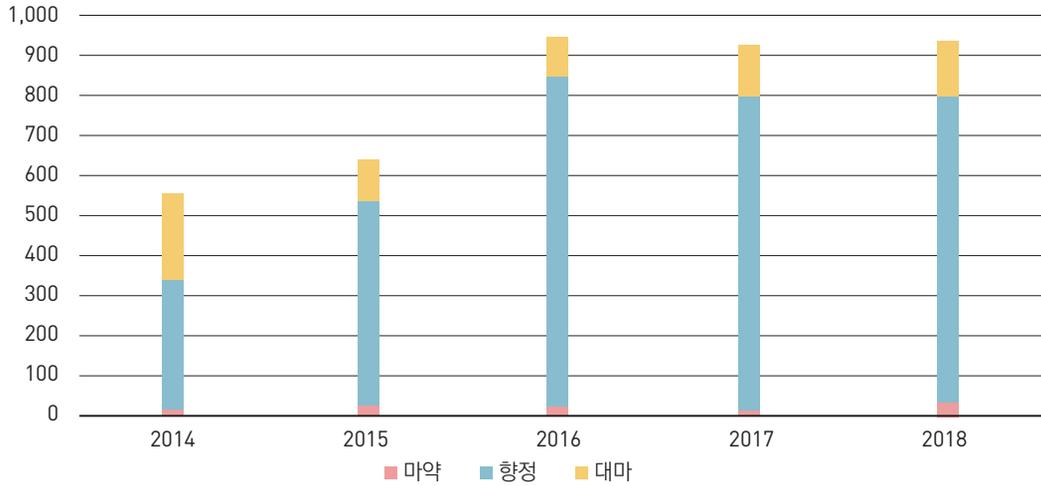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부터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이후에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함
- 2018년 향정사범이 81.2%, 대마사범이 15.0%, 마약사범이 3.8%를 각각 점유함
-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인(특히, 조선족)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사례, 대만인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례 및 태국인 야바(YABA) 밀반입 및 투약 사례가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주로 지방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필로폰을 주사 방식으로 투약하기 보다는 속칭 ‘프리베이스’<sup>15</sup> 방식으로 투약하고, 위챗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함

<sup>15</sup>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2개의 빨대를 꽂는 물병의 물을 통과하도록 하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 대만인 마약조직원들은 태국 방콕항에서 유압기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수입 화물로 위장한 후 부산항을 통해 경기 화성시 소재 공장으로 밀반입 하는 등 국내 또는 일본 등지로 유통하려는 의도로 2018년 지속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함
- 이들은 대만 현지에서 SNS 등을 통해 상당한 대가를 조건으로 필로폰 운반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10대 및 20대 초반 연령대까지 본건 필로폰 밀수에 가담함
- 또한, 국내 유통을 위해 입국한 대만인들에게 페이스타임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로 각각 운반·알선·판매를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함
- 국내 체류 태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여 투약함
- 지역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태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사이에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빈발함
- 국내 체류 태국인 마약 공급책(밀수범)이 태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야바를 밀수한 후, 중간 판매상에게 도매가로 공급하고 중간 판매상은 이윤을 덧붙여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됨
- 주로 휴일 또는 월급날에 의정부, 대전, 청주, 창원, 진주, 광주, 춘천 등지의 ‘공장 기숙사’, ‘아시아음식 식료품 가게’, ‘지역 노래방·나이트클럽’ 등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 음주 또는 도박 시 야바를 매매 및 투약함

[그림 3-8]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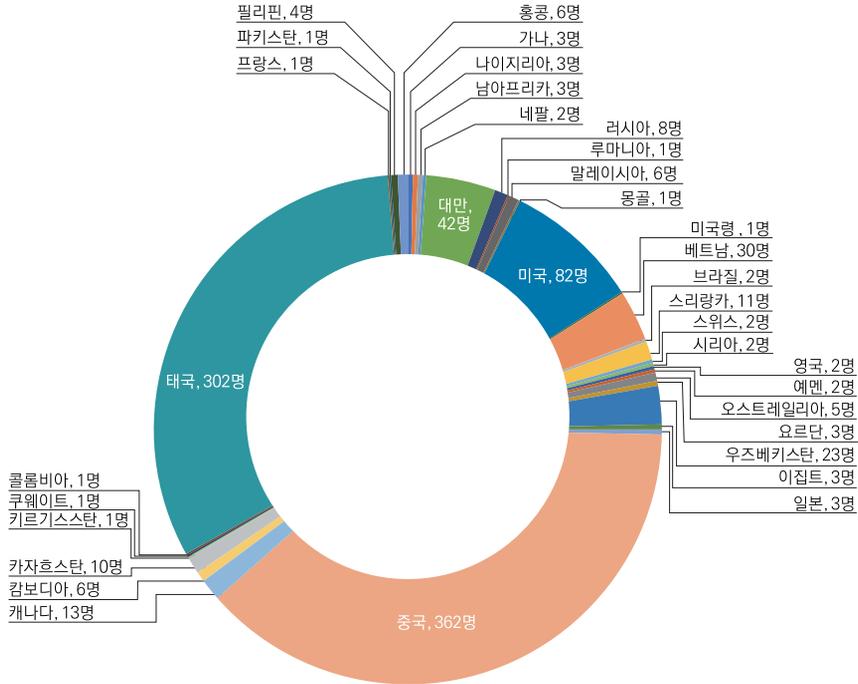


[표 3-18]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연도별 순위	2014	2015	2016	2017	2018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2	미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3	태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그림 3-9] 2018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



[표 3-19]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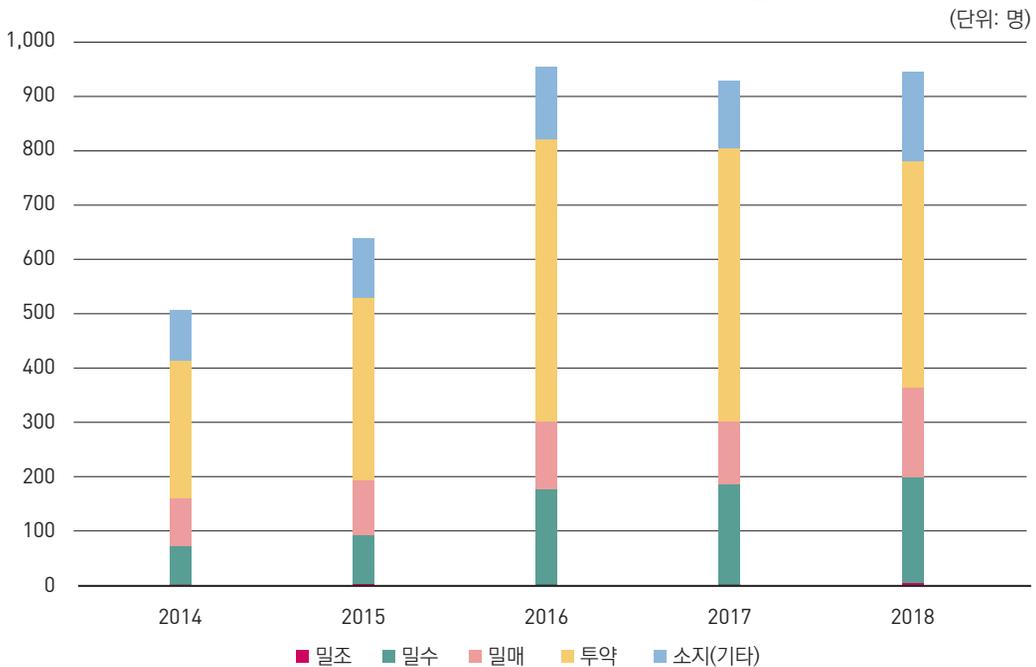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505 (100)	640 (100)	957 (100)	932 (100)	948 (100)
밀조	0 (0.0)	1 (0.2)	0 (0.0)	0 (0.0)	3 (0.3)
밀수	71 (14.1)	91 (14.2)	176 (18.4)	186 (20.0)	196 (20.7)
밀매	86 (17.0)	101 (15.8)	125 (13.1)	115 (12.3)	165 (17.4)
투약	254 (50.3)	336 (52.5)	522 (54.5)	504 (54.1)	417 (44.0)
소지	38 (7.5)	36 (5.6)	30 (3.1)	38 (4.1)	54 (5.7)
기타	56 (11.1)	75 (11.7)	104 (10.9)	89 (9.5)	113 (11.9)

※ ( )는 구성비 %

- 국제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이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용이, 마약류를 대하는 국가별 문화 차이 및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시장의 높은 시세 등으로 밀수, 밀매, 투약 등 유형별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사증면제제도를 악용하여 관광객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취업브로커를 통해 불법 취업하고, 불안정한 생활(신분, 최저임금 등)에서 순간적 탈피 또는 호기심에서 마약류를 밀수·밀매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 2018년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중국인과 태국인,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함

[그림 3-10]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표 3-20]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국적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6	(100)	91	(100)	176	(100)	186	(100)	196
중국	43	(56.6)	61	(67.0)	116	(65.9)	89	(47.9)	90	(45.9)
미국	21	(27.6)	11	(12.1)	10	(5.7)	7	(3.8)	17	(8.7)
러시아			2	(2.2)	2	(1.1)	1	(0.5)		
필리핀			1	(1.1)	2	(1.1)				
태국	8	(10.6)	13	(14.3)	37	(21.1)	75	(40.4)	70	(35.7)
캐나다			1	(1.1)					3	(1.5)
싱가포르	1	(1.3)								
모로코	1	(1.3)								
방글라데시			1	(1.1)						
베트남	2	(2.6)			3	(1.7)			3	(1.5)
우즈베키스탄			1	(1.1)	1	(0.6)			3	(1.5)
영국							1	(0.5)		
사우디아라비아					2	(1.1)				
스리랑카					1	(0.6)				
이집트					2	(1.1)	1	(0.5)		
나이지리아							3	(1.7)	1	(0.5)
대만							6	(3.2)	2	(1.0)
말레이시아							1	(0.5)		
예멘							1	(0.5)		
일본							1	(0.5)	2	(1.0)
가나									1	(0.5)
브라질									1	(0.5)
카자흐스탄									1	(0.5)
캄보디아									2	(1.0)

※ ( )는 구성비 %

[표 3-21]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순위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2	미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3	태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경우, 2004년에는 이란인(39.1%), 2005년에는 미국인(13.0%)과 중국인(13.0%),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인(40.0%), 2007년에는 중국인(28.6%)이 주류를 이루었고, 2008년~2010년에는 태국인이 각 64.7%, 29.4%, 32.0%를 점유하였음
- 2011년 중국인이 44.4%를, 2012년~2013년에는 미국인이 각각 38.1%, 38.3%를 점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음
- 2014년~2018년에는 중국인이 각각 56.6%, 67.0%, 65.9%, 47.9%, 45.9%를 점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 원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마약류 밀매로 큰 수익이 보장됨에 따라 중국인(특히, 조선족)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 가. 개 요

- 예전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기업형 국제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 단체로서 그 활동도 금품갈취 등 전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어 마약류 밀수·밀매를 조직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2010년경부터 조직폭력배가 마약을 금기시하던 관행을 깨고,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류 밀매와 밀수에 적극 개입하거나 개인적 일탈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국내 폭력조직이 대만 마약조직 및 일본 ‘야쿠자’, 중국 ‘흑사회’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밀수·밀매에 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바, 특히 2015년에는 일본 야쿠자 ‘교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메트암페타민 약 10kg을 국내에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고, 2018년에는 대만 마약조직과 일본 야쿠자, 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150kg 이상을 국내 또는 일본 등지로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음
-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013년 25개파 38명, 2014년 48개파 69명, 2015년 38개파 55명, 2016년 48개파 65명, 2017년 44개파 72명, 2018년 35개파 77명임

[표 3-22]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	점유율(%)
2014		9,984	69	0.7
2015		11,916	55	0.5
2016		14,214	65	0.5
2017		14,123	72	0.5
2018		12,613	77	0.6

[표 3-23]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2014		69 (100)	0 (0.0)	0 (0.0)	15 (22.7)	34 (48.8)	20 (28.5)
2015		55 (100)	1 (1.8)	2 (3.6)	18 (32.8)	28 (50.9)	6 (10.9)
2016		65 (100)	1 (1.5)	2 (3.1)	24 (36.9)	25 (38.5)	13 (20.0)
2017		72 (100)	0 (0.0)	2 (2.8)	19 (26.4)	28 (38.9)	23 (31.9)
2018		77 (100)	0 (0.0)	1 (1.3)	20 (26.0)	39 (50.6)	17 (22.1)

※ ( )는 구성비 %

[표 3-24] 2018년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합계
		0	1	20	39	17	77
	합계	0	1	20	39	17	77
인천	부평시장파(인천)			2			2
경기	안양에이피신파(안양)					1	1
	오산시내파(오산)			1			1
충청	신유성파(대전)			2			2
영남	칠성파(부산)			7	10	2	19
	부대식구파(부산)				1		1
	통합서면파(부산)				1		1
	재건20세기파(부산)				4	1	5
	월드파(부산)			1		2	3
	광안칠성파(부산)				1	1	2
	하단파(부산)				1	1	2
	창수파(부산)			1	1	1	3
	재건동방파(부산)			1			1
	악마파(부산)				1		1
	강철파(부산)				1	1	2
	영도파(부산)					3	3
	장철파(부산)				1		1
	채은이파(부산)			1	1		2
	대운파(부산)			1			1
	신20세기파(부산)					1	1
	사상통합파(부산)				1		1
	재건연산통합파(부산)				2	1	3
	재건부전동파(부산)			1	2		3
모라파(부산사상)				2		2	
홍구파(부산사상)				1		1	
연애인파(울산)				1		1	
방어진파(울산)					1	1	
스타파(김해)			1			1	
삼방파(김해)		1			2	3	
연합오동동파(창원)				1		1	
신동방파(밀양)					3	3	
호남	광주범서방파(광주)					1	1
	수기동파(광주)				1		1
	구시장파(익산)				1		1

## 나. 대표적 개입사례

### 밀제조관련 사건

- 1999. 5.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신동파」 조직원 2명이 판매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함) 9kg 밀조한 후 대구·부산 지역에서 밀매 (대구지검)
- 2001.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파」 행동대장 등이 필로폰 약 10kg 밀조한 후 부산·대구 지역에서 밀매 (서울중앙지검)
- 2003. 11.경 일본 야쿠자 「마쓰바카이(松葉會)」 부두목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반제품을 밀반입한 후 일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반제품 140ml를 화장품 통속에 은닉하여 경유지인 우리나라로 밀반입 후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려다 적발 (서울중앙지검)
- 2015. 1.~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구월배파」 조직원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15g 제조, 마약류 원료성분이 함유된 물질 2.4kg을 압수 (광주지검)
- 2015. 12.경 강원지역 폭력조직 「강릉식구파」 행동대장 등이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 필로폰과 유사한 백색 결정체를 만들어내어 필로폰 제조 예비 (부산지검)

### 밀수관련 사건

- 2007. 8.경 성남지역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1.9g 밀반입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7. 9.경 일본 최대 야쿠자 「아마구치구미(山口組)」의 중간 보스 등이 홍콩으로부터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약 615g 밀반입하고, 같은 해 11. 8.경 위 필로폰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미수 (부산지검)
- 2009. 9.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9.74g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 LA 한인지역 갱단 「LGKK」 조직원이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약 48.2g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간부가 필로폰 987g 중국에서 구입,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입출할 목적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3.~4.경 충주지역 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이 태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37g 밀반입 (청주지검)
- 2010.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6.58g 밀반입 (부산동부지청)
- 2010. 4.경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黑社會)」 심양지역 두목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00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1. 10.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밀반입 (수원지검)
- 2011. 12.~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 밀반입 (전주지검)

-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8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2. 6.~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 등 4명이 대만 마약밀매조직과 연계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kg 밀반입 (부산지검)
- 2012. 10.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과 연계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4kg 밀반입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약 63g 밀반입 (수원지검)
- 2013.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7kg을 대형 커피머신에 은닉하여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4.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비닐로 포장한 뒤 허리부위에 둘러싸는 방법으로 옷 속에 은닉하여 김해 공항으로 밀반입 (울산지검)
- 2015. 4.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이 영국으로부터 대마종자 68개를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밀반입 (안산지청)
- 2015. 5.경 일본 야쿠자 「교쿠토카이(極東會)」 지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약 10kg을 위 야쿠자 조직원 등 2명에게 전달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려다 적발 (서울중앙지검)
- 2015.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행동대장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성명 불상자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8kg을 건네받아 화물선 조리장 객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6.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신파」 조직원이 중국 체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김포공항으로 필로폰 약 261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6. 6.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강화월드파」 행동대장이 조선족 운반책에게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0.6g을 밀반입하도록 지시 (인천지검)
- 2017. 3.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천안남산파」 고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7.77g을 향문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8. 4.경 김해지역 폭력조직 「삼방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대마 약 130.36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밀매관련 사건

- 2007. 3.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로얄박스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58g을 매도, 투약 (고양지청)
- 2007. 4.경 청주지역 폭력조직 「시라소니파」 조직원 및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 공모하여 필로폰 약 8.62g을 160만원에 매수 (대전지검)
- 2007. 8.경 제주지역 폭력조직 「산지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제주지검)
- 2008.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원대동파」 고문이 필로폰 약 0.18g을 3회에 걸쳐 매도 (대구서부지청)
- 2008. 4.~2010. 1.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g 밀매 등 수회에 걸쳐 소지, 투약 (수원지검)

- 2008.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80g 매수, 투약 (인천지검)
- 2008.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253.5g 매매 알선 및 2g 매수 (인천지검)
- 2008. 8.경 부평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1.4g 매매 알선 및 투약, 대마 흡연 (인천지검)
- 2008. 11.~2009. 10.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이 필로폰 약 0.4g을 매도하고 6회에 걸쳐 매매 알선 및 수수, 투약 (서울서부지검)
- 2008. 12.경 광양지역 폭력조직 「광양백호파」 두목이 필로폰 약 3g 매수 (울산지검)
- 2009. 1.~3.경 동두천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고문이 필로폰 약 20g 매수, 투약 (의정부지검)
- 2009.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돈지파」 두목이 필로폰 매수 (대구서부지청)
- 2009.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12g 매도, 투약 (울산지검)
- 2009. 2.~2010.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 매수, 투약 (인천지검)
- 2009. 3.~2009. 12.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천호동구사거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7g 밀매, 수수 (서울중앙지검)

- 2009. 6.~2010.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0.4g 매도,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9. 8.경 창원지역 폭력조직 「영철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 매도 (창원지검)
- 2009. 8.~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기장통합파」 두목이 필로폰 약 0.4g 매도,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09. 9.~2010.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6g 매도 및 교부 (수원지검)
- 2010. 1.~11.경 의정부지역 폭력조직 「신세븐파」 행동대장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00g 매수 (부산지검)
- 2010. 3.~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명동신상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2.5g 매수 (고양지청)
- 2010. 7.~8.경 평택지역 폭력조직 「전국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천안지청)
- 2010. 8.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약 0.85g 매도 (서울중앙지검)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이 필로폰 약 0.3g 매도 및 약 3.5g 매수 (평택지청)

- 2010. 10.경 평택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이 필로폰 0.4g 매수, 투약 (평택지청)
- 2010. 12.~2011. 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이 프로포폴 8,000 앰플(20ml 주사액)을 술집 여종업원 등에게 밀매 (인천지검)
- 2011. 1.경 부천지역 폭력조직 「소사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부천지청)
- 2011. 2.~4.경 군산지역 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9.8g 밀매, 필로폰 약 11.3g 매매 알선 (전주지검)
- 2011. 3.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6g 매도 (부천시청)
- 2011.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1g 매도 (부천시청)
- 2011. 4.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 밀매 (광주지검)
- 2011.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크라운파」 간부급 조직원이 필로폰 매수 (전주지검)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0.5g을 매도 (전주지검)
-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장 등 2명이 필로폰 3.5g 매수, 투약 (수원지검)
- 2012.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대전지역 폭력조직 「진술파」 행동대원 등 4명이 필로폰 48g 매도 (대전지검)

- 2013. 1.경 경북 김천지역 폭력조직 「제일파」 조직원이 필로폰 매수 (청주지검)
- 2013.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진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알선 (광주지검)
- 2013. 3.경 경남 거제지역 폭력조직 「일호파」 조직원이 필로폰 매수 (광주지검)
- 2013.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미아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서울중앙지검)
- 2013. 4.경 천안지역 폭력조직 「태평양파」 조직원이 필로폰 1.5g 매수 (천안지청)
- 2013. 4.경 청주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8g 매매 알선 (광주지검)
- 2013. 5.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영등포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2013.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5g 교부 및 필로폰 2g 매매 알선 (부산동부지청)
- 2013.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2013.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2014. 1.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아파치파」 조직원이 6회에 걸쳐 필로폰 16g 매도 (정읍지청)
- 2014. 3.~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행동대원이 2회에 걸쳐 필로폰 0.1g 매도, 필로폰 2회 투약 (인천지검)

- 2014. 5.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여주상조회파」 조직원이 5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여주지청)
- 2014. 10.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75g 매도 및 대마 2회 흡연 (홍성지청)
- 2014. 10.~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두목이 필로폰 1g 매도 및 1회 투약 (원주지청)
- 2014.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인파」 추종 폭력배가 필로폰 수회 매도, 필로폰 4.93g 소지 (광주지검)
- 2014. 11.경 김포지역 폭력조직 「김포토박이파」 조직원이 필로폰 0.2g 매도 및 4회 투약 (청주지검)
- 2015. 3.경 미국 LA지역 「멕시코 갱」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및 0.9g 소지 (서울 동부지검)
- 2015.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밀매 (안산지청)
- 2015.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이 12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순천지청)
- 2015. 4.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9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순천지청)
- 2015.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이 필로폰 1.6g 매도 (성남지청)

- 2015. 6.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추정 폭력배가 필로폰 약 0.1g 매도 (인천지검)
- 2015.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65g 매도 및 0.33g 소지 (부산지검)
- 2015.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1g 매도 및 1.93g 소지 (부산지검)
- 2015.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및 약 0.07g 소지 (부산지검)
- 2015.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400g 매도 (부산지검)
- 2015.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부산지검)
- 2015. 1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인천신공항파」 두목이 필로폰 매매 알선 (대구서부지청)
- 2015. 12.경 미국 LA지역 한인 갱단 「LGKK」 조직원이 필로폰 약 150g 밀매 (의정부지검)
- 2016.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광안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g 매도 (부산지검)
- 2016. 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7g 매도 및 필로폰 약 5g 수수 (인천지검)

- 2016. 2.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5g 매수 (인천지검)
- 2016. 2.~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4g 교부, 필로폰 0.14g 매도 및 2016. 6.경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6. 8.~11.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여주 희망상조회」 행동대장, 「하남청개구리파」 중간간부, 「양평남한강식구파」 간부 3명이 공모하여 부산에서 필로폰 10g 매수 및 6회 매도 (여주지청)
- 2016. 7.~2017.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회 매수, 6회 투약 (인천지검)
- 2015. 8.~2017. 12.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전 「온양 태평양파」 조직원 2명이 다량의 필로폰 매도 및 투약 (서산지청)
- 2018. 3.경 창원·마산지역 폭력조직 「연합오동동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200g 매도 (부산지검)
- 2018.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창수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0.04g 매도하고, 필로폰 약 14.59g 및 대마 약 4.2g 소지 (울산지검)

#### 투약·수수·소지 등 관련 사건

- 2007. 11.~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이 필로폰 교부, 투약 (부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해운대지부」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08. 3.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 수수 (안양지청)
- 2008. 3.~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울산지검)
- 2008. 5.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2008.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 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 교부 (수원지검)
- 2008. 6.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6.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2008. 7.~11.경 포천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의정부지검)
- 2008. 8.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목공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인천지검)
- 2009. 12.~2010. 1.경 일산지역 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15g 수수,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03g 투약 (부산지검)
- 2010.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4.46g 소지 (인천지검)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돈암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14g 투약 (평택지청)
- 2011. 2.~4.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 등 3명이 필로폰 투약 (안양지청)
- 2011.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73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2.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 등 2명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용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12.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2.35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2. 6.경 포항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포항지청)
- 2012. 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2.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인천지검)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9g 소지, 투약 (부산 동부지청)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 필로폰 0.18g 소지, 투약 (전주지검)
- 2012. 11.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12. 1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3.8g 소지, 투약 (안양 지청)
- 2012.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68g 소지, 투약 (부산 지검)
- 2013.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소지 (서울 남부지검)
- 2013. 3.경 전주지역 폭력조직 「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3.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2013. 4.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2013.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소지 (창원지검)
- 2013. 7.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2013. 7.경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성남지청)
- 2013.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3. 7.경 밀양지역 폭력조직 「신동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밀양지청)
- 2013. 7.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3. 11.경 김해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수유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서울북부지검)
-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수수, 흡연 (서울중앙지검)
- 2014. 4.경 제천지역 폭력조직 「조가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3.17g 소지 (제천지청)
- 2014. 5.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필로폰 투약 (정읍지청)
- 2014. 9.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2회 투약(대구지검)

- 2014.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산재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30g 소지 (울산지검)
- 2014. 10.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두목이 필로폰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4. 11.경 영광지역 폭력조직 「영광사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3g 소지 (광주지검)
- 2014. 11.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홍성지청)
- 2015.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두영건설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5. 3.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의정부지검)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06g 소지, 투약 및 대마 0.13g 소지 (부산지검)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4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5.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07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5.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준형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5.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5.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2015.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청량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2015. 9.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03g 교부 및 투약 (순천지청)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고문이 대마 약 470g 소지 및 대마 3회 흡연 (부산지검)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g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전동파(물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5g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2016. 5.~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익산구시장파」 조직원이 필로폰 불상량 수수 및 투약 (청주지검)
- 2017. 1.~3.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창원지검)
- 2017.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월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회 투약 및 약 6.2g 소지 (울산지검)
- 2017. 8.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72.69g 소지 (울산지검)
- 2018.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부두목이 필로폰 불상량 투약 (부산서부지청)

### 보복범죄 관련 사건

- 1998. 4.경 서울지역 조직폭력배가 필로폰 10g에 소금을 섞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자를 살해 (서울중앙지검)
- 1999.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등이 필로폰 1kg의 판매대금 7,000 만원을 갚지 않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밀매자를 살해 (부산지검)
- 2000.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등이 필로폰 거래 문제로 같은 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두목을 칼로 찔러 살해미수 (서울중앙지검)
- 2003. 1.경 조치원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두목이 1999. 11.경 피해자가 청주지검 에서 필로폰 취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범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6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 협박 (대전지검)

## 8.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현황

### 가. 개요

- 국내 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면서 국제우편 또는 국제 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 지속적 증가 추세임
- 마약 중독자가 아닌 일반인의 인터넷 마약류 거래가 늘어,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 접근 가능성 차단이 필요
- 2016. 12.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개시, 인터넷 상 마약류 불법게시물·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및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수사 착수
- 2017. 1.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877호, 마약과] 시행

[표 3-25]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실적<sup>16</sup>

연도별	유형별	차단·삭제 요청(건)	수사	
			인지(건/명)	구속(명)
2014		345	8/8	1
2015		450	3/4	2
2016		1,439	6/6	5
2017		7,890	54/54	25
2018		2,417	66/35	18
합계		12,541	137/107	51

<sup>16</sup> 2014.~2016.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한 수작업 모니터링 실적

## 나. 주요 수사 사례

- 2017. 1.~3.경 필로폰 판매자(일명 ‘조커’)의 제안을 받고 판매 광고 동영상 9편을 만든 후 유튜브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2.1g을 수수하고 투약한 광고 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7. 4.경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밀매사범(일명 ‘배트맨’) 구속 (서울동부지검)
- 2017. 5.~6.경 추적이 어려운 채팅앱을 이용해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수까지 하려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범 구속 (부산지검)
- 2016. 6.~2017. 8.경 도심 상가건물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딥웹’에서 비트코인 결제로 대마를 판매한 고교동창생 등 4명 구속(서울중앙지검)
- 2017. 2.~7.경 필리핀을 거점으로 필로폰 약 300g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광고와 SNS 채팅을 통해 수 백 명에게 판매하여 약 4억 원의 수익을 얻은 판매조직을 적발하는 등 4개 조직, 21명을 입건, 그 중 14명을 구속 (수원지검)
- 2017. 11.~2018. 5.경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다크웹 대마 판매 전문사이트 ‘A○○○○’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다량의 대마를 유통한 ‘서울킹’ 일당 3명을 구속, 재배 중인 대마 299주, 수확 건조된 대마 약 1kg 압수 (서울중앙지검)
- 2018. 1.~11.경 다크웹 마약류 판매 전문사이트 ‘B○○ ○○’ 개설 후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대마, LSD, 엑스터시, DMT, 케타민 등을 광고·알선·판매한 사이트 프로그래머(제작자), 운영자, 판매상 등 총 13명을 입건하여 9명을 구속, 회원 약 636명 사이트를 폐쇄 조치 (서울중앙지검)

## 9. 마약류 광고 단속 현황

### 가. 개요

- 마약류 밀조, 밀매 및 오남용을 유도하는 『인터넷·SNS 등 이용 광고행위』로 인해 마약류사범 증가
- 마약류 남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1. 누구든지 마약류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 (제3조 제12호)
2.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제62조 제1항 제3호)

- 2017. 6. 3.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마약류 제조·매매 등 광고 행위처벌 신설, '16. 12. 2. 공포) 시행

[표 3-26] 2018 주요 마약류 광고 단속 실적(총 74명 단속)

순서	유형별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g)
1		수원지검	2	필로폰	인터넷 게시판	0
2		수원지검	4	필로폰	SNS	344.22
3		서울중앙	1	대마	다크웹	2
4		서울중앙	1	대마	다크웹	5
5		김천지청	1	기타	즐톡·영톡	0
6		서울중앙	1	대마	다크웹	0
7		서울중앙	4	대마	인터넷 게시판	0
8		서울동부	1	펜디메트라진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레몬테라스)	0

## PART 3

순서	유형별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g)
9		의정부지검	1	필로폰 등	페이스북	필로폰 3.3, 대마 46.3
10		평택지청	1	필로폰	휴대전화	0
11		부산지검	1	대마, 해시시 등	인터넷	0
12		부산지검	1	대마, 해시시 등	인터넷	0
13		울산지검	2	필로폰	울진21닷컴	백반
14		서울중앙	1	대마	다크웹	0
15		서울동부	1	대마	네이버	0
16		서울동부	1	졸피뎴	네이버 중고나라	0
17		평택지청	1	졸피뎴	즐톡	0
18		평택지청	1	필로폰	즐톡	0
19		대구지검	1	졸피뎴	SNS	0
20		안동지청	2	필로폰	즐톡	0
21		서울중앙	2	대마	다크웹	299주, 1kg
22		서울동부	1	펜터민	네이버카페	0
23		경주지청	1	졸피뎴	즐톡	0
24		대구지검	3	필로폰 등	SNS	0
25		부산지검	1	LSD	인터넷	154장
26		평택지청	1	졸피뎴	즐톡	0
27		평택지청	1	트리아졸람	인터넷	300정
28		정읍지청	1	졸피뎴	채팅어플	0
29		평택지청	1	졸피뎴	인터넷 중고나라	0
30		정읍지청	1	졸피뎴	영톡	0
31		서울동부	1	필로폰	영톡	0
32		평택지청	1	필로폰	양팅S	0
33		대구지검	8	필로폰 등	다음카페 등	0
34		대구지검	4	메스칼린 등	다음카페 등	0
35		서울중앙	12	필로폰 등	다크웹	0
36		수원지검	5	필로폰	트위터	38g
37		수원지검	1	필로폰	트위터	0

## 나. 주요 수사 사례

- 2017. 6.경 인터넷에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광고(허위) 4회 게시 및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필로폰 매수 희망자 13명을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함께 4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전력 피의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7. 10.경 '즐톡'에 “아이스 작대기 있다능, 얼음 있어요, 시원한 아이스 얼음 있어요” 등과 같은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피의자 구속 (안동지검)
- 2018. 3.경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입한 SNS '페이스북' 게시판에 “신상ㄴ 냄새풀풀 고약, ... 신상 crystal”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피의자 구속 (의정부지검)
- 2018. 1.~3. '트위터', '유튜브' 및 '다크웹' 등에 “떨팝니다, 대마팝니다, 대마초 팝니다.....와이어 메신저 ID: 000 친추.... 사진 선명도 확인 보유된 제품의 양 확인.... 사기꾼에게 당하지 마시고 ... 이용하세요....”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마 판매 광고글을 234회에 걸쳐 게시한 피의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8. 3.~10. '다크웹'에 “... 대마 품종의 한 종류 팝니다. 00리 시드샵에서 구매 했습니다. ... 전날미리 입금하시면 다음날 통신시간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총 16회 걸쳐 게시한 피의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8. 11.초순경 '다크웹'에 '[ON][서울 경기] ice, mess 순도 97%↑ 원산지: north korea'라는 제목 아래 “... 여러분께 순도 높은 북한산 얼음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 최소 수량 1작대기 00에 모십니다. 대량 도매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피의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 10.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27]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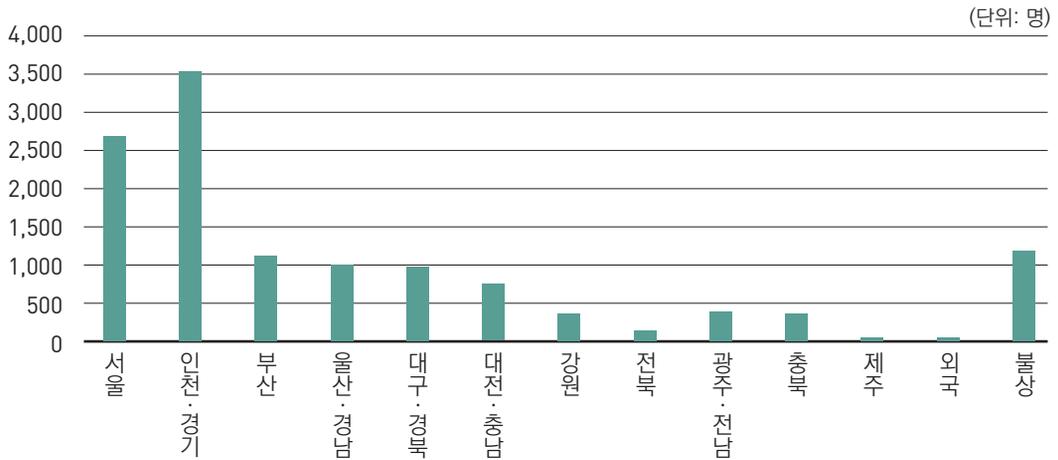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9,984 (100)	11,916 (100)	14,214 (100)	14,123 (100)	12,613 (100)
서울	2,123 (21.2)	2,319 (19.4)	2,792 (19.7)	2,789 (19.8)	2,677 (21.2)
인천·경기	2,683 (26.9)	3,584 (30.0)	4,010 (28.2)	4,045 (28.6)	3,530 (28.0)
부산	1,099 (11.0)	1,127 (9.5)	1,308 (9.2)	1,380 (9.8)	1,125 (8.9)
울산·경남	937 (9.4)	937 (7.9)	1,171 (8.2)	1,308 (9.3)	1,001 (7.9)
대구·경북	873 (8.7)	967 (8.1)	1,102 (7.8)	1,133 (8.0)	977 (7.7)
대전·충남	501 (5.0)	584 (4.9)	843 (5.9)	792 (5.6)	751 (6.0)
강원	345 (3.5)	464 (3.9)	468 (3.3)	384 (2.7)	363 (2.9)
전북	115 (1.2)	105 (0.9)	167 (1.2)	150 (1.1)	140 (1.1)
광주·전남	242 (2.4)	365 (3.1)	460 (3.2)	381 (2.7)	391 (3.1)
충북	169 (1.7)	236 (2.0)	390 (2.7)	371 (2.6)	362 (2.9)
제주	37 (0.4)	72 (0.6)	66 (0.5)	81 (0.6)	56 (0.4)
외국	18 (0.2)	31 (0.3)	31 (0.2)	20 (0.1)	53 (0.4)
불상	842 (8.4)	1,125 (9.4)	1,406 (9.9)	1,289 (9.1)	1,187 (9.4)

※ ( )는 구성비 %

- 2018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49.2%), 부산(8.9%), 울산·경남(7.9%), 대구·경북(7.7%), 대전·충남(6.0%) 순으로 전체사범 중 73.7%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그림 3-11]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표 3-28]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 현황

(단위: 명)

지역별	구분	2017	2018	증감률(%)
서울		2,789	2,677	-4.0
인천·경기		4,045	3,530	-12.7
부산		1,380	1,125	-18.5
울산·경남		1,308	1,001	-23.5
대구·경북		1,133	977	-13.8
대전·충남		792	751	-5.2
강원		384	363	-5.5
전북		150	140	-6.7
광주·전남		381	391	2.6
충북		371	362	-2.4
제주		81	56	-30.9
외국		20	53	165.0
불상		1,289	1,187	-7.9

- 전년대비 단속인원 증감률은 광주·전남지역만 2.6%로 소폭 증가하였고, 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표 3-29]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76 (100)	1,153 (100)	1,383 (100)	1,475 (100)	1,467 (100)
서울	63 (9.3)	52 (4.5)	83 (6.0)	98 (6.7)	97 (6.6)
인천·경기	117 (17.3)	352 (30.5)	243 (17.6)	279 (18.9)	352 (24.0)
부산	34 (5.1)	35 (3.1)	45 (3.2)	42 (2.8)	41 (2.8)
울산·경남	53 (7.9)	65 (5.7)	139 (10.0)	174 (11.8)	148 (10.1)
대구·경북	88 (13.0)	111 (9.6)	153 (11.1)	195 (13.2)	181 (12.3)
대전·충남	44 (6.5)	32 (2.8)	172 (12.4)	197 (13.4)	136 (9.3)
강원	90 (13.3)	245 (21.2)	138 (10.0)	141 (9.6)	180 (12.3)
전북	17 (2.5)	14 (1.2)	19 (1.4)	30 (2.0)	15 (1.0)
광주·전남	96 (14.2)	127 (11.0)	151 (10.9)	112 (7.6)	110 (7.5)
충북	45 (6.7)	73 (6.3)	196 (14.2)	158 (10.7)	139 (9.5)
제주	1 (0.1)	1 (0.1)	2 (0.1)	5 (0.3)	1 (0.1)
외국	1 (0.1)	3 (0.3)	8 (0.6)	0 (0.0)	7 (0.5)
불상	27 (4.0)	43 (3.7)	34 (2.5)	44 (3.0)	60 (4.1)

※ ( )는 구성비 %

[그림 3-12]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마약사범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 (24.0%), 대구·경북, 강원지역(12.3%), 울산·경남지역(10.1%) 순으로 나타남
- 인천·경기, 강원지역의 마약사범 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그 이외 지역은 감소하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표 3-30]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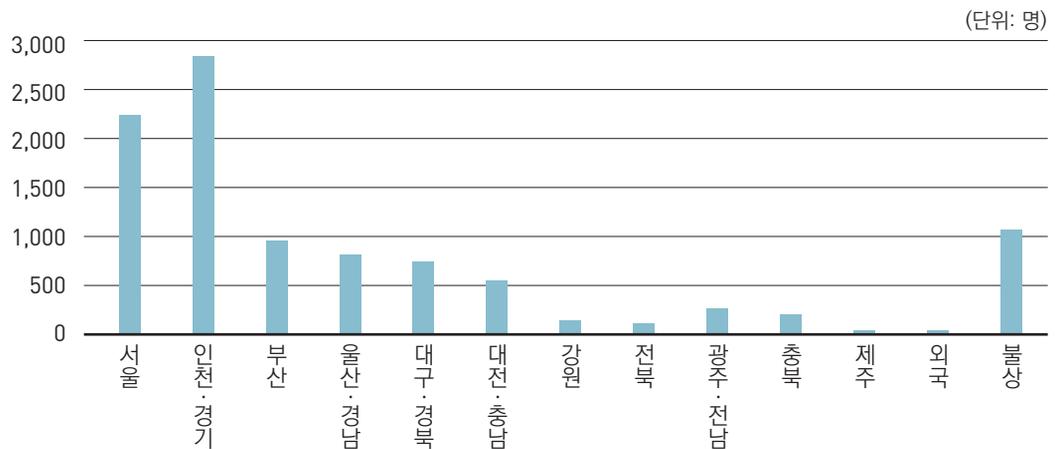
지역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8,121 (100)	9,624 (100)	11,396 (100)	10,921 (100)
서울		1,724 (21.2)	1,894 (19.7)	2,239 (19.6)	2,109 (19.3)	2,131 (22.2)
인천·경기		2,161 (26.6)	2,878 (29.9)	3,343 (29.3)	3,215 (29.5)	2,703 (28.1)
부산		1,010 (12.4)	1,057 (11.0)	1,216 (10.7)	1,217 (11.2)	973 (10.1)
울산·경남		806 (9.9)	818 (8.5)	976 (8.6)	1,072 (9.8)	778 (8.1)

PART 3

지역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구·경북		728 (9.0)	793 (8.2)	859 (7.5)	853 (7.8)
대전·충남		364 (4.5)	478 (4.9)	569 (5.0)	517 (4.7)	522 (5.4)
강원		206 (2.5)	172 (1.8)	250 (2.2)	180 (1.6)	136 (1.4)
전북		89 (1.1)	85 (0.9)	134 (1.2)	106 (1.0)	111 (1.2)
광주·전남		136 (1.7)	212 (2.2)	276 (2.4)	250 (2.3)	250 (2.6)
충북		104 (1.3)	147 (1.5)	168 (1.5)	189 (1.7)	197 (2.0)
제주		34 (0.4)	66 (0.7)	58 (0.5)	67 (0.6)	46 (0.5)
외국		13 (0.2)	25 (0.3)	21 (0.2)	12 (0.1)	39 (0.4)
불상		746 (9.2)	999 (10.4)	1,287 (11.3)	1,134 (10.4)	1,021 (10.6)

※ ( )는 구성비 %

[그림 3-13]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 향정사범의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28.1%), 서울지역(22.2%), 부산지역(10.1%) 순으로 나타남
- 서울, 대전·충남 지역의 향정사범 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그 이외 지역은 감소하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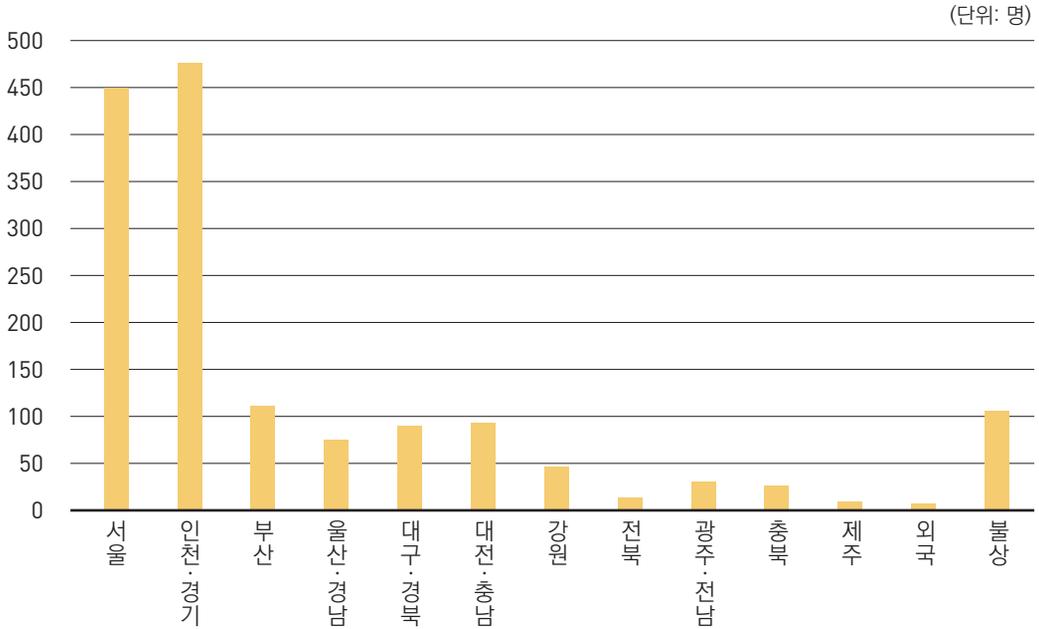
[표 3-31]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187 (100)	1,139 (100)	1,435 (100)	1,727 (100)	1,533 (100)
서울	336 (28.3)	373 (32.8)	470 (32.8)	582 (33.7)	449 (29.3)
인천·경기	405 (34.1)	354 (31.1)	424 (29.5)	551 (31.9)	475 (31.0)
부산	55 (4.6)	35 (3.1)	47 (3.3)	121 (7.0)	111 (7.2)
울산·경남	78 (6.6)	54 (4.7)	56 (3.9)	62 (3.6)	75 (4.9)
대구·경북	57 (4.8)	63 (5.5)	90 (6.3)	85 (4.9)	90 (5.9)
대전·충남	93 (7.9)	74 (6.5)	102 (7.1)	78 (4.5)	93 (6.1)
강원	49 (4.1)	47 (4.1)	80 (5.6)	63 (3.7)	47 (3.1)
전북	9 (0.8)	6 (0.5)	14 (1.0)	14 (0.8)	14 (0.9)
광주·전남	10 (0.8)	26 (2.3)	33 (2.3)	19 (1.1)	31 (2.0)
충북	20 (1.7)	16 (1.4)	26 (1.8)	24 (1.4)	26 (1.7)
제주	2 (0.2)	5 (0.4)	6 (0.4)	9 (0.5)	9 (0.6)
외국	4 (0.3)	3 (0.3)	2 (0.1)	8 (0.5)	7 (0.5)
불상	69 (5.8)	83 (7.3)	85 (5.9)	111 (6.4)	106 (6.9)

※ ( )는 구성비 %

[그림 3-14]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 대마사범 점유율은 인천·경기 지역(31.0%), 서울 지역(29.3%), 부산 지역(7.2%) 순으로 나타남
- 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지역의 대마사범 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이외 지역은 감소하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11. 직업별 현황

[표 3-32]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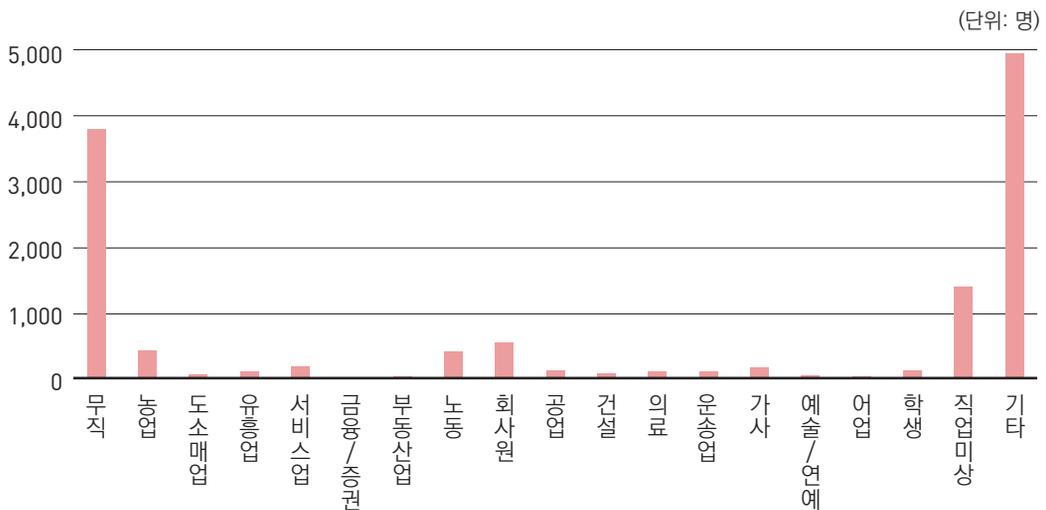
연도별 직업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9,984 (100)	11,916 (100)	14,214 (100)	14,123 (100)	12,613 (100)
무직	2,626 (26.3)	3,442 (28.9)	4,105 (28.9)	4,073 (28.8)	3,753 (29.8)
농업	249 (2.5)	478 (4.0)	476 (3.3)	487 (3.5)	426 (3.4)
도소매업	90 (0.9)	99 (0.8)	110 (0.8)	96 (0.7)	63 (0.5)
유흥업	63 (0.6)	62 (0.5)	81 (0.6)	131 (0.9)	104 (0.8)
서비스업	134 (1.3)	150 (1.3)	159 (1.1)	184 (1.3)	175 (1.4)
금융/증권	6 (0.1)	18 (0.2)	18 (0.1)	15 (0.1)	21 (0.2)
부동산업	23 (0.2)	35 (0.3)	38 (0.3)	37 (0.3)	32 (0.3)
노동	293 (2.9)	359 (3.0)	446 (3.1)	534 (3.8)	407 (3.2)
회사원	427 (4.3)	514 (4.3)	492 (3.5)	522 (3.7)	534 (4.2)
공업	80 (0.8)	88 (0.7)	142 (1.0)	233 (1.7)	126 (1.0)
건설	60 (0.6)	68 (0.6)	72 (0.5)	118 (0.8)	80 (0.6)
의료	40 (0.4)	51 (0.4)	86 (0.6)	42 (0.3)	98 (0.8)
운송업	74 (0.7)	86 (0.7)	98 (0.7)	116 (0.8)	98 (0.8)
가사	95 (1.0)	138 (1.2)	153 (1.1)	152 (1.1)	168 (1.3)

연도별 직업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술/연예	23 (0.2)	18 (0.2)	32 (0.2)	46 (0.3)	43 (0.3)
어업	37 (0.4)	38 (0.3)	39 (0.3)	45 (0.3)	29 (0.2)
학생	104 (1.1)	139 (1.1)	80 (0.6)	105 (0.7)	123 (1.0)
직업미상	1,109 (11.1)	1,165 (9.8)	1,241 (8.7)	1,190 (8.4)	1,382 (11.0)
기타	4,451 (44.6)	4,968 (41.7)	6,346 (44.6)	5,997 (42.5)	4,951 (39.3)

※ ( )는 구성비 %

- 2018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29.8%), 회사원(4.2%), 농업(3.4%), 노동(3.2%) 순으로 나타남
- 그 중 마약사범의 경우 무직, 농업, 가사 순이고, 향정사범의 경우 무직, 회사원, 노동 순이며, 대마사범의 경우 무직, 회사원, 학생 순으로 그 점유율을 보임

[그림 3-15]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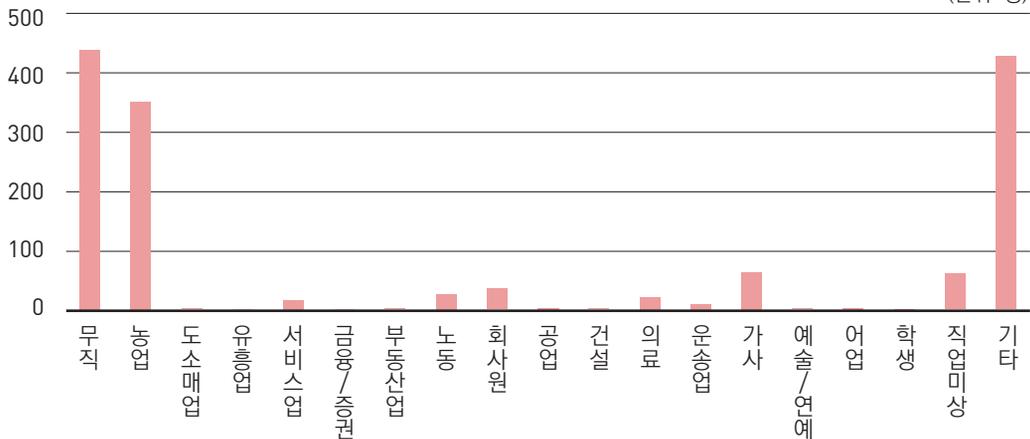
[표 3-33]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76	1,153	1,383	1,475	1,467
무직	154	358	423	460	438
농업	168	391	384	406	351
도소매업	2	1	5	3	2
유흥업	2	1	1	1	0
서비스업	6	7	7	27	17
금융/증권	0	0	1	0	0
부동산업	0	0	2	1	2
노동	5	21	18	27	27
회사원	8	23	27	34	36
공업	2	2	2	4	3
건설	2	2	1	10	2
의료	7	6	30	12	22
운송업	1	6	4	9	10
가사	43	47	61	60	63
예술/연예	0	0	0	0	2
어업	4	7	4	3	3
학생	6	0	3	2	1
직업미상	39	62	50	63	61
기타	227	219	360	353	427

[그림 3-16]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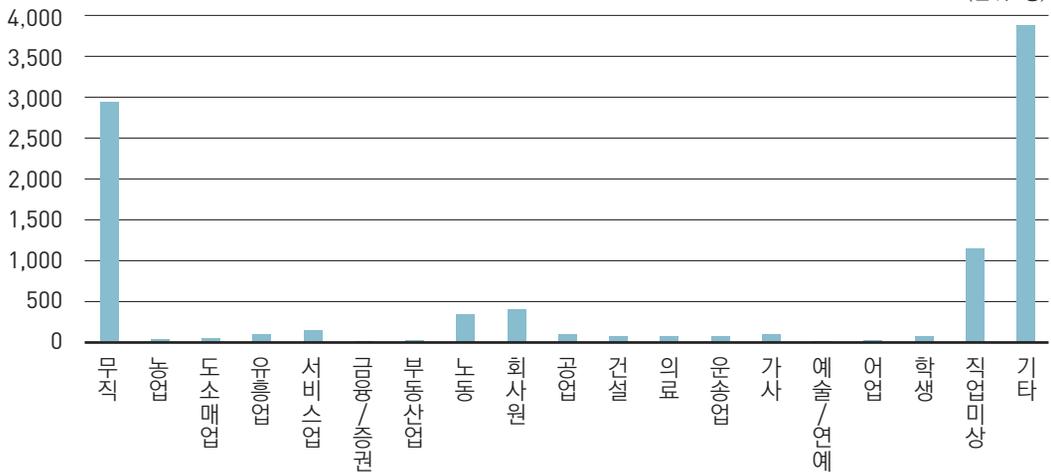
[표 3-34]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8,121	9,624	11,396	10,921	9,613
무직	2,248	2,836	3,400	3,245	2,996
농업	42	59	49	39	37
도소매업	78	87	100	86	51
유흥업	53	57	72	119	94
서비스업	106	124	127	128	143
금융/증권	6	13	17	15	17
부동산업	19	32	33	27	25
노동	252	302	386	460	335
회사원	344	399	395	393	403
공업	51	68	120	209	99
건설	52	57	62	93	70
의료	33	45	55	30	76
운송업	58	71	81	103	77
가사	46	91	88	81	100
예술/연예	10	10	7	14	16
어업	25	29	32	40	23
학생	53	77	50	66	73
직업미상	961	988	1,075	932	1,140
기타	3,684	4,279	5,247	4,841	3,838

[그림 3-17]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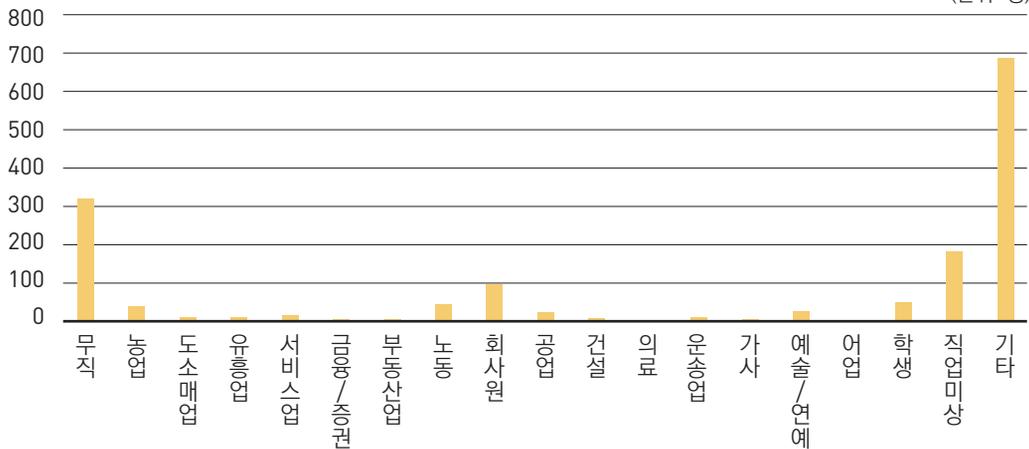
[표 3-35]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187	1,139	1,435	1,727	1,533
무직	224	248	282	368	319
농업	39	28	43	42	38
도소매업	10	11	5	7	10
유흥업	8	4	8	11	10
서비스업	22	19	25	29	15
금융/증권	0	5	0	0	4
부동산업	4	3	3	9	5
노동	36	36	42	47	45
회사원	75	92	70	95	95
공업	27	18	20	20	24
건설	6	9	9	15	8
의료	0	0	1	0	0
운송업	15	9	13	4	11
가사	6	0	4	11	5
예술/연예	13	8	25	32	25
어업	8	2	3	2	3
학생	45	62	27	37	49
직업미상	109	115	116	195	181
기타	540	470	739	803	686

[그림 3-18]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 12. 연령별 현황

[표 3-36]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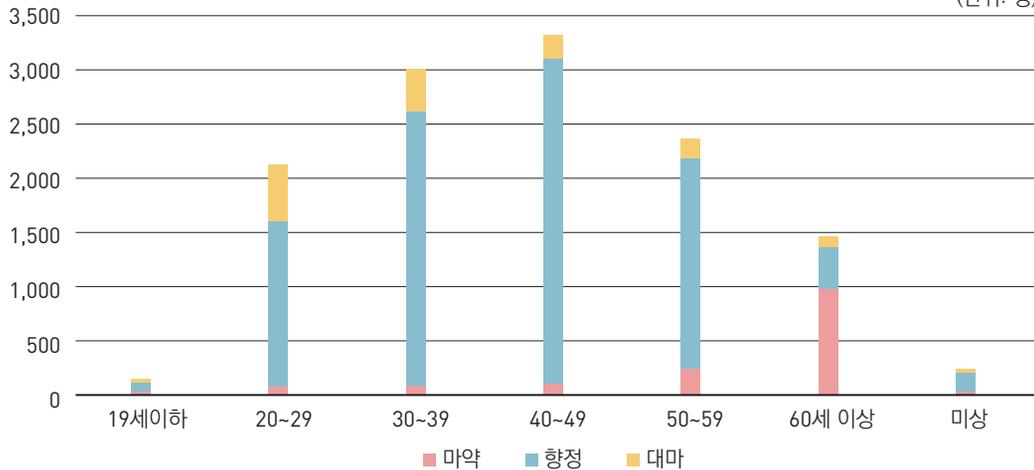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마약류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143 (1.1)	2,118 (16.8)	2,996 (23.8)	3,305 (26.2)	2,352 (18.6)	1,457 (11.6)	242 (1.9)	12,613 (100)
대마	36 (2.3)	531 (34.6)	403 (26.3)	223 (14.5)	192 (12.5)	107 (7.0)	41 (2.7)	1,533 (100)
향정	105 (1.1)	1,522 (15.8)	2,522 (26.2)	2,979 (31.0)	1,924 (20.0)	389 (4.0)	172 (1.8)	9,613 (100)
마약	2 (0.1)	65 (4.4)	71 (4.8)	103 (7.0)	236 (16.1)	961 (65.5)	29 (2.0)	1,467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19]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2018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30~50대가 68.6%(전년도 72.1%)를 차지하여 중·장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8년 19세 이하 적발인원이 143명으로 전년대비(전년도 119명) 소폭 증가함

[표 3-37]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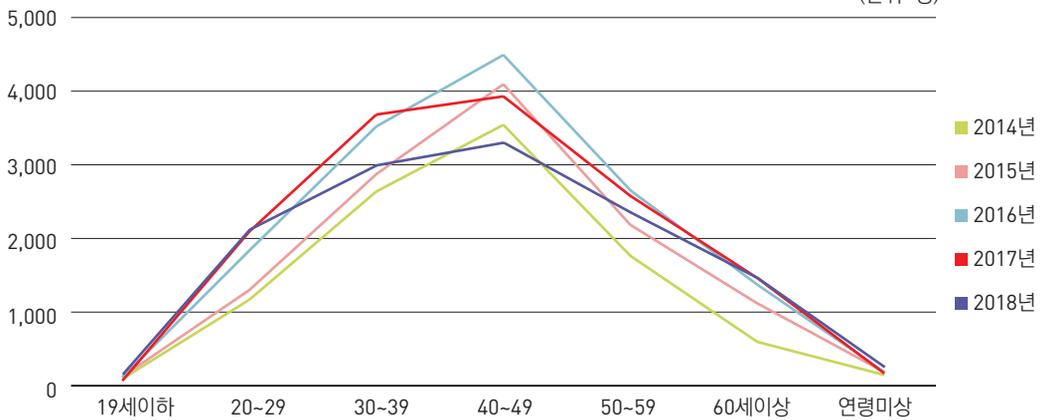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4	102	1,174	2,640	3,542	1,768	603	155	9,984
	(1.0)	(11.8)	(26.4)	(35.5)	(17.7)	(6.0)	(1.6)	(100)
2015	128	1,305	2,878	4,099	2,190	1,124	192	11,916
	(1.1)	(10.9)	(24.2)	(34.4)	(18.4)	(9.4)	(1.6)	(100)
2016	121	1,842	3,526	4,496	2,659	1,378	192	14,214
	(0.9)	(13.0)	(24.8)	(31.6)	(18.7)	(9.7)	(1.3)	(100)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8)	(15.0)	(26.0)	(27.8)	(18.3)	(10.6)	(1.5)	(100)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0] 연도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2018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1,467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60세 이상임.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밀경작 하다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며, 마약사범의 50세 이상 점유율은 83.6%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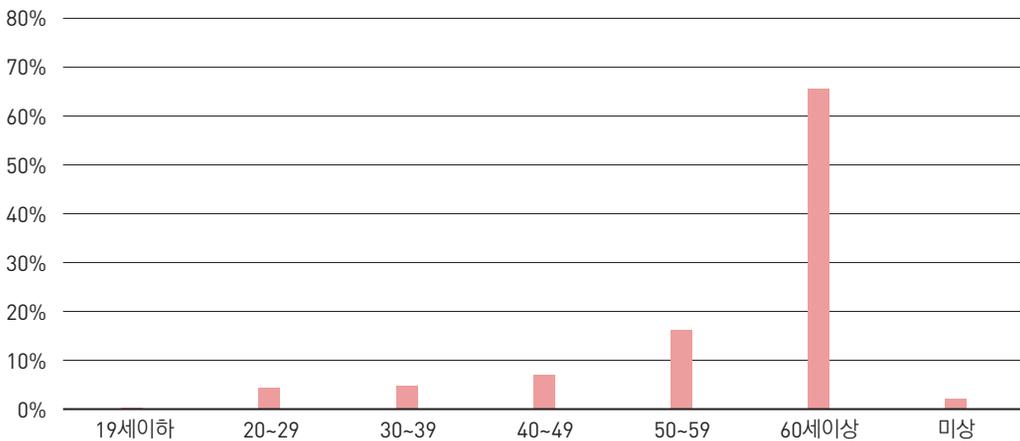
[표 3-38]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4	0 (0.0)	33 (4.9)	57 (8.4)	67 (9.9)	119 (17.6)	377 (55.8)	23 (3.4)
2015	0 (0.0)	24 (2.1)	53 (4.6)	77 (6.7)	231 (20.0)	743 (64.4)	25 (2.2)	1,153 (100)
2016	2 (0.1)	37 (2.7)	57 (4.1)	114 (8.3)	230 (16.6)	918 (66.4)	25 (1.8)	1,383 (100)
2017	0 (0.0)	42 (2.8)	85 (5.8)	112 (7.6)	223 (15.1)	990 (67.1)	23 (1.6)	1,475 (100)
2018	2 (0.1)	65 (4.4)	71 (4.8)	103 (7.0)	236 (16.1)	961 (65.5)	29 (2.0)	1,467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1]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 2018년 행정사범은 전년대비 12.0% 감소한 가운데 30~50대가 77.2%로 대다수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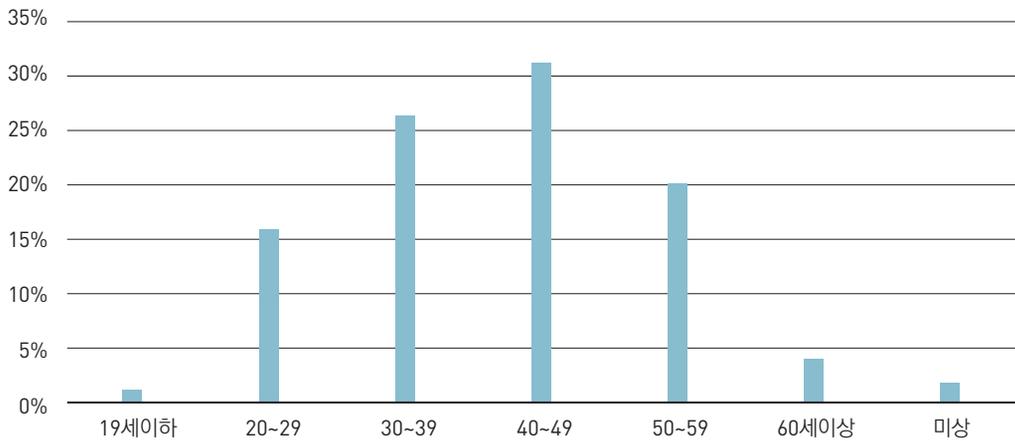
[표 3-39]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4	48	819	2,279	3,196	1,480	183	116	8,121
	(0.6)	(10.1)	(28.1)	(39.3)	(18.2)	(2.3)	(1.4)	(100)
2015	78	970	2,548	3,786	1,786	318	138	9,624
	(0.8)	(10.1)	(26.5)	(39.3)	(18.6)	(3.3)	(1.4)	(100)
2016	91	1,401	3,060	4,094	2,228	373	149	11,396
	(0.8)	(12.3)	(26.8)	(35.9)	(19.6)	(3.3)	(1.3)	(100)
2017	70	1,480	3,136	3,499	2,205	372	159	10,921
	(0.6)	(13.6)	(28.7)	(32.0)	(20.2)	(3.4)	(1.5)	(100)
2018	105	1,522	2,522	2,979	1,924	389	172	9,613
	(1.1)	(15.8)	(26.2)	(31.0)	(20.0)	(4.0)	(1.8)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2]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 2018년 대마사범은 전년대비 11.2% 감소한 가운데, 20~40대가 75.4%로 대다수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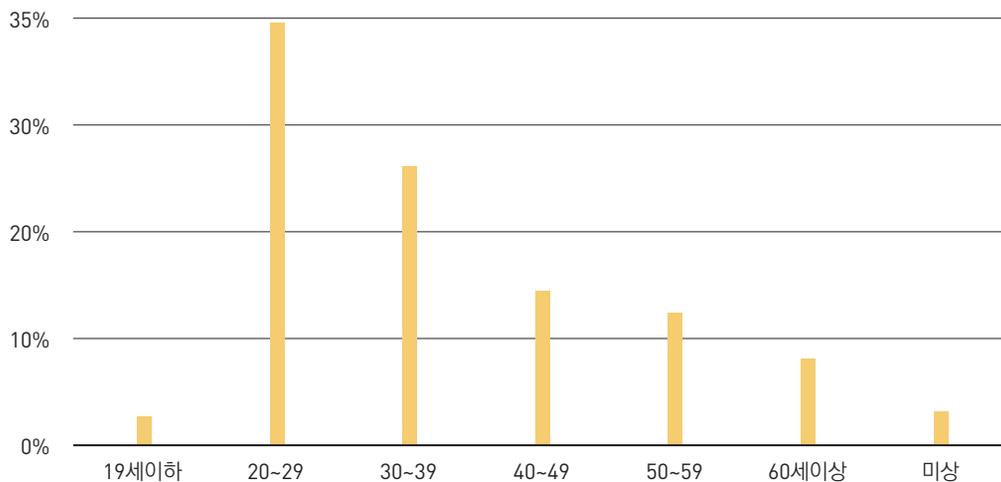
[표 3-40]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4	56	320	304	279	169	43	16	1,187
	(4.7)	(27.0)	(25.6)	(23.5)	(14.3)	(3.6)	(1.3)	(100)
2015	50	311	277	236	173	63	29	1,139
	(4.4)	(27.3)	(24.3)	(20.7)	(15.2)	(5.6)	(2.5)	(100)
2016	28	404	409	288	201	87	18	1,435
	(1.9)	(28.1)	(28.5)	(20.1)	(14.0)	(6.1)	(1.3)	(100)
2017	49	590	455	308	161	129	35	1,727
	(2.8)	(34.2)	(26.4)	(17.8)	(9.3)	(7.5)	(2.0)	(100)
2018	36	531	403	223	192	107	41	1,533
	(2.3)	(34.6)	(26.3)	(14.5)	(12.5)	(7.0)	(2.7)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3]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 13. 성별 현황

- 2013~2015년 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여성 점유율이 14%~19%에 달하였으나, 2016년에는 20.4%를 차지하고 그 인원도 2,899명으로 전년대비 27.6% 증가하였음. 2017년에는 점유율이 21.4%를 차지하였고, 2018년에도 점유율이 21%대를 유지함
- 2018년 여성 마약류사범은 대마의 경우 166명으로 전년대비 29.1%, 마약의 경우 752명으로 전년대비 1.2%, 향정의 경우 1,801명으로 전년대비 11.1% 각각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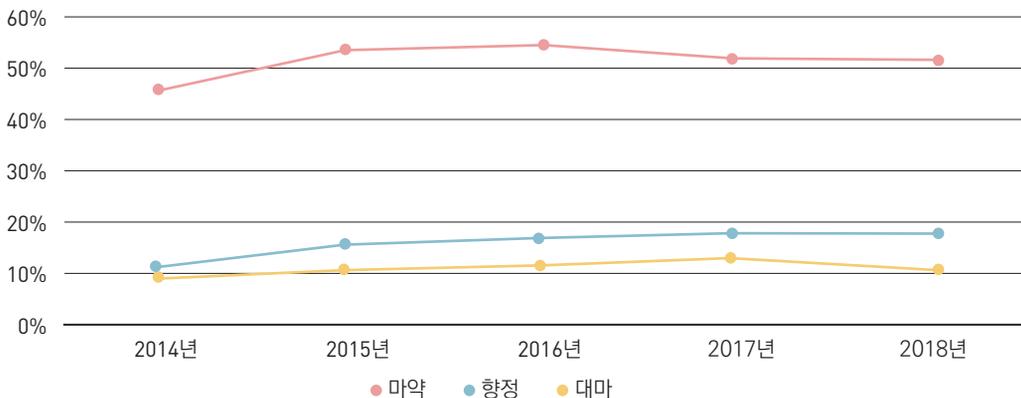
[표 3-41]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대마		마약		향정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4		1,072	115	367	309	7,167	954	8,606	1,378
		(90.3)	(9.7)	(54.3)	(45.7)	(88.3)	(11.7)	(86.2)	(13.8)
2015		1,017	122	541	612	8,086	1,538	9,644	2,272
		(89.3)	(10.7)	(46.9)	(53.1)	(84.0)	(16.0)	(80.9)	(19.1)
2016		1,276	159	642	741	9,397	1,999	11,315	2,899
		(88.9)	(11.1)	(46.4)	(53.6)	(82.5)	(17.5)	(79.6)	(20.4)
2017		1,493	234	714	761	8,895	2,026	11,102	3,021
		(86.5)	(13.5)	(48.4)	(51.6)	(81.4)	(18.6)	(78.6)	(21.4)
2018		1,367	166	715	752	7,812	1,801	9,894	2,719
		(89.2)	(10.8)	(48.7)	(51.3)	(81.3)	(18.7)	(78.4)	(21.6)

※ ( )는 구성비 %

[그림 3-24]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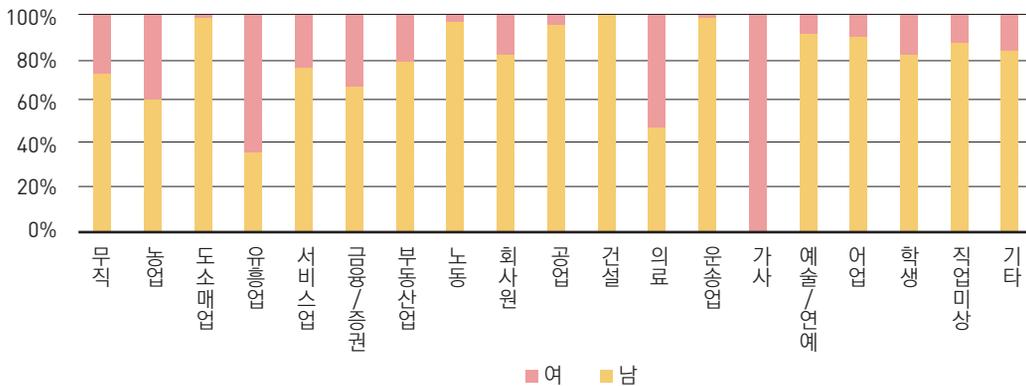
[표 3-42]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단위: 명)

직업별	성별		여	
	남	여	남	여
합계	9,894	(78.4)	2,719	(21.6)
무직	2,721	(72.5)	1,032	(27.5)
농업	259	(60.8)	167	(39.2)
도소매업	62	(98.4)	1	(1.6)
유흥업	38	(36.5)	66	(63.5)
서비스업	132	(75.4)	43	(24.6)
금융/증권	14	(66.7)	7	(33.3)
부동산업	25	(78.1)	7	(21.9)
노동	392	(96.3)	15	(3.7)
회사원	433	(81.1)	101	(18.9)
공업	120	(95.2)	6	(4.8)
건설	80	(100.0)	0	(0.0)
의료	47	(48.0)	51	(52.0)
운송업	96	(98.0)	2	(2.0)
가사	0	(0.0)	168	(100.0)
예술/연예	39	(90.7)	4	(9.3)
어업	26	(89.7)	3	(10.3)
학생	100	(81.3)	23	(18.7)
직업미상	1,202	(87.0)	180	(13.0)
기타	4,108	(83.0)	843	(17.0)

※ ( )는 구성비 %

[그림 3-25]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 14. 학력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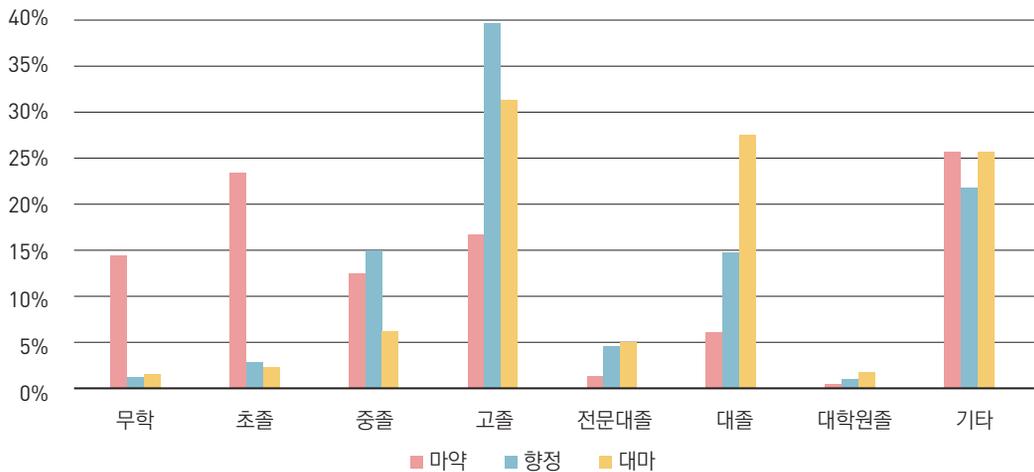
- 전체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 이하가 57.2%(전년도 60.7%)로 다수를 차지함
-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 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무학자(14.4%)와 초졸(23.3%)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정사범의 경우 고졸, 중졸, 대졸 순이며, 대마사범의 경우 고졸, 대졸, 중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3]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학력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14.4	23.3	12.4	16.6	1.2	6.0	0.4	25.6	100
향정	1.1	2.8	14.9	39.5	4.5	14.6	0.9	21.7	100
대마	1.5	2.2	6.1	31.0	4.9	27.2	1.7	25.4	100
합계	2.6	5.0	13.6	36.0	4.2	15.2	1.0	22.6	100

[그림 3-26]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 15. 범죄원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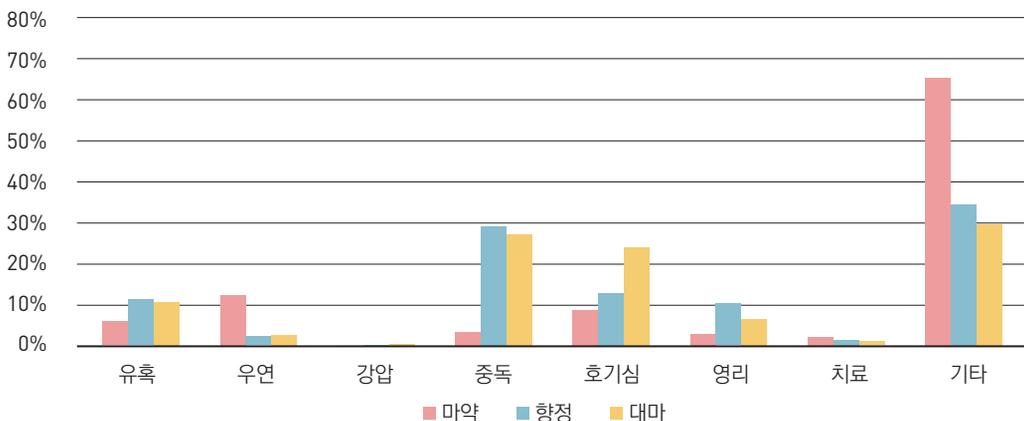
- 2018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5.7%), 호기심(13.5%), 유혹(10.4%) 순으로 그중 중독과 호기심이 39.2%를 차지함
- 단순 투약자 등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거나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44]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원인별 마약류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5.8	12.2	0.0	3.2	8.6	2.8	2.1	65.3	100
향정	11.0	2.1	0.1	28.7	12.6	10.1	1.3	34.1	100
대마	10.5	2.5	0.3	26.7	23.6	6.4	0.9	29.2	100
합계	10.4	3.2	0.1	25.7	13.5	8.8	1.3	36.9	100

[그림 3-27]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 16. 범행 장소별 현황

[표 3-45]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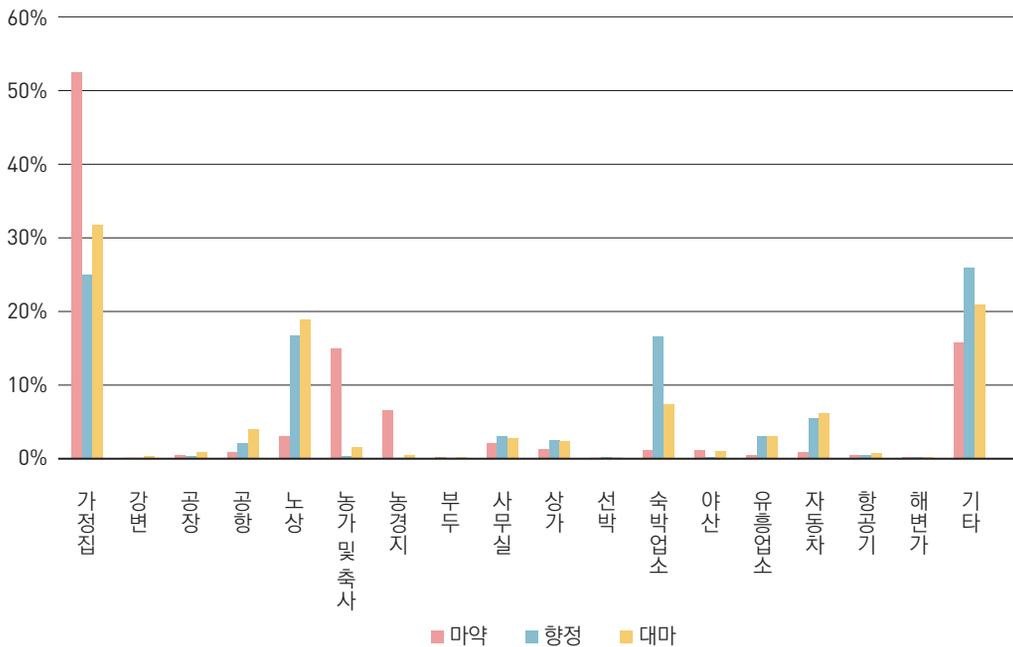
범행장소별 \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가정집	52.4	24.8	31.6	28.6
강변	0.0	0.0	0.2	0.0
공장	0.4	0.2	0.7	0.3
공항	0.7	2.0	3.8	2.1
노상	2.9	16.6	18.8	15.4
농가 및 축사	14.8	0.2	1.4	2.0
농경지	6.5	0.0	0.3	0.8
부두	0.1	0.0	0.1	0.0
사무실	2.0	2.9	2.7	2.8
상가	1.2	2.3	2.2	2.1
선박	0.0	0.1	0.0	0.1
숙박업소	1.0	16.4	7.2	13.6
야산	1.0	0.1	0.9	0.2
유흥업소	0.3	2.9	2.9	2.6
자동차	0.7	5.3	6.0	4.9
항공기	0.4	0.3	0.6	0.4
해변가	0.1	0.1	0.1	0.1
기타	15.7	25.8	20.8	24.1
합계	100	100	100	100

- 범행은 가정집(28.6%), 노상(15.4%), 숙박업소(13.6%)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특별한 범행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다양하게 자행되고 있음

○ 마약류사범별로 살펴보면,

- 마약사범 범행 장소는 가정집, 농가·축사가 67.2%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 주종을 이루는 것에 기인함
- 향정사범의 투약은 가정집, 노상, 숙박업소 등 비교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이 큰 점유율을 차지함
- 대마사범 범행 장소는 가정집, 노상, 자동차, 숙박업소가 63.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흡연의 용이성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3-28]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 17. 검찰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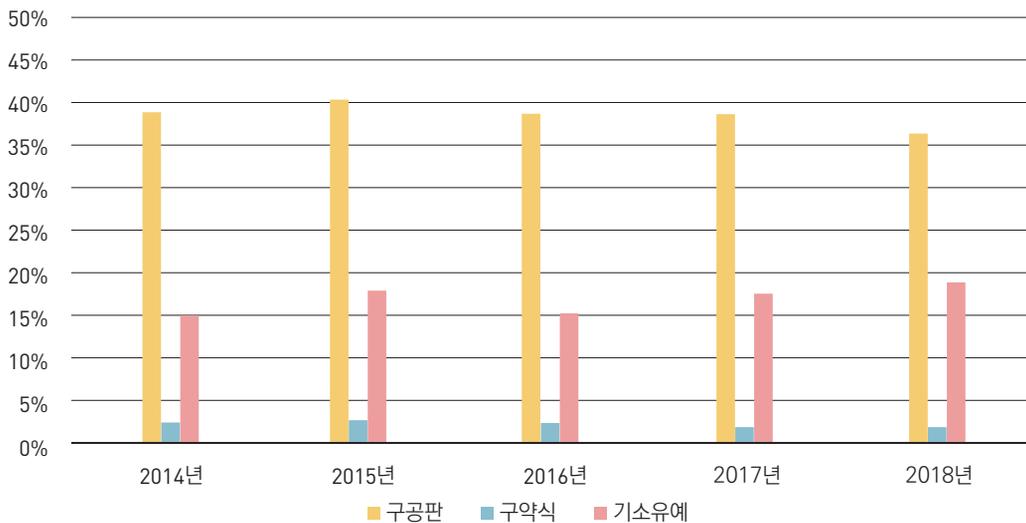
[표 3-46]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기타	
2014	10,222	3,949	266	1,538	919	973	13	1,808	238	518
	(100)	(38.6)	(2.6)	(15.1)	(9.0)	(9.5)	(0.1)	(17.7)	(2.3)	(5.1)
2015	12,534	5,024	404	2,240	821	1,181	2	2,033	217	612
	(100)	(40.1)	(3.2)	(17.9)	(6.6)	(9.4)	(0.0)	(16.2)	(1.7)	(4.9)
2016	14,897	5,720	418	2,327	913	1,534	1	2,799	208	977
	(100)	(38.4)	(2.8)	(15.6)	(6.1)	(10.3)	(0.0)	(18.8)	(1.4)	(6.6)
2017	15,219	5,883	354	2,603	841	1,607	6	2,909	208	808
	(100)	(38.7)	(2.3)	(17.1)	(5.5)	(10.6)	(0.0)	(19.1)	(1.4)	(5.3)
2018	13,483	4,929	308	2,430	764	1,419	11	2,714	218	690
	(100)	(36.6)	(2.3)	(18.0)	(5.7)	(10.5)	(0.1)	(20.1)	(1.6)	(5.1)

※ ( )는 구성비 %

[그림 3-29] 마약류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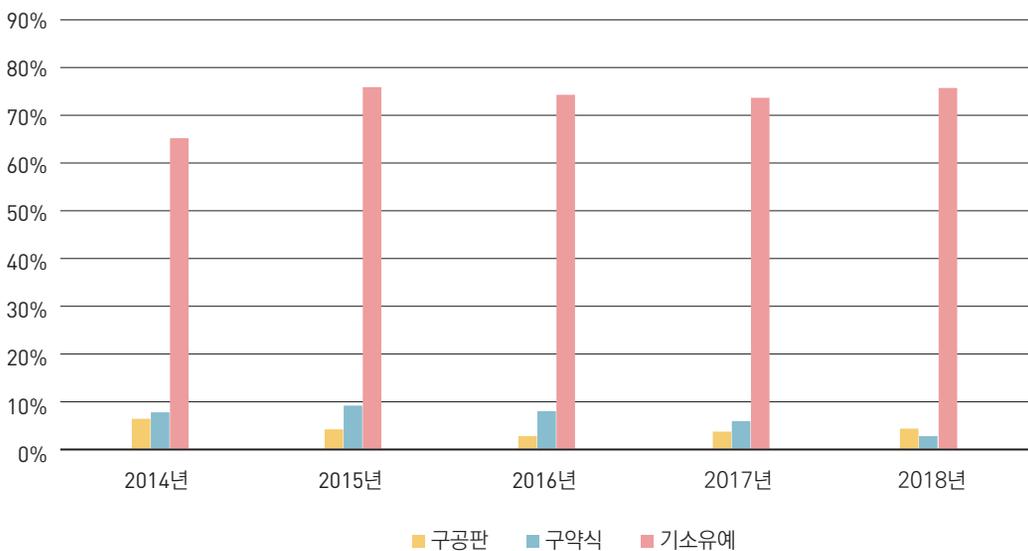
[표 3-47] 마약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4	677	49	59	441	18	54	0	18	30	8
	(100)	(7.2)	(8.7)	(65.1)	(2.7)	(8.0)	(0.0)	(2.7)	(4.4)	(1.2)
2015	1,111	49	100	852	14	36	0	19	21	20
	(100)	(4.4)	(9.0)	(76.7)	(1.3)	(3.2)	(0.0)	(1.7)	(1.9)	(1.8)
2016	1,354	46	117	1,005	13	96	0	40	28	9
	(100)	(3.4)	(8.6)	(74.2)	(1.0)	(7.1)	(0.0)	(2.9)	(2.1)	(0.7)
2017	1,479	60	93	1,094	29	90	0	48	44	21
	(100)	(4.0)	(6.3)	(74.0)	(2.0)	(6.1)	(0.0)	(3.2)	(3.0)	(1.4)
2018	1,452	70	55	1,109	22	94	0	55	30	17
	(100)	(4.8)	(3.8)	(76.4)	(1.5)	(6.5)	(0.0)	(3.8)	(2.1)	(1.2)

※ ( )는 구성비 %

[그림 3-30] 마약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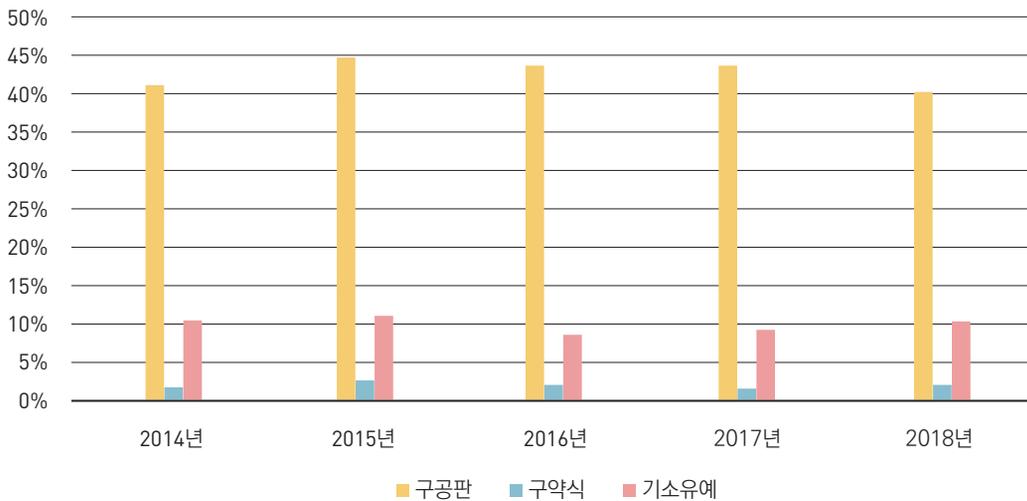
[표 3-48] 행정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4	8,347	3,485	158	890	837	818	4	1,554	180	421
	(100)	(41.8)	(1.9)	(10.7)	(10.0)	(9.8)	(0.0)	(18.6)	(2.2)	(5.0)
2015	10,223	4,561	260	1,122	749	1,030	2	1,788	168	543
	(100)	(44.6)	(2.5)	(11.0)	(7.4)	(10.1)	(0.0)	(17.5)	(1.6)	(5.3)
2016	12,116	5,217	252	1,043	839	1,311	1	2,469	150	834
	(100)	(43.1)	(2.1)	(8.6)	(7.0)	(10.7)	(0.0)	(20.4)	(1.3)	(6.8)
2017	11,919	5,141	200	1,135	742	1,358	6	2,525	146	666
	(100)	(43.1)	(1.7)	(9.5)	(6.2)	(11.4)	(0.1)	(21.2)	(1.2)	(5.6)
2018	10,454	4,262	221	1,063	650	1,167	10	2,353	166	562
	(100)	(40.8)	(2.1)	(10.2)	(6.2)	(11.2)	(0.1)	(22.5)	(1.6)	(5.4)

※ ( )는 구성비 %

[그림 3-31] 행정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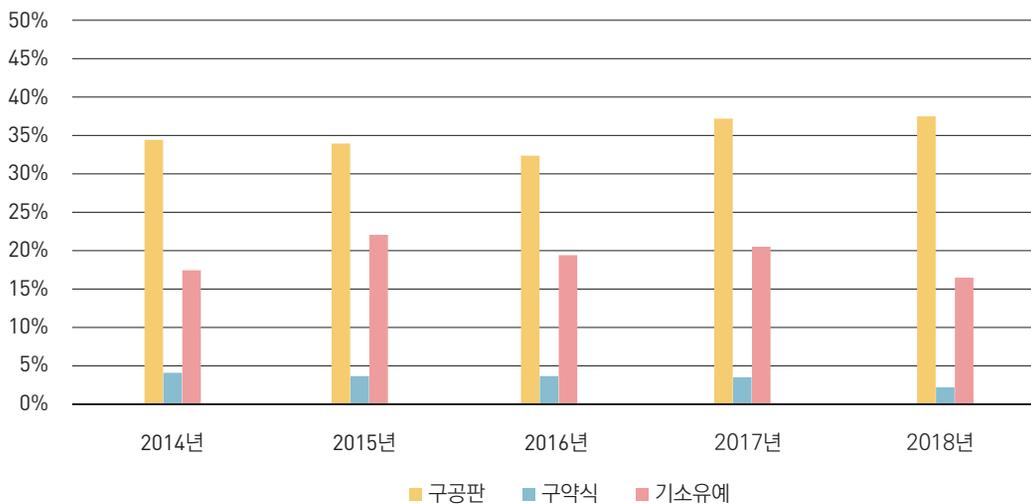
[표 3-49] 대마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4	1,198	415	49	207	64	101	9	236	28	89
	(100)	(34.7)	(4.1)	(17.3)	(5.3)	(8.4)	(0.8)	(19.7)	(2.3)	(7.4)
2015	1,200	414	44	266	58	115	0	226	28	49
	(100)	(34.5)	(3.7)	(22.2)	(4.8)	(9.6)	(0.0)	(18.8)	(2.3)	(4.1)
2016	1,427	457	49	279	61	127	0	290	30	134
	(100)	(32.0)	(3.4)	(19.6)	(4.3)	(8.9)	(0.0)	(20.3)	(2.1)	(9.4)
2017	1,821	682	61	374	70	159	0	336	18	121
	(100)	(37.5)	(3.4)	(20.5)	(3.8)	(8.7)	(0.0)	(18.5)	(1.0)	(6.6)
2018	1,577	597	32	258	92	158	1	306	22	111
	(100)	(37.9)	(2.0)	(16.4)	(5.8)	(10.0)	(0.1)	(19.4)	(1.4)	(7.0)

※ ( )는 구성비 %

[그림 3-32]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 2018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6.6%로 일반 형사사범(8.5%) 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약식률은 2.3%로 일반 형사사범(23.0%) 보다 낮은 편이나, 기소유예율은 18.0%로 일반 형사사범(12.0%) 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이 40.8%, 대마사범이 37.9%이나, 마약사범은 4.8%에 불과함. 이는 마약사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하여 주로 기소유예처분(76.4%)을 하고 있기 때문임

## 18.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표 3-50]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재판결과		합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구분											
합계	2016	4,609	135	1,639	741	1,756	201	18	6	0	113
		(100)	(2.9)	(35.5)	(16.1)	(38.1)	(4.4)	(0.4)	(0.1)	(0.0)	(2.5)
	2017	4,681	169	1,876	663	1,633	213	12	2	0	113
		(100)	(3.6)	(40.1)	(14.2)	(34.9)	(4.5)	(0.3)	(0.0)	(0.0)	(2.4)
	2018	3,986	158	1,594	534	1,324	177	45	12	0	142
		(100)	(4.0)	(40.0)	(13.4)	(33.2)	(4.4)	(1.1)	(0.3)	(0.0)	(3.6)
마약	2016	57	11	25	2	6	5	1	0	0	7
		(100)	(19.3)	(43.9)	(3.5)	(10.5)	(8.8)	(1.7)	(0.0)	(0.0)	(12.3)
	2017	58	19	16	3	12	2	1	0	0	5
		(100)	(32.8)	(27.6)	(5.2)	(20.7)	(3.4)	(1.7)	(0.0)	(0.0)	(8.6)
	2018	55	1	31	0	11	4	0	0	0	8
		(100)	(1.8)	(56.4)	(0.0)	(20.0)	(7.3)	(0.0)	(0.0)	(0.0)	(14.5)
향정	2016	4,170	95	1,356	685	1,719	192	17	6	0	100
		(100)	(2.3)	(32.5)	(16.4)	(41.2)	(4.6)	(0.4)	(0.2)	(0.0)	(2.4)
	2017	4,082	120	1,490	590	1,570	198	11	2	0	101
		(100)	(2.9)	(36.5)	(14.5)	(38.5)	(4.8)	(0.3)	(0.0)	(0.0)	(2.5)
	2018	3,409	126	1,197	492	1,269	146	39	12	0	128
		(100)	(3.7)	(35.1)	(14.4)	(37.2)	(4.3)	(1.1)	(0.4)	(0.0)	(3.8)
대마	2016	382	29	258	54	31	4	0	0	0	6
		(100)	(7.6)	(67.6)	(14.1)	(8.1)	(1.0)	(0.0)	(0.0)	(0.0)	(1.6)
	2017	541	30	370	70	51	13	0	0	0	7
		(100)	(5.5)	(68.4)	(13.0)	(9.4)	(2.4)	(0.0)	(0.0)	(0.0)	(1.3)
	2018	522	31	366	42	44	27	6	0	0	6
		(100)	(5.9)	(70.1)	(8.0)	(8.4)	(5.2)	(1.1)	(0.0)	(0.0)	(1.1)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2018년 1심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52.4%), 집행유예(40.0%), 벌금(4.0%) 순으로 나타나고,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점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정자가 많고 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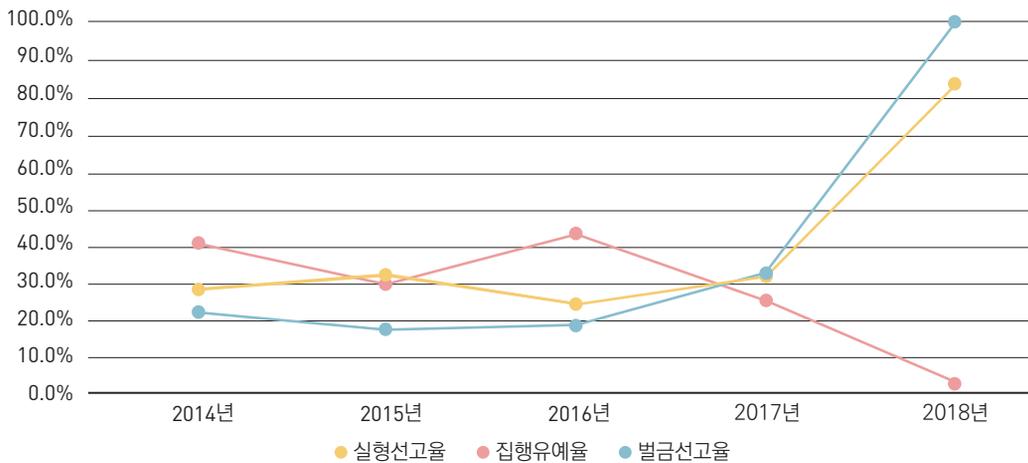
[표 3-51] 마약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sup>17</sup>
2014	11	20	2	7	5	0	0	0	4
	(22.4)	(40.8)	(4.1)	(14.3)	(10.2)	(0.0)	(0.0)	(0.0)	(8.2)
2015	8	13	2	7	4	1	0	0	8
	(18.6)	(30.2)	(4.7)	(16.3)	(9.3)	(2.3)	(0.0)	(0.0)	(18.6)
2016	11	25	2	6	5	1	0	0	7
	(19.3)	(43.9)	(3.5)	(10.5)	(8.8)	(1.7)	(0.0)	(0.0)	(12.3)
2017	19	16	3	12	2	1	0	0	5
	(32.8)	(27.6)	(5.2)	(20.7)	(3.4)	(1.7)	(0.0)	(0.0)	(8.6)
2018	55	1	31	0	11	4	0	0	0
	(100)	(1.8)	(56.4)	(0.0)	(20.0)	(7.3)	(0.0)	(0.0)	(0.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3] 마약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sup>17</sup> 무죄선고, 공소기각, 면소, 선고유예, 소년부송치, 구류·과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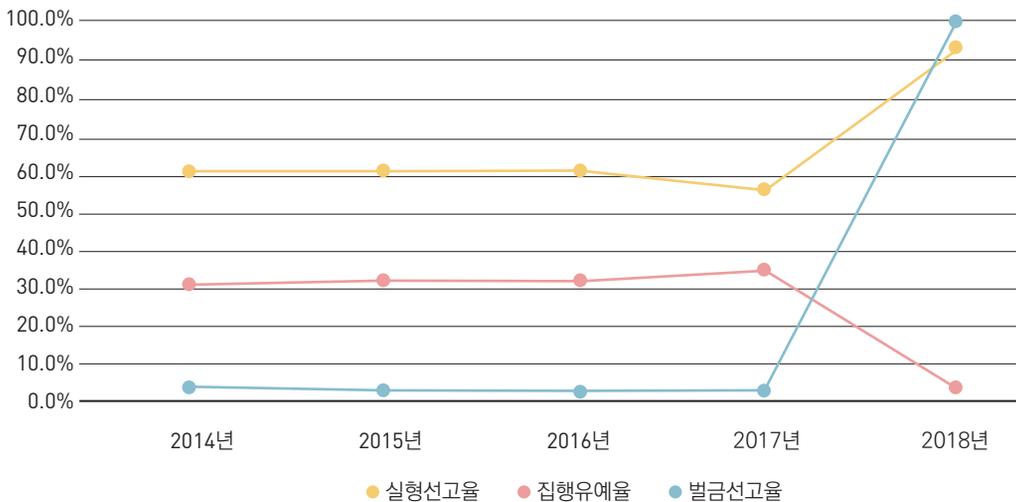
[표 3-52] 행정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4	103	920	462	1,202	123	15	11	0	116
	(3.5)	(31.2)	(15.7)	(40.7)	(4.1)	(0.5)	(0.4)	(0.0)	(3.9)
2015	96	1,064	569	1,310	133	9	2	0	105
	(2.9)	(32.4)	(17.3)	(39.8)	(4.0)	(0.3)	(0.1)	(0.0)	(3.2)
2016	95	1,356	685	1,719	192	17	6	0	100
	(2.3)	(32.5)	(16.4)	(41.2)	(4.6)	(0.4)	(0.2)	(0.0)	(2.4)
2017	120	1,490	590	1,570	198	11	2	0	100
	(2.9)	(36.5)	(14.5)	(38.5)	(4.8)	(0.3)	(0.0)	(0.0)	(2.5)
2018	3,409	126	1,197	492	1,269	146	39	12	0
	(100)	(3.7)	(35.1)	(14.4)	(37.2)	(4.3)	(1.1)	(0.4)	(0.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4] 행정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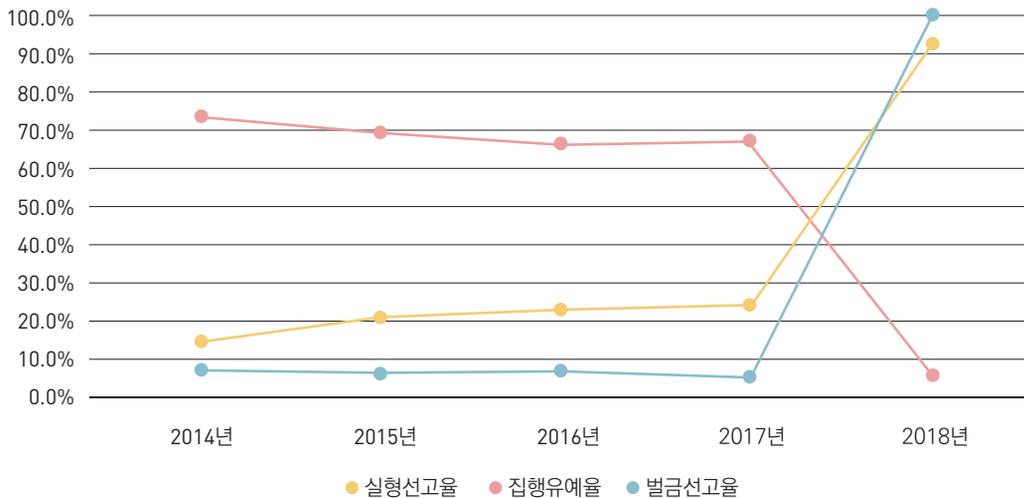
[표 3-53] 대마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4	29	269	30	25	0	0	0	0	11
	(8.0)	(73.9)	(8.2)	(6.9)	(0.0)	(0.0)	(0.0)	(0.0)	(3.0)
2015	27	254	29	41	6	0	0	0	7
	(7.4)	(69.8)	(8.0)	(11.3)	(1.6)	(0.0)	(0.0)	(0.0)	(1.9)
2016	29	258	54	31	4	0	0	0	6
	(7.6)	(67.6)	(14.1)	(8.1)	(1.0)	(0.0)	(0.0)	(0.0)	(1.6)
2017	30	370	70	51	13	0	0	0	7
	(5.5)	(68.4)	(13.0)	(9.4)	(2.4)	(0.0)	(0.0)	(0.0)	(1.3)
2018	522	31	366	42	44	27	6	0	0
	(100)	(5.9)	(70.1)	(8.0)	(8.4)	(5.2)	(1.1)	(0.0)	(0.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5] 대마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 19.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표 3-54]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4		24 (34.3)	32 (45.7)	1 (1.4)	13 (18.6)	70 (100)
2015		32 (43.2)	29 (39.2)	2 (2.7)	11 (14.9)	74 (100)
2016		39 (45.9)	28 (33.0)	3 (3.5)	15 (17.6)	85 (100)
2017		47 (48.9)	35 (36.5)	4 (4.2)	10 (10.4)	96 (100)
2018		23 (29.5)	49 (62.8)	0 (0.0)	6 (7.7)	78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표 3-55] 향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4		1,633 (62.1)	859 (32.6)	0 (0.0)	139 (5.3)	2,631 (100)
2015		2,073 (63.5)	1,062 (32.5)	0 (0.0)	131 (4.0)	3,266 (100)
2016		1,991 (63.4)	1,057 (33.7)	1 (0.0)	91 (2.9)	3,140 (100)
2017		2,270 (58.6)	1,413 (36.5)	2 (0.1)	186 (4.8)	3,871 (100)
2018		1,416 (58.4)	901 (37.2)	1 (0.0)	107 (4.4)	2,425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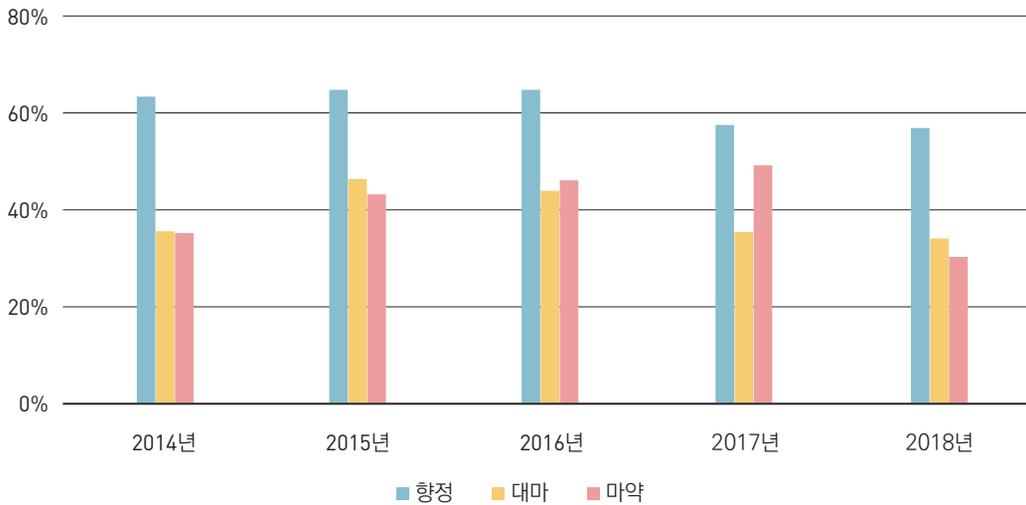
[표 3-56]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4	208 (35.8)	334 (57.6)	1 (0.2)	37 (6.4)	580 (100)
2015	293 (46.8)	297 (47.4)	1 (0.2)	35 (5.6)	626 (100)
2016	242 (44.2)	281 (51.4)	0 (0.0)	24 (4.4)	547 (100)
2017	316 (36.4)	510 (58.7)	1 (0.1)	42 (4.8)	869 (100)
2018	214 (35.5)	362 (60.1)	0 (0.0)	26 (4.3)	602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6]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 20.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57]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4	0 (0.0)	7 (12.1)	14 (24.1)	18 (31.0)	19 (32.8)	1,479,310
2015	0 (0.0)	10 (10.0)	36 (36.0)	31 (31.0)	23 (23.0)	1,278,000
2016	0 (0.0)	5 (4.6)	15 (13.9)	52 (48.2)	36 (33.3)	1,346,296
2017	0 (0.0)	11 (12.1)	23 (25.3)	32 (35.1)	25 (27.5)	1,298,901
2018	0 (0.0)	11 (20.0)	14 (25.5)	20 (36.4)	10 (18.2)	1,121,818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표 3-58]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4	0 (0.0)	2 (1.2)	14 (8.4)	24 (14.4)	127 (76.0)	3,528,144
2015	0 (0.0)	0 (0.0)	3 (1.6)	43 (22.7)	143 (75.7)	2,978,836
2016	0 (0.0)	1 (0.6)	10 (5.5)	39 (21.5)	131 (72.4)	2,709,392
2017	0 (0.0)	0 (0.0)	10 (5.6)	19 (10.6)	150 (83.8)	5,582,584
2018	1 (0.7)	0 (0.0)	10 (6.9)	24 (16.6)	110 (75.9)	5,267,143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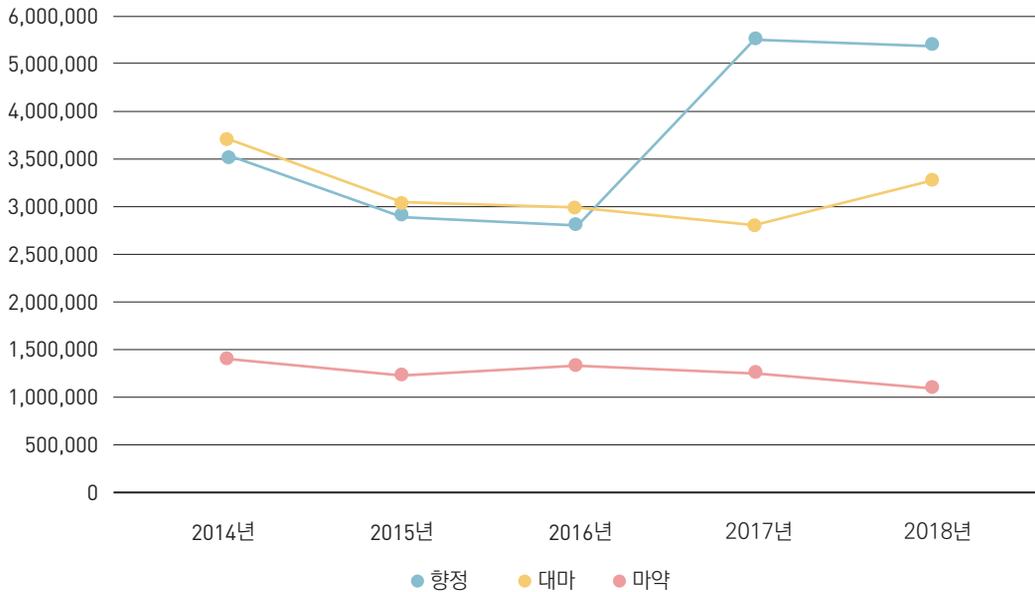
[표 3-59]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14		0 (0.0)	2 (4.1)	1 (2.0)	2 (4.1)	44 (89.8)	3,716,327
2015		0 (0.0)	0 (0.0)	1 (2.6)	7 (18.4)	30 (79.0)	3,057,895
2016		0 (0.0)	0 (0.0)	2 (4.9)	5 (12.2)	34 (82.9)	3,000,000
2017		0 (0.0)	0 (0.0)	4 (6.6)	5 (8.2)	52 (85.2)	2,868,852
2018		0 (0.0)	0 (0.0)	1 (3.6)	0 (0.0)	27 (96.4)	3,303,571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그림 3-37]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 21. 실행자·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 2018년 마약, 향정 및 대마사범의 실행 형기는 전년대비 각각 증가하였음

[표 3-60] 마약류별 실행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구분 연도별	마약		향정		대마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4	17.7	27.5	17.8	27.4	24.9	29.6
2015	15.8	26.1	16.7	26.1	23.2	26.9
2016	26.6	28.7	17.4	26.7	18.3	27.9
2017	19.7	28.6	18.2	28.3	21.7	31.5
2018	36.8	32.3	19.1	28.9	22.3	29.7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22.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61]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4	0 (0.0)	22 (68.8)	9 (28.1)	1 (3.1)	32 (100)
2015	1 (3.4)	22 (75.9)	5 (17.3)	1 (3.4)	29 (100)
2016	3 (10.7)	16 (57.1)	8 (28.6)	1 (3.6)	28 (100)
2017	3 (8.6)	20 (57.1)	8 (22.9)	4 (11.4)	35 (100)
2018	0 (0.0)	28 (57.1)	21 (42.9)	0 (0.0)	4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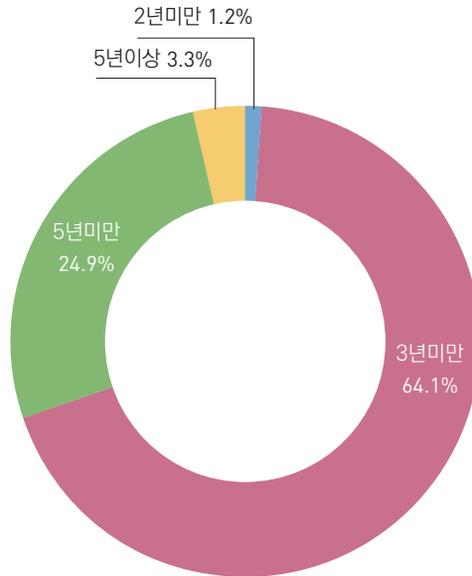
[표 3-62]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4	12 (1.4)	653 (76.0)	182 (21.2)	12 (1.4)	859 (100)
2015	36 (3.4)	844 (79.5)	174 (16.4)	8 (0.7)	1,062 (100)
2016	26 (2.5)	807 (76.3)	217 (20.5)	7 (0.7)	1,057 (100)
2017	32 (2.3)	988 (69.8)	354 (25.1)	39 (2.8)	1,413 (100)
2018	11 (1.2)	633 (64.1)	223 (24.9)	30 (3.3)	897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8] 행정사법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표 3-63]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4	12 (3.6)	236 (70.7)	82 (24.5)	4 (1.2)	334 (100)
2015	14 (4.7)	226 (76.1)	57 (19.2)	0 (0.0)	297 (100)
2016	4 (1.4)	199 (70.8)	75 (26.7)	3 (1.1)	281 (100)
2017	23 (4.5)	332 (65.1)	139 (27.3)	16 (3.1)	510 (100)
2018	10 (2.8)	227 (62.7)	113 (31.2)	12 (3.3)	362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23.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표 3-64] 마약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4	5 (20.8)	11 (45.9)	2 (8.3)	3 (12.5)	3 (12.5)	24 (100)
2015	11 (34.3)	12 (37.5)	4 (12.5)	3 (9.4)	2 (6.3)	32 (100)
2016	3 (7.7)	17 (43.6)	5 (12.8)	12 (30.8)	2 (5.1)	39 (100)
2017	12 (25.5)	17 (36.2)	13 (27.6)	3 (6.4)	2 (4.3)	47 (100)
2018	3 (13.0)	9 (39.1)	4 (17.4)	3 (13.0)	4 (17.4)	2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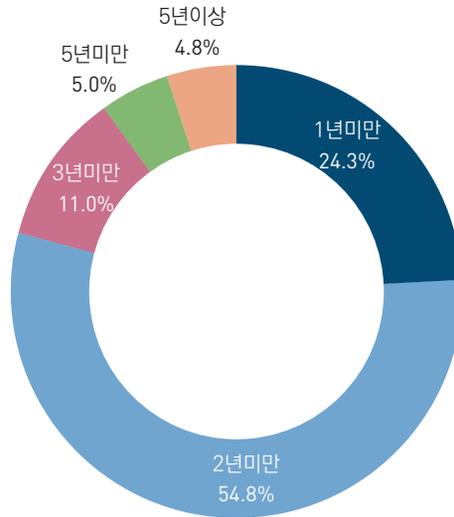
[표 3-65] 향정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4	414 (25.3)	934 (57.2)	153 (9.4)	85 (5.2)	47 (2.9)	1,633 (100)
2015	587 (28.3)	1,119 (54.0)	215 (10.4)	110 (5.3)	42 (2.0)	2,073 (100)
2016	518 (26.1)	1,118 (56.2)	186 (9.3)	121 (6.0)	48 (2.4)	1,991 (100)
2017	590 (25.9)	1,173 (51.7)	280 (12.4)	171 (7.5)	56 (2.5)	2,270 (100)
2018	343 (24.3)	772 (54.8)	155 (11.0)	71 (5.0)	68 (4.8)	1,40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9] 행정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표 3-66] 대마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4	62 (29.8)	108 (51.9)	20 (9.6)	12 (5.8)	6 (2.9)	208 (100)
2015	79 (27.0)	163 (55.6)	35 (12.0)	13 (4.4)	3 (1.0)	293 (100)
2016	83 (34.3)	108 (44.6)	27 (11.2)	17 (7.0)	7 (2.9)	242 (100)
2017	85 (26.9)	127 (40.2)	64 (20.3)	31 (9.8)	9 (2.8)	316 (100)
2018	48 (22.4)	104 (48.6)	19 (8.9)	27 (12.6)	16 (7.5)	214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24. 재범 현황

[표 3-67] 연도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사범	9,984	11,916	14,214	14,123	12,613
재범인원	3,817	4,499	5,285	5,131	4,622
재범률(%)	38.2	37.8	37.2	36.3	36.6

※ 재범인원은 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 2018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6.6%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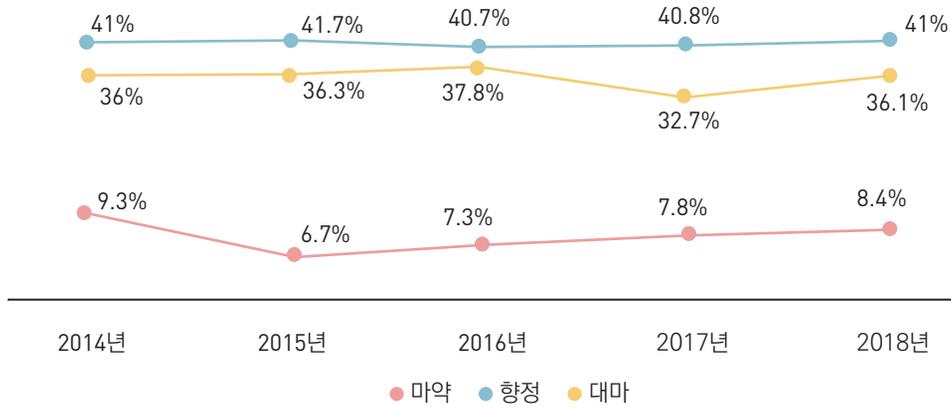
[표 3-68]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676	8,121	1,187	1,153	9,624	1,139	1,383	11,396	1,435	1,475	10,921	1,727	1,467	9,613	1,533
재범인원	63	3,327	427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123	3,946	553
재범률 (%)	9.3	41.0	36.0	6.7	41.7	36.3	7.3	40.7	37.8	7.8	40.8	32.7	8.4	41.0	36.1

-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사범, 대마사범, 마약사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향정사범 재범률은 41.0%로 여전히 대마사범 및 마약사범보다 높음

[그림 3-40]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표 3-69]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63	3,327	427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123	3,946	553
동종(마약류) 전과인원	15	2,731	257	32	3,269	242	41	3,795	328	47	3,711	372	58	3,291	342
이종(마약류) 전과인원	32	92	69	39	90	72	52	135	87	58	106	85	51	104	73
복합전과 인원	16	504	101	6	650	99	8	711	128	10	634	108	14	551	138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자가 재범한 인원

- 2018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4,622명 가운데 동종 마약류범죄 전과인원은 3,691명으로 79.9%를, 이종 마약류범죄 전과인원은 228명으로 4.9%를, 복합 전과인원도 703명으로 15.2%를 각각 차지함

## 2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실적

### 가. 근거 법령

- 치료보호<sup>18</sup>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치료감호<sup>19</sup>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 2018년도 치료보호인원은 총 267명으로 전년대비 19.1% 감소하였고, 전체 치료보호 인원 가운데 검찰의뢰자는 5명으로 전년대비 61.5% 감소함

[표 3-70]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3	191	252	330	267	
입원	자의	51	90	82	108	87
	검찰의뢰	15	10	7	3	2
	기타의뢰	-	1	-	-	-
외래	자의	6	83	154	209	175
	검찰의뢰	-	7	9	10	3
	기타의뢰	1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sup>18</sup> 전국 22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외래 치료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 기간은 2개월 단위이며 최대 12개월까지임

<sup>19</sup>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표 3-7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인원	73	91	102	208	135	74	87	131	140	421	503	648	722	470	3,805

※ 2002년부터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치료감호 현황은 총 29명으로 전년대비 81.3% 증가함

[표 3-72] 치료감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28	32	25	16	29
마약	0	0	1	0	0
향정	28	30	24	16	29
대마	0	2	0	0	0

자료 : 치료감호소 감호과, 입소자 기준

### 다.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sup>20</sup>

[표 3-73]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

(단위: 명)

구분 시·도	병원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 실적(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3	191	252	330	267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	1		1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4		2	4
	강남을지병원	2	6	83	146	206	136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4			
	참사랑병원	8				29	26
대전	참다남병원	4		1	2		
대구	대구의료원	2	4	6	2	2	1
부산	부산광역시 의료원	2	1	2	5	4	1
울산	큰빛병원	12				1	
	마더스병원	84					35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1	2		
	용인정신병원	10	11	8	3	1	
	계요병원	10	4	3	3	3	1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1	
충북	청주의료원	2					1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경북	포항의료원	3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	41	78	86	81	62
	양산병원	2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2			2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제주	연강병원	2		1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018 기준)

○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 시설

-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을 실시함

<sup>20</sup> 2019년 기준, 기존의 서울 강남을지병원(2개) 및 울산 큰빛병원(12개)의 지정해제와, 경남 국립부곡병원 병상수(200개 → 100개)의 감소가 있었고, 신규로 울산 마더스병원(84개)이 치료보호 시설로 지정되면서 현재 21개 의료기관, 300개 병상임

## 26.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 가. 개 요

- 마약류 투약 등으로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난동, 수사관 상해 등 2차 강력범죄, 즉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거나 마약 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강도 등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환각상태 범행이 흉포화되고 있음

### 나.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표 3-74]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유형별 연도별	살인		과다투약 사망·자살		강·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보복 살해·상해		기타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14	1	1	1	1	0	0	1	1	1	1	1	1	5	5
2015	1	1	3	3	0	0	1	1	2	2	11	13	18	20
2016	2	2	1	1	2	3	1	1	0	0	7	7	13	14
2017	1	1	0	0	1	1	0	0	1	1	7	7	10	10
2018	0	0	1	1	0	0	4	4	0	0	5	5	10	10
합계	5	5	6	6	3	4	7	7	4	4	31	33	56	59

## 다. 대표적 사례

### 살인 사건

- 2001. 3.경 서울 중구 식품점에서 텍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 중독증세를 보이던 피의자(23세, 공익근무요원)가 러미나 판매상인 피해자와 러미나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하다 칼로 살해 (서울중앙지검)
- 2001. 8.경 서산시 부석면 야산에서 피의자 3명(30세, 무직 / 28세, 무직 / 28세, 무직)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대마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폭행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서산지청)
- 2001. 9.경 서산시 석림동 주택에서 피의자(38세, 무직)가 평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던 내연녀를 칼로 찔러 살해 (서산지청)
- 2002. 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여관에서 러미나 중독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윤락녀인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다량의 러미나를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 (서울동부지청)
- 2004.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호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필로폰 24g에 대한 흥정을 하며 가격문제로 다투던 중 잭나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찔러 살해 (부산지검)
- 2005. 6.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따라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자신의 집에서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려가던 중 16층, 10층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2명의 어깨, 겨드랑이 등을 식도와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3:30경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 정차된 개인택시를 절취하고, 다음날 00:55경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경찰관 상해 (서울북부지검)

- 2006. 1.경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경주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1시간 가량 때리고 짓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살해 (서울중앙지검)
- 2012. 12.경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피의자(30세, 무직)가 필로폰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 (인천지검)
- 2013. 2.경 피의자(50세, 무직)가 자신의 형이 필로폰 중독으로 자살을 하자 형에게 필로폰을 알게 해 준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 (서울중앙지검)
- 2014. 6.경 피의자(34세, 중고차 매매)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와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어금니 1개를 뽑아내고, 왼쪽 안구를 적출한 후, 식칼로 두피 전체를 벗겨 내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사망한 것으로 판단, 현장에 벗어남으로써 살인 미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 2015. 2.경 노래방 업주인 피의자(41세, 상업)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2명(노래방 여자종업원)이 동성애로 보일만한 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트집 잡아 화를 내며 덤벨, 금속봉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그 중 피해자 1명을 살해 (천안지청)
- 2016. 8.경 LSD 투약에 따른 환각제 급성 중독 등으로 인해 거실에서 이모가 옷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사망케 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수회 찔러 사망케 함.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복부, 다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 (대전지검)

- 2016. 12.경 마약류 전과 5범인 피의자(4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아내와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아내의 목을 베어 살해 (대구지검)
- 2017. 4.경 피의자(5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양팔로 아버지의 목부위를 감싸 쥐어 경부압박 질식으로 살해 (대구지검)

### 자살·과다투약 사망 사건

- 2001. 3.경 대구시 수성구 자택에서 51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1. 8.경 대구 북구 칠성동 여관에서 37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2. 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모텔에서 36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모텔 승강장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다 과다출혈로 사망 (부산지검)
- 2012. 10.경 부산 서구 암남동 모텔에서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 (부산지검)
- 2013. 1.경 필로폰을 절취, 사용한 혐의로 부산구치소에서 약 3개월간 복역 후 출소한 58세 남성(무직)이 자살 (부산지검)
- 2013. 4.경 부천시 원미구 의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부천지청)
- 2014.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동파」 추종자인 33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공사현장으로 난입한 후 '나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다.

두목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다'라고 소리 지르며 40여분 간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 (울산지검)

- 2015. 3.경 안산 단원구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51세 남성(성형외과의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안산지청)
- 2015. 6.경 경기 동두천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4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및 디아제팜 과다투약으로 사망 (의정부지검)
- 2015. 8.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58세 남성(사업가)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사망. 위 남성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40g, 야바 76.5g, 엑스터시 3.12g, 대마 34.9g 등 발견 (서울서부지검)
- 2016. 2.경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 (부산지검)
- 2018. 1.경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던 중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으로 사망 (서울중앙지검)

### 강·절도 등 사건

- 2001. 5.경 피의자들(27세, 무직 / 28세, 무직)이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모르핀 10앰플, 펜타닐 30앰플, 폐치딘 10앰플을 절취하고, 2002. 2.경 의료원에서 모르핀 108앰플, 펜타닐 19앰플, 폐치딘 50앰플을 절취하여 투약 (대구지검)
- 2001. 7.~12.경 안산시 고잔동 병원에서 피의자(28세, 간호사)가 의사의 마약 처방전을 위조하여 병원약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마약인 염산폐치딘 300앰플을 빼내어 투약 (수원지검)
- 2016. 10.경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아파트 난간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후 고급 시계 등을 절도 (서울중앙지검)

- 2016. 12.경 범행을 하기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후 커피숍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절도 (수원지검)
-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편의점 앞에 세워둔 택시를 몰고 도주 (인천지검)

### 인질극·난동 등 사건

- 2001. 3.경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피의자(34세, 노동)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처와 딸을 식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와 딸을 인질로 삼아 경찰관과 1시간 가량 대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2001. 4.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영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의자들(30세, 무직 / 25세,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운전차량으로 검찰 수사차량 및 경찰 순찰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의자 1명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울산지검)
- 2001. 6.경 군산시 자택에서 피의자(5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수사관에게 사제권총을 발사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 (군산지청)
- 2001.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여관에서 피의자(4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여관 3층 창문에 매달려 1시간 30분 동안 자살 소동 (서울남부지청)
- 2002. 1.경 대전 중구 여관에서 피의자(35세, 여관경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처제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뒤 처와 처제, 딸 등을 인질로 삼고 경찰관 20여 명과 2시간 동안 대치하며 난동 (대전지검)
- 2002.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동생과 함께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자수한 피의자(29세, 무직)가 투약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자신의 동생과 면담하던 중, 형사과 사무실 책상 위에 폭력사건 증거물로 놓여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기도 왼쪽부분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인천지검)

- 2002. 1.경 피의자(36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백화점 화장품 코너 직원을 죽여 버리겠다고 흥기로 위협, 5분간 인질극을 벌이는 등 난동 (서울서부지청)
- 2002.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29세, 운전기사)가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대구 시내 일원을 운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검사를 만나야겠다고 대구지검으로 갈 것을 요구, 같은 날 08:30경 대구지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마약전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 (대구지검)
- 2006. 11.경 대구 동구 신기동 아파트에서 피의자(50세, 무직)가 대구지검에 전화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수 의사를 표명한 후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인근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동네 할머니를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인질극 소동 (대구지검)
- 2012.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3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흥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흥기로 찌르는 등 난동 (부산지검)
- 2013. 2.경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대구지검 당직실에 들어가 불펜으로 자신의 목과 배를 수회 찌르고 당직실 컴퓨터를 손괴 하는 등 난동 (대구지검)
- 2013. 7.경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피의자(30세, 요리사)가 평소 과용해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환각상태에서 검사실 집기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 (서울북부지검)
- 2013.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검찰청에 출두한 피의자(47세, 무직)가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동거녀의 목을 겨누어 협박 하는 등 난동 (광주지검)

- 2014. 9.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창원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43세, 무직)가 교도소 내 보호실에서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왼손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하여 자해 (마산지청)
- 2015. 4.경 피의자(49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김천지청을 방문하여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난동 (김천지청)
- 2015. 5.경 피의자(47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난동 (대구지검)
- 2015. 12.경 필로폰 환각상태의 피의자(40세, 무직)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간호사에게 '퇴원 후 복용할 수 있도록 신경안정제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줄 수 없다'며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의 목에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환자와 피의자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병원 측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인질강요 (인천지검)
- 2016.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유리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경주지청)
- 2018. 1.경 부산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객실 창문에 앉아 고함을 지르고 투신 소동(부산지검)
- 2018. 2.경 전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냉장고 등 호텔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전주지검)
- 2018. 6.경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객실 집기류 등을 부수고, 모텔 밖에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 (서울중앙지검)
- 2018. 12.경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 (서울중앙지검)

### 수사관 살해·상해 사건

- 1997. 9.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7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몽둥이로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 (인천지검)
- 1998. 1.경 대마 밀매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 (춘천지검)
- 1998.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칼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 (부산지검)
- 1998. 10.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5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 등 3명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전치 2~12주의 중상해 (의정부지청)
- 1999. 1.경 진주지역 필로폰 밀매조직원인 피의자(30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200바늘을 봉합하는 중상해 (진주지청)
- 2006. 8.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6세, 무직)가 검찰수사관을 등산용 칼로 양팔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찔러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 상해 (성남지청)
- 2014. 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누범기간 중인 필로폰 소지혐의 피의자(52세, 무직)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 (대전지검)
- 2015. 1.경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피의자 (54세, 회사원)가 검거과정에서 범퍼로 경찰관의 무릎 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경찰관 2명에게 상해 (수원지검)
- 2015. 10.경 필로폰 약 8g을 소지한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조직원인 피의자 (43세, 무직)가 체포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여 검찰수사관 4명에게 상해 (의정부지검)

-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수 십 킬로를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 받아 경찰관 2명에 상해 (평택지청)

#### 기타(상해·협박·강간·주거침입·폭행·운전·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 2004.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힌 피의자(37세, 무직)가 인천 부평구 유흥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백미러를 부순 후 위 차량 후드 위로 올라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려다 그곳으로 달려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승합차 안에서 나와 도망가던 중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여 상해 (인천지검)
- 2004. 11.경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의자들(46세, 44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대구지검)
- 2005. 6.경 통영시 광도면 피해자의 집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딸의 얼굴을 식칼로 찔러 상해 (통영지청)
- 2006. 7.경 진주시 개동 미용실 앞에서 피의자(2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며 협박 (남원지청)
- 2006. 9.경 여수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4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떠도는 포르노 동영상 있는데 너 아니냐.'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2007. 6.경 위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전처와 함께 여수 경찰서에서 오동도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약 1시간 동안 전처의 목, 귀, 이마, 양쪽 무릎, 손목, 발목 등 전신 23곳을 베어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순천지청)
- 2008. 3.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유원지 앞 도로에서 피의자(3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제 추행 (의정부지검)
- 2009. 1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모텔에서 피의자(37세, 무직)가 피해자와 함께 수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여 상해 (서울중앙지검)
- 2013. 2.경 경기지역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성들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17세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을 구속 (부산지검)
- 2013. 6.경 오산시 궏동 건물 계단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을 간 후 다른 건물로 뛰어 넘어가려다 건물 사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수원지검)
- 2013. 6.~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16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간 (서울서부지검)

- 2014. 12.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피해자 주거지 주변 승용차에서 안양지역 폭력 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면서 '네가 내 어머니 죽였지'라고 욕설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2:30경 안양시 동안구 도로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좌수 중지열상을 가하여 상해 (안양지청)
- 2015. 1.경 피의자(34세, 기업인)가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자동차를 절취하여 도주 (서울중앙지검)
- 2015. 3.경 필로폰 판매 범죄사실로 수배 중인 피의자(43세, 무직)가 경찰의 검문 검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충돌하고 도주 (성남지청)
- 2015. 4.경 피의자들(58세, 택시운전사 / 44세, 무직)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삼페인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투약 (서울동부지검)
- 2015. 5.경 피의자(4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 하면서 차량 1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추돌 (인천지검)
- 2015. 5.경 피의자(41세, 무직)가 피해자에게 졸피뎀, 로라제팜을 복용케 하여 항거 불능상태 야기한 후 간음하여 상해 (부천지청)
- 2015. 6.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무직)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 도주하다 전신주 2개 충격하여 공공기물 파손 (부산동부 지청)

-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기업인 / 22세, 프로골퍼)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 (서울 중앙지검)
- 2015. 1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조직원인 피의자(50세)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필로폰 공급자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 상해 (대구지검)
- 2015.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모텔에서 피의자(4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객실 침대 위에 있던 티슈에 불을 질러 모텔을 전소하게 하여 위 모텔 투숙자인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힘 (인천지검)
- 2016. 3.경 핸드폰 채팅 어플을 통해 모텔 등에서 만나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성매매 (대전지검)
- 2016. 4.경 필로폰 환각 상태에서 검찰에 자진출석 (대구서부지청)
-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의 피의자(44세, 무직, 마약전과 5범)가 모친이 필로폰 복용으로 인한 증세가 염려되어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모친의 손가락, 팔 등을 잡아당겨 골절, 타박상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상해 (부산 동부지청)
- 2016. 6.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성욕이 발동하자 새벽 시간대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유인·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대구지검)
- 2016. 9.경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 (청주지검)

- 2016. 11.경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객실을 태우고, 방화 후 객실을 나오던 중 손님과 마주치자 칼을 휘둘러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 (서울동부지검)
- 2016. 12.경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폭행 (순천지청)
- 2017. 3.경 일행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모텔에 불을 놓아 다른 호실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치사 (천안지청)
-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의 피의자(43세, 무직)가 대구 북구 소재 00아파트에 이르러 지하 1층 창문으로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감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를 손으로 밀쳐 환풍구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재물을 손괴 (대구지검)
- 2017. 4.경 동종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여 질주 (여주지청)
-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급진로변경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 (전주지검)
- 2017. 5.경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흉기를 든 채로 사람들을 위협 (부산동부지청)
- 2017. 5.경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신 뒤 외손녀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 (부산동부지청)
- 2017.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부산 소재 식당에서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커터 칼로 그어 상해를 가하고, 부산 소재 00시장 부근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함 (부산 서부지청)

- 2017. 10.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고속도로를 운전한 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광주지검)
- 2018. 3.경 강간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피의자가 길가에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들킬 것이 두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어낸 뒤 도주함 (부산지검)
- 2018.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동거녀가 매춘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골프채와 과도로 마구 때리고 가위로 머리채를 잘라버리는 등 폭행하여 뇌출혈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상해 (춘천지검)
-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의 집에서 수십여 킬로미터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 (마산지청)
-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중고등학생 등 승객 수십 명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하여 운행 (춘천지검)
-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의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한 터널 앞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한 2명을 사망케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게 하여 치상 (속초지청)
- 2018. 12.경 전 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 (서울북부지검)

## 1. 개 요

### 가. 자수기간

2018. 4. 1. ~ 2018. 6. 30.(3개월)

### 나.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 다.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 라. 처 리

- 자수경위, 개선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단순 투약자나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의 치료·상담이 필요 경우 마약 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1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21개 기관, 약 300개 병실)은 [표 3-73] 자료참조

※ 마약류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사업을 외래치료까지 확대 시행(2014. 6. 19.)

·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의뢰시 기존에는 입원치료에 제한하였으나 개정으로 외래치료 포함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19. 1. 시행)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도입(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

- 보호관찰관이 6개월 동안 대상자의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교육(4일) +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의 치료보호(기본 2일)' 등을 관리·감독
- \* 법무부·보건복지부는 치료전문병원 200여 개를 지정하여 운영중

마약 투약 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 소유자, 밀매, 밀수 등 범죄유형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sup>21</sup>

<sup>21</sup>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참조

## 2. 자수실적

### 가. 마약류별 자수실적

- 2018년 자수실적은 44명으로 전년도 88명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전체 자수자 중 향정사범이 39명으로 88.6%를 점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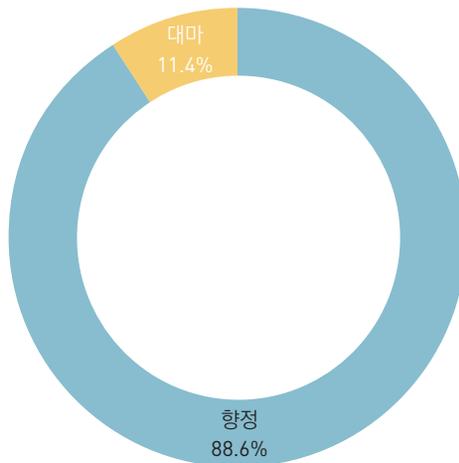
[표 3-75] 자수실적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마약류	구분			기소유예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건수	인원	구성비			
합계	44	44	100	7	10	11
마약	0	0	0.0	0	0	0
향정	39	39	88.6	5	10	11
대마	5	5	11.4	2	0	1

※ 기소유예 · 구공판 사범 이외에는 '혐의 없음' 처분 또는 '미처리' 상태임

[그림 3-41] 자수실적 마약류별 구성비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2004. 4. 「약물중독 재활센터」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 ·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3-76]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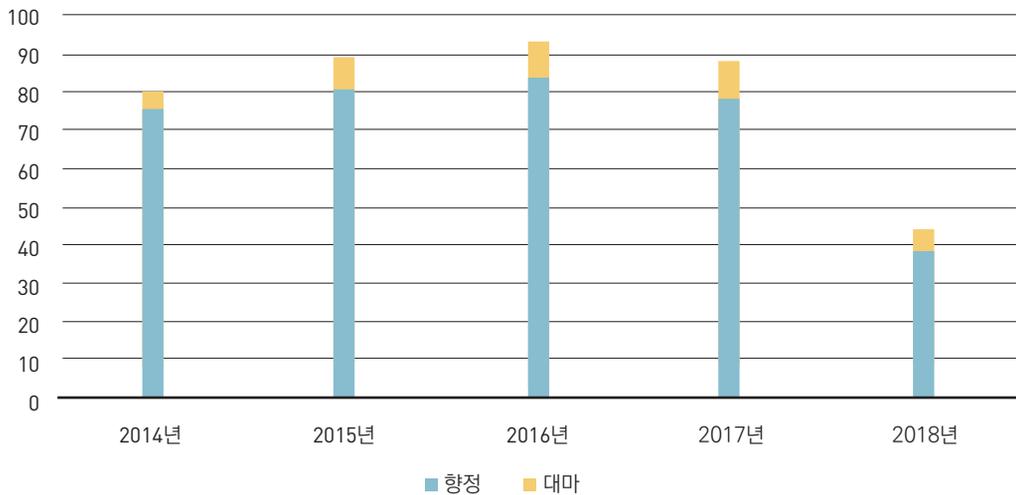
(단위: 명)

마약류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80 (100)	89 (100)	92 (100)	88 (100)	44 (100)
마약	0 (0.0)	0 (0.0)	0 (0.0)	0 (0.0)	0 (0.0)
향정	76 (95.0)	81 (91.0)	82 (89.1)	78 (88.6)	39 (88.6)
대마	4 (5.0)	8 (9.0)	10 (10.9)	10 (11.4)	5 (11.4)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42]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나. 자수자 처리현황

[표 3-77] 자수자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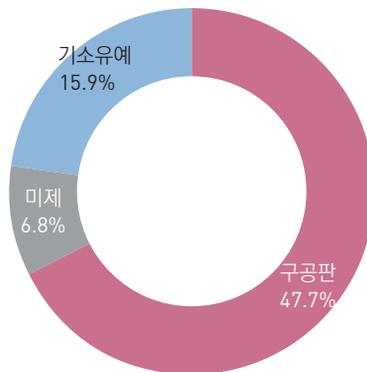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합계	처리현황									
		불입건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이송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타관 이송	미제
2014	80 (100)	0 (0.0)	44 (55.0)	5 (6.3)	18 (22.5)	1 (1.3)	0 (0.0)	3 (3.6)	0 (0.0)	5 (6.3)	4 (5.0)
2015	89 (100)	0 (0.0)	59 (66.3)	6 (6.7)	16 (18.1)	0 (0.0)	0 (0.0)	6 (6.7)	0 (0.0)	2 (2.2)	0 (0.0)
2016	92 (100)	0 (0.0)	24 (26.1)	0 (0.0)	17 (18.5)	0 (0.0)	0 (0.0)	5 (5.4)	0 (0.0)	0 (0.0)	46 (50.0)
2017	88 (100)	4 (4.5)	38 (43.2)	0 (0.0)	30 (34.1)	1 (1.1)	0 (0.0)	4 (4.5)	0 (0.0)	0 (0.0)	11 (12.5)
2018	44 (100)	0 (0.0)	21 (47.7)	0 (0.0)	7 (15.9)	1 (2.3)	0 (0.0)	1 (2.3)	2 (4.5)	9 (20.5)	3 (6.8)

\* 기준일 : 2009년~2012년 특별자수기간 종료 직후, 2013년부터는 자수자 처리 이후, ( )는 구성비 %

- 구공판 처리된 자수자 21명은 필로폰 밀매자, 동종 전과 다수자, 필로폰 중독자로 환각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한 자,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죄질이 중한 자들이 대부분임

[그림 3-43] 자수자 처리현황 구성비



- 기소유예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6명, 일반 기소유예자 1명임

## 다. 연령별 현황

- 전체 자수자 중 40대 17명(38.6%), 20대 11명(25.0%), 30대 10명(22.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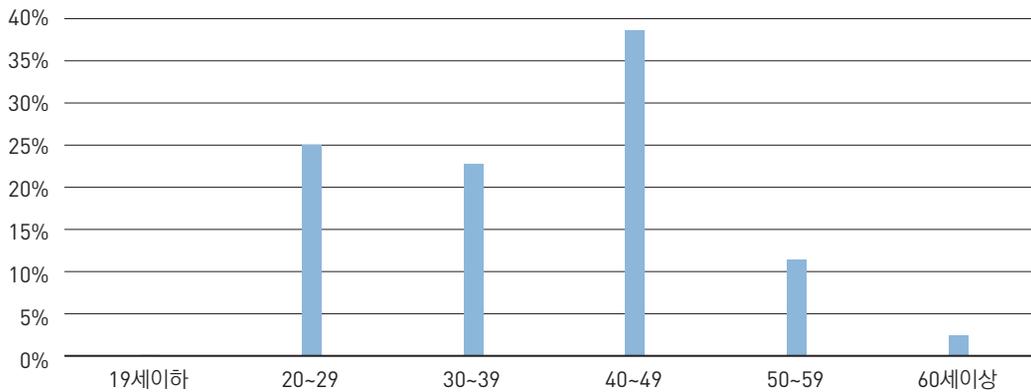
[표 3-78] 자수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합계
사범수	0	11	10	17	5	1	44
(%)	(0.0)	(25.0)	(22.7)	(38.6)	(11.4)	(2.3)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44] 자수자 연령별 구성비



## 라. 성별 현황

- 전체 자수자 중 남성은 32명(72.7%), 여성은 12명(27.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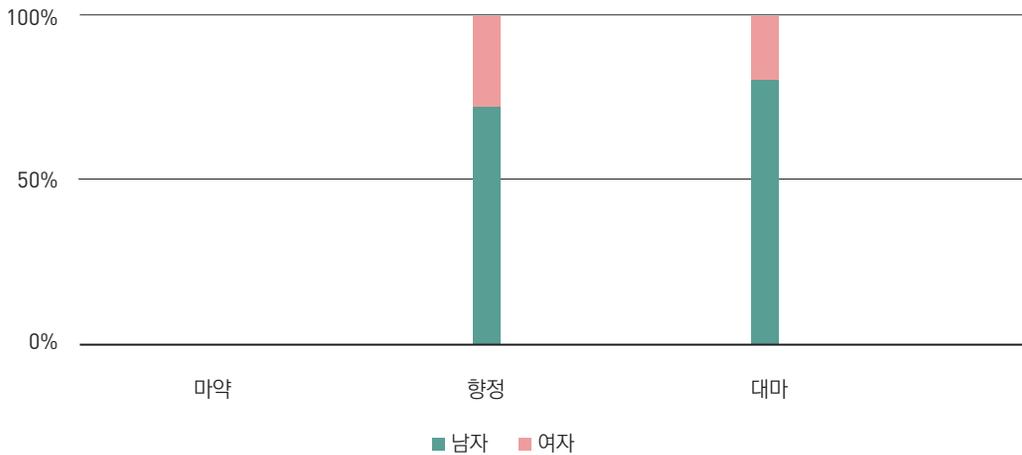
[표 3-79] 자수자 성별 현황

(단위: 명)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범수	0	0	28	11	4	1	32	12
(%)	(0.0)	(0.0)	(71.8)	(28.2)	(80.0)	(20.0)	(72.7)	(27.3)

※ ( )는 구성비 %

[그림 3-45] 자수자 성별 구성비



## 마. 직업별 현황

- 직업별로는 무직 23명(52.3%), 자영업 4명·노동 4명(9.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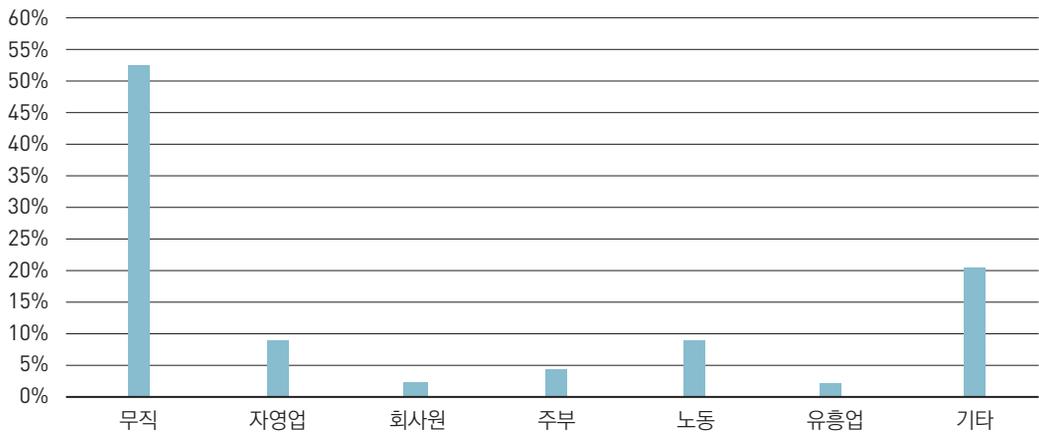
[표 3-80] 자수자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직업별	무직	자영업	회사원	학생	노동	유흥업	기타 <sup>22</sup>	합계
사범수	23	4	1	2	4	1	9	44
(%)	(52.3)	(9.1)	(2.3)	(4.5)	(9.1)	(2.3)	(20.4)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46] 자수자 직업별 구성비



<sup>22</sup> 연구원, 택배업, 건설업 등

### 3. 시행 결과 및 향후 계획

#### 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결과

- 2018. 4. 1.~ 6. 30. 3개월 동안 시행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 향정사범 39명, 대마사범 5명, 합계 44명이 자수함
- 자수자로서 사안이 중하지 않고, 개선의 정(단약 의지 등)이 뚜렷한 투약사범 7명 (전체자수자의 15.9%)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상습투약 및 마약류 밀거래 범죄에 관여한 경우 등 그 죄질이 무거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기소함

#### 나. 홍보 강화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활성화

- 관공서, 언론사, (도시)철도·도로공사, 터미널(버스, 항구, 공항 등) 등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 방송, 신문,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블로그, 전광판,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마약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고, 단순투약자로 치료·재활의지가 분명한 자수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수기간의 취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재활 기회 적극 부여

## 1. 개 요

### 가. 단속기간

- 양귀비 : 2018. 4. 중순 ~ 6. 하순(개화기)
- 대마 : 2018. 6. 중순 ~ 7. 중순(수확기)

### 나. 단속방법

- 각 청 마약수사 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검찰수사관, 시·군·구 유관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등이 합동으로 단속 실시
-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귀비·대마 다량 흡연자, 대마 재배 허가지 및 대마 도난신고 사실 등 사전 확인 후 단속
-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 등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효과적인 단속활동 전개
-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청에서는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계획 수립, 시행

### 다. 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2. 단속실적

### 가. 단속 인원 및 실적 추이

- 2018년 특별단속기간 내 양귀비·대마사범은 1,505명으로 전년(1,681명) 대비 10.5% 감소함

[표 3-81]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현황

(단위: 명)

사범별	구분		구속		불구속		불입건	
	합계							
합계	1,505	(100)	13	(0.9)	1,233	(81.9)	259	(17.2)
양귀비	1,392	(100)	0	(0.0)	1,138	(81.8)	254	(18.2)
대마	113	(100)	13	(11.5)	95	(84.1)	5	(4.4)

※ ( )는 구성비 %

- 양귀비사범은 1,392명으로 전년(1,330명) 대비 4.7% 증가, 대마사범은 113명으로 전년(351명) 대비 67.8% 감소함

[표 3-82]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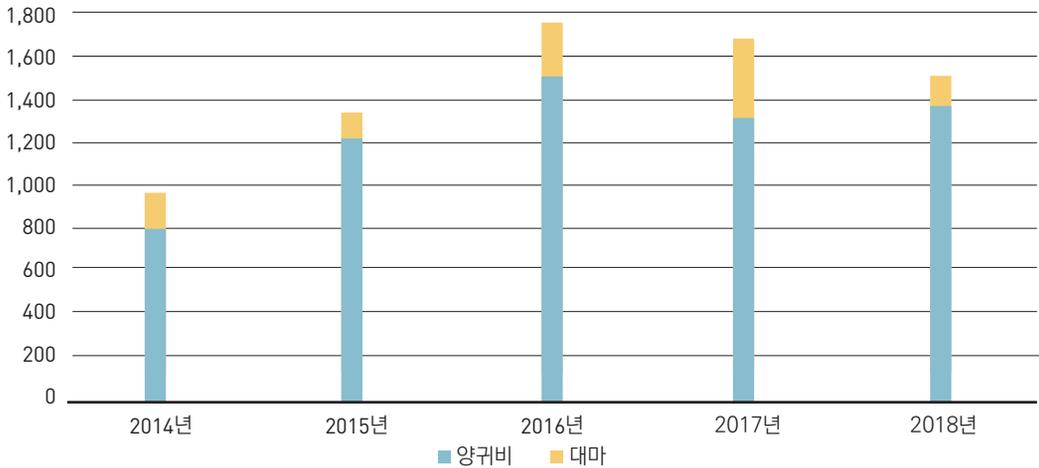
(단위: 명)

사범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양귀비	808 (11.1)	1,209 (49.6)	1,555 (28.6)	1,330 (-14.5)	1,392 (4.7)
대마	153 (-15.0)	154 (0.7)	219 (42.2)	351 (60.3)	113 (-67.8)
합계	961 (6.0)	1,363 (41.8)	1,774 (30.2)	1,681 (-5.2)	1,505 (-10.5)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그림 3-47] 연도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나. 유형별 단속실적

- 양귀비 밀경작사범은 1,376명으로 전년(1,276명)대비 7.8% 증가하였고, 대마 밀경작사범은 43명으로 전년(28명)대비 53.6% 증가함
- 양귀비사범의 경우 유형별 분포에서 밀경작사범이 98.8%를 차지하였고, 대마사범의 경우는 밀경작사범이 38.1%, 흡연 사범이 35.4%로 다수를 차지함
- 양귀비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237명으로 전년(213명)대비 11.3% 증가하였고, 대마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48명으로 전년(6명)대비 700% 증가함

[표 3-83] 양귀비·대마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사범별	밀조	밀수	밀경	밀매	사용 (흡연)	취급 (소지)	기타
양귀비	0 (0.0)	0 (0.0)	1,376 (98.8)	0 (0.0)	0 (0.0)	2 (0.1)	14 (1.0)
대마	0 (0.0)	4 (3.5)	43 (38.1)	13 (11.5)	40 (35.4)	12 (10.6)	1 (0.9)
합계	0 (0.0)	4 (0.3)	1,419 (94.2)	13 (0.9)	40 (2.7)	14 (0.9)	15 (1.0)

※ ( )는 구성비 %

### 다. 직업별 분포 현황

- 양귀비사범, 대마사범은 무직이 각각 37.1%, 46.9%로 가장 많았음

[표 3-84] 양귀비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연도 종류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직	231	(28.7)	309	(25.6)	565	(36.3)	479	(36.0)	517	(37.1)
농업	476	(58.9)	694	(57.4)	711	(45.7)	588	(44.2)	477	(34.4)
유형업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6	(0.4)
상업	6	(0.7)	15	(1.2)	29	(1.9)	26	(2.0)	93	(6.7)
주부	69	(8.5)	78	(6.5)	92	(5.9)	59	(4.4)	122	(8.8)
노동	6	(0.7)	12	(1.0)	14	(0.9)	26	(2.0)	40	(2.9)
회사원	5	(0.6)	22	(1.8)	28	(1.8)	28	(2.1)	30	(2.4)
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
의료인	0	(0.0)	0	(0.0)	0	(0.0)	0	(0.0)	2	(0.1)
기타	15	(1.9)	79	(6.5)	116	(7.5)	124	(9.3)	105	(7.5)
합계	808	(100)	1,209	(100)	1,555	(100)	1,330	(100)	1,392	(100)

※ ( )는 구성비 %

[표 3-85] 대마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종류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직	56	(36.6)	54	(35.0)	73	(33.3)	127	(36.2)	53
농업	13	(8.5)	14	(9.1)	39	(17.8)	11	(3.1)	16	(14.2)
유흥업종사자	4	(2.6)	2	(1.3)	7	(3.2)	22	(6.3)	2	(1.8)
상업	11	(7.2)	18	(11.7)	25	(11.4)	26	(7.4)	4	(3.5)
주부	1	(0.7)	0	(0.0)	2	(0.9)	1	(0.3)	1	(0.9)
노동	9	(5.9)	22	(14.3)	16	(7.3)	34	(9.7)	13	(11.5)
회사원	20	(13.1)	16	(10.4)	12	(5.5)	56	(16.0)	7	(6.2)
학생	9	(5.9)	6	(3.9)	6	(2.7)	11	(3.1)	3	(2.7)
의료인	0	(0.0)	0	(0.0)	0	(0.0)	0	(0.0)	0	(0)
기타	30	(19.5)	22	(14.3)	39	(17.9)	63	(17.9)	14	(12.4)
합계	153	(100)	154	(100)	219	(100)	351	(100)	113	(100)

※ ( )는 구성비 %

## 라. 압수물 현황

- 2018년도 특별단속기간 중, 양귀비(주) 압수량은 전년대비 63.5% 감소하였으며, 대마(주) 압수량은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음

[표 3-86]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압수물 현황

종류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양귀비(주)	101,605	113,270	166,641	371,443	135,702
대마(주)	5,959	3,707	45,963	4,527	5,516
대마초(g)	851	7,167	1,033.5	7,734.3	1,345.1
대마종자(g)	3,983	72	58.15	10.09	0

### 3. 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

#### 가. 양귀비·대마사범 단속 결과

- 양귀비·대마 밀경작 규모는 대부분 100주 이하의 소규모이며, 특히 양귀비 사범의 경우 95.6%가 50세 이상임. 이는 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노령층 주민들이 상비약, 가족의 질병치료, 관상용 등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 및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처벌 가치는 크지 않음
- 양귀비·대마 총 단속인원 1,505명 중 1,298명이 관용(불입건 259명) 또는 기소유예 1,039명) 처분됨

#### 나. 양귀비·대마사범 단속 방향

- 양귀비(아편)·대마의 밀거래 및 사용사범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밀경작사범에 대하여는 현행 단속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각 청의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하여 처리

#### 다.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 행정기관 및 공공·민간단체,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귀비·대마 파종기,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를 전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여 양귀비·대마 재배의 불법성 홍보 지속 추진 및 지역 언론, 현수막, 포스터 게시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도난 방지 대책이 없는 도로변이나 재배자의 상시 관리가 어려운 장소의 대마재배에 대해서는 재배허가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등 재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조치
- 기소유예 및 불입건자들에 대해 양귀비·대마 재배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 및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환각물질<sup>23</sup>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 1. 의의

- 환각물질 흡입 사범<sup>24</sup> 등이 향후 마약류사범으로 전환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범죄동향 분석 필요

##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환각물질 흡입 사범 등 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3. 범죄유형

-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등

<sup>23</sup>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또는 '중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및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를 말함

<sup>24</sup>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과 분장사무에 포함됨

## 4.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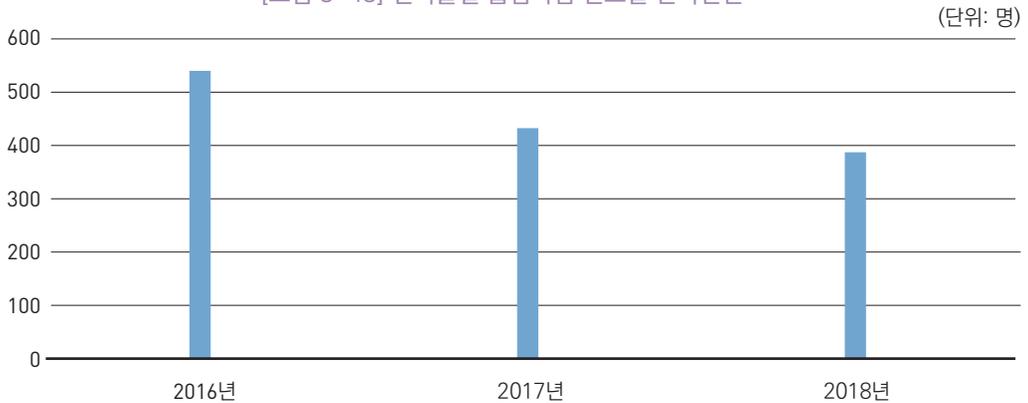
### 가.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 사범 등 추세

[표 3-87]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 사범 등 단속 현황

연도별	구분	건수	인원
2016		333	538
2017		301	430
2018		262	386

- 환각물질 흡입 사범 등은 감소 추세에 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0.2% 감소함
- 최근 20 ~ 30대 사이, 유흥가·대학가 주변에서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 별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sup>25</sup>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본드(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함

[그림 3-48]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sup>25</sup> 2017. 8. 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령(아산화질소 흡입 등 처벌)’ 시행

## 나. 기관별 현황

[표 3-88] 기관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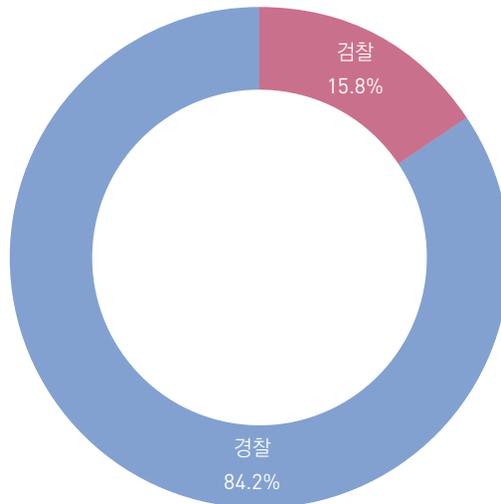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 기관별	검찰	경찰	합계
2016	36	502	538
	(6.7)	(93.3)	(100)
2017	36	394	430
	(8.4)	(91.6)	(100)
2018	61	325	386
	(15.8)	(84.2)	(100)

※ ( )는 구성비 %

- 2018년도 기관별 단속 점유율은 검찰 15.8%, 경찰 84.2%를 각각 차지함

[그림 3-49] 환각물질 흡입사범 기관별 구성비



### 다. 지역별 현황

[표 3-89]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지역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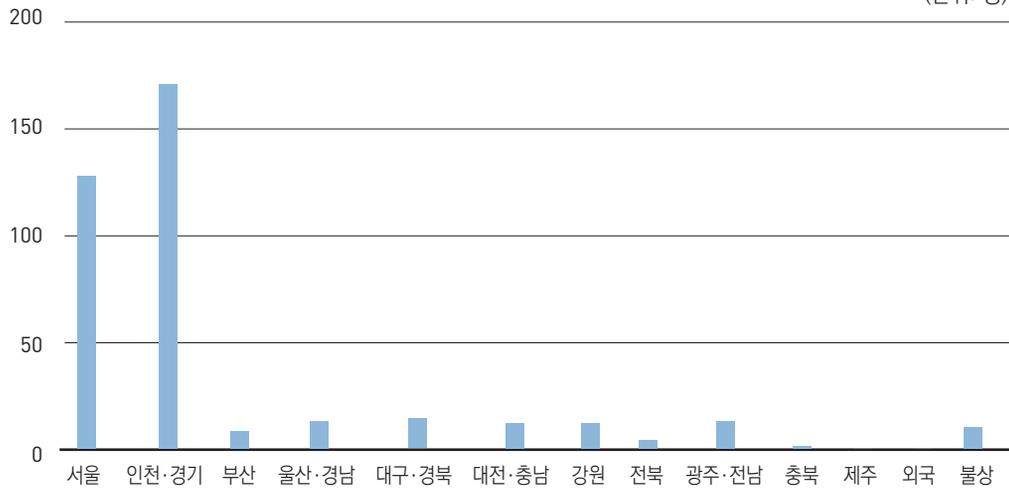
지역별 \ 연도별	2016	2017	2018
합계	538	430	386
	(100)	(100)	(100)
서울	51	79	128
	(9.5)	(18.4)	(33.2)
인천·경기	307	236	171
	(57.1)	(54.9)	(44.3)
부산	10	8	8
	(1.9)	(1.9)	(2.1)
울산·경남	25	27	13
	(4.6)	(6.3)	(3.4)
대구·경북	13	7	14
	(2.4)	(1.6)	(3.6)
대전·충남	12	28	12
	(2.2)	(6.5)	(3.1)
강원	4	3	12
	(0.7)	(0.7)	(3.1)
전북	3	2	4
	(0.6)	(0.5)	(1.0)
광주·전남	93	19	13
	(17.3)	(4.4)	(3.4)
충북	5	5	1
	(0.9)	(1.2)	(0.3)
제주	2	4	0
	(0.4)	(0.9)	(0.0)
외국	0	0	0
	(0.0)	(0.0)	(0.0)
불상	13	12	10
	(2.4)	(2.8)	(2.6)

※ ( )는 구성비 %

- 2018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인천·경기(44.3%), 서울(33.2%), 대구·경북(3.6%), 울산·경남·광주·전남(3.4%)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사범의 77.5%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그림 3-50]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라. 직업별 현황

[표 3-90]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직업별 \ 연도별	2016	2017	2018
합계	538	430	386
	(100)	(100)	(100)
농업	0	2	0
	(0.0)	(0.5)	(0.0)
도소매업	0	0	1
	(0.0)	(0.0)	(0.3)
금융보험기관직원	1	0	0
	(0.2)	(0.0)	(0.0)
건설업	1	4	2
	(0.2)	(0.9)	(0.5)
요식업	4	0	3
	(0.7)	(0.0)	(0.8)
노점	1	0	1
	(0.2)	(0.0)	(0.3)
용역업	2	0	0
	(0.4)	(0.0)	(0.0)
기타사업	3	8	15
	(0.6)	(1.9)	(3.9)
공익요원	0	0	2
	(0.0)	(0.0)	(0.5)
운전자	0	2	2
	(0.0)	(0.5)	(0.5)
요식업종사자	0	3	3
	(0.0)	(0.7)	(0.8)
유흥업종사자	1	0	7
	(0.7)	(0.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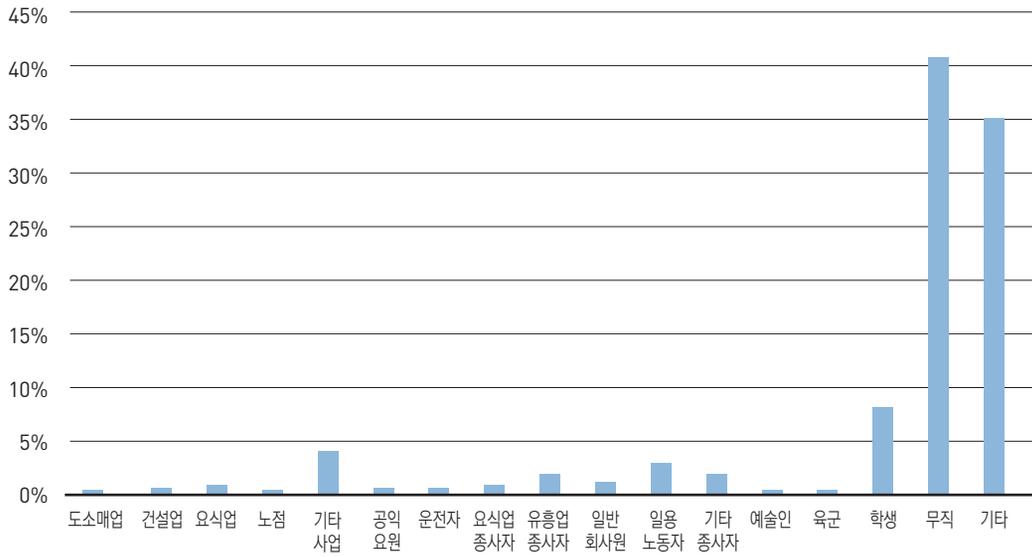
PART 3

직업별 \ 연도별	2016	2017	2018
일반회사원	6	6	4
	(1.1)	(1.4)	(1.0)
기능공	1	0	0
	(0.2)	(0.0)	(0.0)
무속업	1	0	0
	(0.2)	(0.0)	(0.0)
일용노동자	21	32	11
	(3.9)	(7.4)	(2.8)
기타종사자	4	3	7
	(0.7)	(0.7)	(1.8)
예술인	0	0	1
	(0.0)	(0.0)	(0.3)
육군	0	0	1
	(0.0)	(0.0)	(0.3)
학생	56	76	31
	(10.4)	(17.7)	(8.0)
주부	0	1	0
	(1.4)	(0.2)	(0.0)
무직	126	112	157
	(23.4)	(26.0)	(40.7)
직업미상	6	10	0
	(1.1)	(2.3)	(0.0)
기타	305	171	135
	(56.7)	(39.8)	(35.0)

※ ( )는 구성비 %

- 2018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40.7%), 기타(35.0%), 학생(8.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1]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 마.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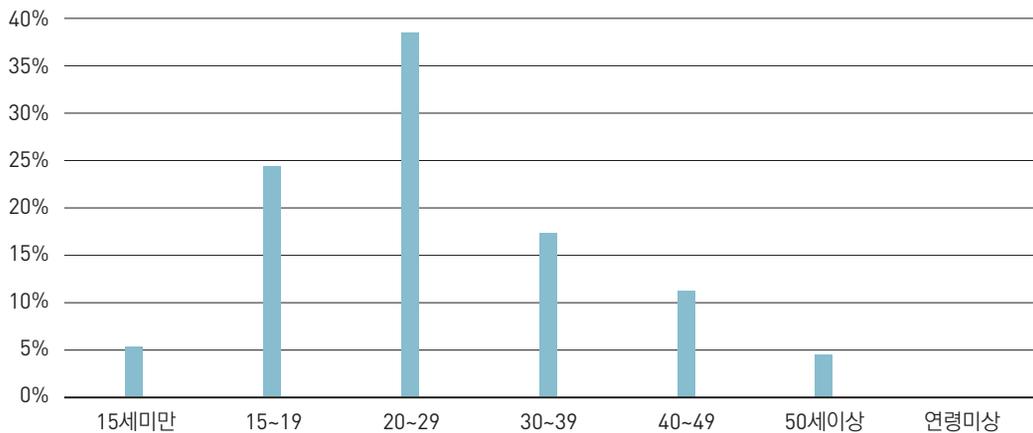
[표 3-91]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	15세 미만	15~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6	13	346	31	70	69	8	1	538
	(2.4)	(64.3)	(5.8)	(13.0)	(12.8)	(1.5)	(0.2)	(100)
2017	25	183	65	64	79	13	1	430
	(5.8)	(42.6)	(15.1)	(14.9)	(18.4)	(3.0)	(0.2)	(100)
2018	20	93	147	66	43	17	0	386
	(5.2)	(24.1)	(38.1)	(17.1)	(11.1)	(4.4)	(0.0)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52]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 바. 성별 현황

[표 3-92]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성별	남	여	합계
2016		407	131	538
		(75.7)	(24.3)	(100)
2017		317	113	430
		(73.7)	(26.3)	(100)
2018		244	142	386
		(63.2)	(36.8)	(100)

※ ( )는 구성비 %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남성이 63.2%, 여성이 36.8%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3-53]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 사. 검찰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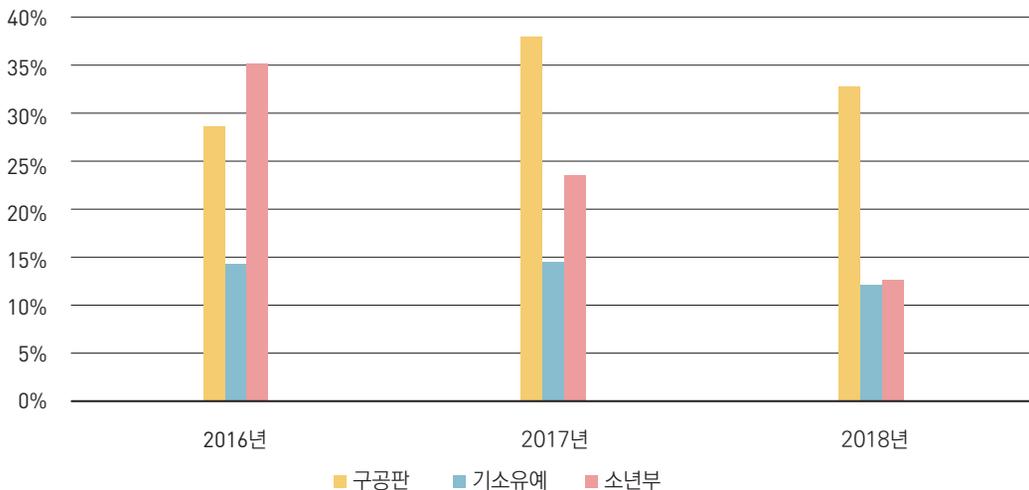
[표 3-93]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검찰 처리내역

(단위: 명)

연도	검찰처분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타관	기타	미제	합계
2016	165 (28.7)	41 (7.1)	39 (6.8)	82 (14.3)	20 (3.5)	202 (35.2)	18 (3.1)	2 (0.3)	5 (0.9)	574 (100)
2017	178 (38.0)	32 (6.8)	39 (8.3)	68 (14.5)	13 (2.8)	110 (23.5)	17 (3.6)	0 (0.0)	12 (2.6)	469 (100)
2018	134 (32.4)	49 (11.8)	42 (10.1)	50 (12.1)	8 (1.9)	52 (12.6)	41 (9.9)	1 (0.2)	37 (8.9)	414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54]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현황



## 아.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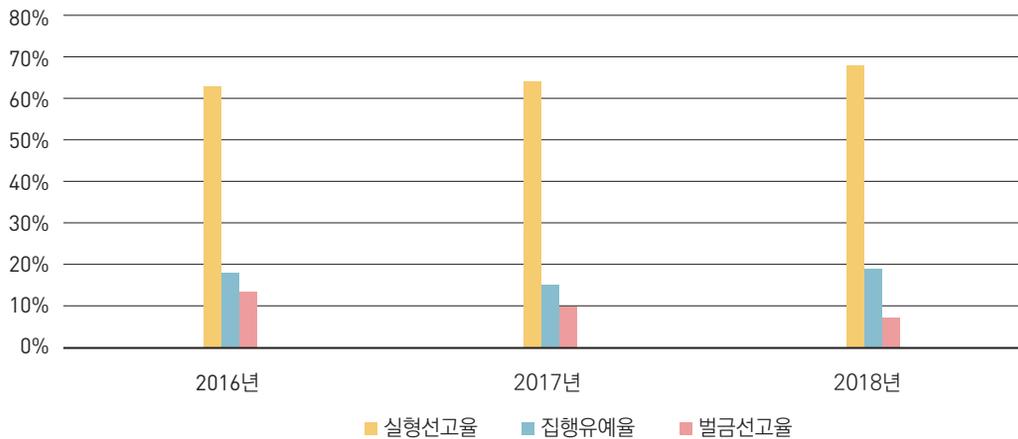
[표 3-94]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16	17	23	36	44	1	0	0	0	9
	(13.1)	(17.7)	(27.7)	(33.8)	(0.8)	(0.0)	(0.0)	(0.0)	(6.9)
2017	11	17	31	42	0	0	0	0	14
	(9.6)	(14.8)	(27.0)	(36.5)	(0.0)	(0.0)	(0.0)	(0.0)	(12.2)
2018	7	19	31	37	0	0	0	0	7
	(6.9)	(18.8)	(30.7)	(36.7)	(0.0)	(0.0)	(0.0)	(0.0)	(6.9)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55]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추이



## 자.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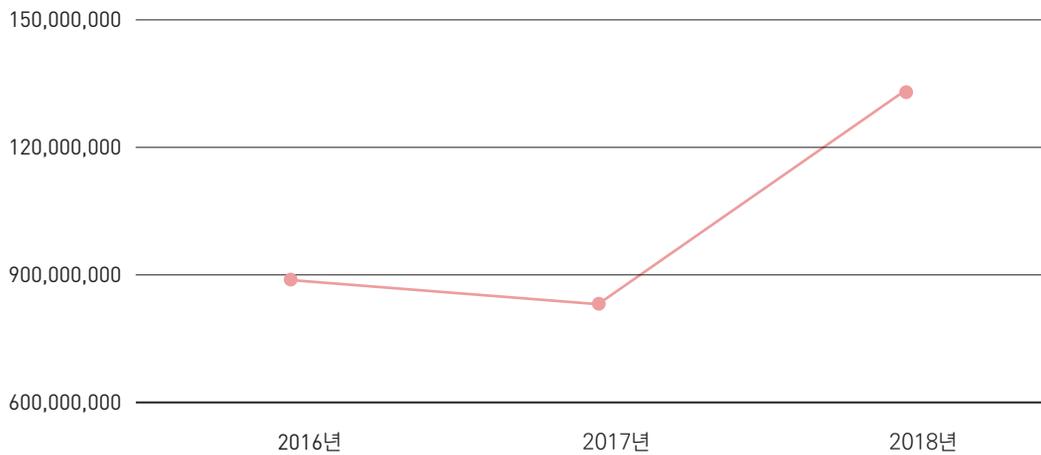
[표 3-95]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평균 (단위:원)
2016	0	0	9	28	0	0	89,500,000
2017	0	3	9	18	3	0	83,200,000
2018	0	0	9	34	2	0	133,000,0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56]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 차. 실행자·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표 3-96]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실행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연도별	구분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6		12.1	25.0
2017		15.2	27.5
2018		12.6	21.9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카.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97]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16		0 (0.0)	1 (4.0)	21 (84.0)	3 (12.0)	0 (0.0)	25 (100)
2017		0 (0.0)	1 (4.2)	17 (70.8)	5 (20.8)	1 (4.2)	24 (100)
2018		0 (0.0)	6 (26.1)	15 (65.2)	2 (8.7)	0 (0.0)	2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타.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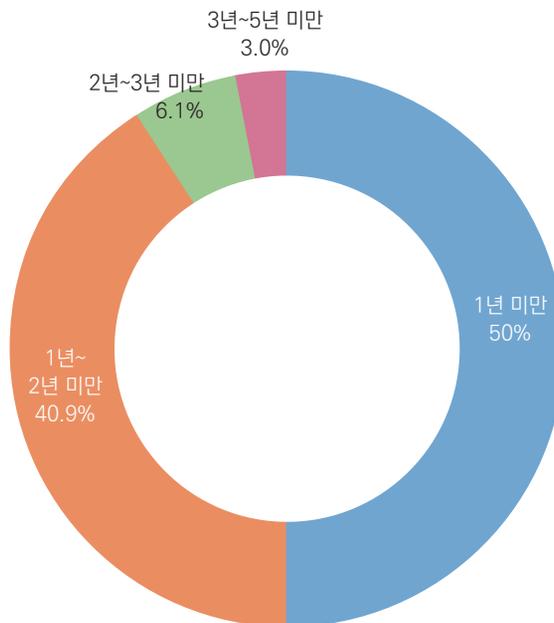
[표 3-98]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분포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16	39 (48.6)	38 (47.5)	3 (3.8)	0 (0.0)	0 (0.0)	80 (100)
2017	41 (40.6)	53 (52.5)	4 (4.0)	0 (0.0)	3 (3.0)	101 (100)
2018	33 (50.0)	27 (40.9)	4 (6.1)	2 (3.0)	0 (0.0)	6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57]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 5. 분석 결과

### 가. 최근 3년 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지속적 감소

-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16년 538명이래 2018년 336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 그 원인은 최근 대부분의 본드 제조업체가 소매용 본드 생산 시 환각물질이 아닌 대체 물질로 제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나. 2018년도 20~30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범 증가

- 2018년 20~30대 환각물질 흡입범죄 등 사범이 213명으로 전년 대비(129명) 65.1% 증가함
- 이는 최근 동 연령대를 중심으로 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가스)' 확산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할 경우 약 10초 ~ 30초 정도 쾌감을 주는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 몇 백 개씩 흡입하는 사례도 발생함
-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여성 피의자가 해피벌룬을 상습적으로 흡입하다 다리 부위에 마비증상 및 통증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함

## 6. 향후 대책

### 가. 환각물질흡입 폐해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 전개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나.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필요

- 지자체 등은 중소형 마트,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필요

### 다.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 및 확산 방지

- 아산화질소(캡슐 형)는 인터넷 카페, SNS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누구든지 손쉽게 구매 가능하여 신속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1980~1990년대 사회문제로 비화된 '청소년 본드·부탄가스 흡입 유행'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 단속하여 유통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